

2006년
증권제도동향

2007. 1

연구위원 정윤모

연구원 황운경

한국증권연구원

Korea Securities Research Institute

서 언

지난 2006년에도 우리 자본시장을 보다 효율적이고 경쟁력있는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본시장과 관련된 수많은 법규들이 제정·개정되는 등 여러 변화를 겪었다. 매년 변화의 속도는 그 완급을 달리하고 있지만, 자본시장과 관련된 제도들이 부단히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조금도 변함이 없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차세대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혁신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위험자본이 기업에 공급될 수 있는 자본시장의 발전이 요구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그 근본적인 대안의 제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대두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이 지난해에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것은 전혀 낮설지 않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의 패러다임을 선진국형으로 전환함으로써 금융투자업의 획기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자본시장통합법은 기존에 14개로 나뉘어져 있는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단일 법률로 통합하면서, 금융투자상품의 개념확대, 기능별 규율체제의 도입, 금융투자업무의 범위확대, 투자자 보호제도의 선진화와 같은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자본시장이 국제적인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국가적 역량을 모아 아직 미완성인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2006년에 변경된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증권시장에 있어서는 외국법인 등의 국내공모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주권상장법인이 원활하게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자기주식규제를 완화하였다. 또한 불건전한 우회상장을 차단하기 위해 우회상장 관련규정을 개선하였으며, 상장지수펀드(ETF)의 안정적 유동성 확보를 위해 유동성공급자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외에도 선물시장에 시장조성자제도(Market Maker)를 마련하여 신상품의 거래활성화를 통해 상품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였다.

증권산업분야에서는 증권회사 지배주주의 변경에 대한 승인요건을 마련하였으며, 일반투자자가 증권회사에 매매위탁할 수 있는 외화증권의 제한을 폐지하였다. 그리고 자산운용회사의 자율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관련규제를 완화·개선하는 한

편, 사모투자회사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증권감독 측면에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및 과징금부과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증권불공정거래행위의 예방을 위해 포상금제도를 개선하였다. 한편 증권선물거래소의 경우 시장감시업무와 분쟁조정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다.

발행기업에 대해서는 자기주식을 취득한 기업에게 일정한 경우 자기주식 처분제한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우회상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병 등의 경우 외부평가 제한기준을 정비하였다. 그리고 주식매수선택권 취소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자기주식 처분제한기간을 완화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구조조정에 있어서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상태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주요출자자요건을 정비하고 적기시정조치제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였다.

본 보고서는 본문과 부록의 2원적 체제로 편성되었다. 먼저 본문에서는 증권제도의 변경사항을 증권시장·증권산업·증권감독·발행기업·기업구조조정 등 각 분야별로 분류하여 수록하였으며, 부록에서는 이들 내용을 법령·금융감독위원회규정·증권선물거래소규정·증권업협회규정·증권예탁결제원규정 등 각 규정별로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본 보고서는 한국증권연구원의 정윤모 연구위원과 황운경 연구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저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그리고 원고 정리와 편집을 담당한 주혜립 연구조원에게도 감사드린다. 본 보고서가 우리 증권시장과 증권산업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

2007년 1월

한국증권연구원

원장 최도성

< 목 차 >

I. 증권시장	1
1. 주식시장	1
2. 채권시장	32
3. 파생금융상품시장	35
4. 증권예탁·결제	61
5. 기업공시	74
II. 증권산업	81
1. 증권회사	81
2. 자산운용회사	106
3. 투자자문회사	123
4. 선물회사	127
III. 증권감독	140
1. 법적규제기관	140
2. 자율규제기관	147
IV. 발행기업	156
1. 기업경영감시	156
2. 지원·관리제도	160

V. 기업구조조정	163
1. 금융기관	163
VI. 기타	169

< 부록 > 규정별 변경내용

I. 법령 등	177
1. 증권거래법 시행령	177
2.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178
3.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시행령	180
4.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시행규칙	184
5. 선물거래법 시행령	185
6. 운용 및 자산설계 전문인력의 시험 및 교육인정에 관한 기준	186
7. 간접투자증권 판매업무담당 임·직원 교육에 관한 기준	187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정안)	188
 II. 금융감독위원회 규정	 194
1.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194
2. 증권업 감독규정	199
3.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204
4.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감독규정	206
5.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211

6. 선물업 감독규정	211
7. 종합금융업 감독규정	214
8. 종합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215
9. 은행업 감독규정	215
10.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217
11.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219
12.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시행세칙	224
13.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224
14. 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	227
15.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230
16.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31
17. 증권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232
18. 증권범죄조사 사무처리 규정	233
19. 금융기관 분담금징수 등에 관한 규정	233
III. 증권선물거래소 규정	235
1.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235
2.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36

3.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240
4.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42
5.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247
6.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247
7.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248
8.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50
9.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53
10.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60
11.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267
12.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268
13. 선물시장 업무규정	269
14.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76
15.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289
16.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시행세칙	291
17. 시장감시규정	294
18.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297
19. 분쟁조정규정	301
20. 분쟁조정규정 시행세칙	302

IV. 증권업협회 규정	303
1.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303
2.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304
3. 증권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칙	311
4. 채권장외거래공시 등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314
5. 자산설계 전문인력 시험 등에 관한 규정	315
V. 증권예탁결제원 규정	317
1.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317
2.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319
3.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321
4.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323
5. 단기금융상품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325
6. 담보콜거래관리 업무규정 시행세칙	325
7. 외화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326
8. 금융기관 등을 위한 예탁유가증권의 담보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326

I. 증권시장

1. 주식시장

가. 발행시장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증권거래법 시행령 37조, 83조의8 : 2006/3/3 개정·시행)
 - 금감위의 명령을 위반한 증권회사에 대한 벌칙 규정과 상장된 유가증권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유지하는 안정조작 등을 금지하는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하위 대통령령의 규정을 상위 법률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증권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법률의 통합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 2006/6/30 입법예고)
 - 집합투자증권 공모시 증권신고서의 제출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설명서 제공 의무를 폐지하여 투자자에 대한 투자정보 제공을 증권신고서 제출시 투자설명서(기존의 사업설명서)로 일원화함

- 외국법인등의 예비상장심사결과서류 첨부 의무 명시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40조 : 2006/9/13 개정 · 시행)
 - 내·외국법인 동등대우 원칙에 따라 외국법인등에 대해서도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시 예비상장심사결과서류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정보 제공을 확대
 - 국내법인은 이미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시 예비상장심사결과서류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외국법인등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45조, 49조 : 2006/9/13 개정 · 시행)
 - 외국법인등의 유가증권 발행·공시업무를 대리할 국내대리인의 지정을 의무화하고, 대리인의 지정·변경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국내투자자 보호를 강화

나. 유통시장

- 기타 자본시장관련 규제의 개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 2006/6/30 입법예고)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규제 대상증권의 범위와 내부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의 대상증권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시장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함
 - 현물과 선물간의 시세조종, 파생결합증권과 그 기초자산간의 시세조종 등 연계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함

○ 장 개시전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한 자기주식 처분 허용 및 처분가격 범위 확대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111조 5항 : 2006/9/13 개정, 10/30 시행)

— 장 개시전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한 자기주식의 처분을 허용하고, 시간외대량매매에 적용되는 호가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상장법인의 가격변동 리스크 완화

- 기존에는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한 자기주식 처분이 매매신청서 제출일 익일 장 종료후 시간외시장으로 한정되어 있어 익일 정규시장에서의 가격변동 리스크를 상장법인이 부담하였음

시간외대량매매	기 존	개 정
장 개시전 (07:30~08:30)	×	○ (전일종가±5%)
장 종료후 (15:10~18:00)	○ (당일종가~당일종가-2호가)	○ (당일종가±5%)

○ 프로그램매매제도 비차익거래 대상종목의 확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16조 : 2006/7/7 개정, 8/28 시행)

— 비차익거래 대상종목을 KOSPI 200종목에서 KOSPI종목으로 확대

○ ETF의 공매도에 대한 가격규제 완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18조 : 2006/7/7 개정, 7/10 시행)

— 상장지수펀드(ETF)의 공매도호가 가격제한을 폐지

- 신고대량매매제도의 폐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30조 : 2006/7/7 개정, 8/28 시행)

- 신고대량매매제도의 실효성 상실에 따른 폐지

- 장개시전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한 자기주식처분 허용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39조 : 2006/9/8 개정, 10/30 시행)

- 거래절차 등은 장종료후 시간외대량매매 자기주식처분의 경우를 준용

-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한 자기주식 처분시 가격협상 범위 확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35조 : 2006/9/8개정, 10/30 시행)

기 준	개 정
종가~(종가 -2호가)	종가* ± 5% (당일 상·하한가 이내)

*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경우에는 전일 종가

- 주식관련사채권의 호가입력제한 범위 조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4조 : 2006/2/8 개정, 3/2 시행)

- 전일종가 대비 50%를 초과하는 매수호가 또는 50%에 미달하는 매도 호가에 대해 호가입력제한

- 시가기준가종목의 매매수량단위 조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3조 : 2006/2/8 개정, 2/9 시행)

- 평가가격이 10만원 이상인 종목의 매매수량단위를 1주로 조정

- 유동성공급자(LP)제도 호가면제 및 평가기준 마련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1조의5, 31조의7, 31조의9 : 2006/5/29 제정, 6/5 시행)
 - 호가스프레드가 1호가 가격단위에 해당되어 호가스프레드를 축소할 수 없는 경우 호가제출의무 면제
 - 유동성공급회원의 보유물량이 없는 경우 양방향 호가제출의무 면제
 - 유동성공급회원의 유동성공급실적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 유동성공급실적 평가항목 및 평가주기
 - 최소 의무이행 기준
 - 평가 관련 거래소 통보 내용

- 매매수량단위 변경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3조 : 2006/5/29 제정, 6/5 시행)
 - 주권의 경우 1주 단위 거래대상 종목을 당일 기준가 10만원 이상 종목에서 5만원 이상 종목으로 확대

- 주식워런트증권(ELW) 매매의 투명성 제고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26조 : 2006/5/29 제정, 6/5 시행)
 - 접속매매시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해 유동성공급자가 제출한 호가수량을 구분하여 공표

○ 이상급등종목제도 보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33조, 134조 :
2006/5/29 제정, 6/5 시행)

— 이상급등종목 지정시 동업종상승률 기준을 산업별주가지수로 일원화
하고, 시가기준가종목 적용일부터 5일 동안은 이상급등종목 지정 및
지정예고를 하지 않음

— 이상급등종목 지정해제기준 완화

- 주가급등에 의한 이상급등종목 지정의 경우 지정후 10일 경과시 이
상급등종목 지정 해제
-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중 이상급등종목 지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

○ 프로그램매매 현황 보고제도의 개선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30조
: 2006/7/7 개정, 8/28 시행)

— 주간프로그램매매 현황 보고제도 폐지

— 선물·옵션 최종거래일 프로그램매매 호가 공시대상에 기존에 제출된
프로그램호가를 정정하는 경우를 포함

○ 회원 착오매매 정정 신청방법 개선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45조 : 2006/7/7 개정, 9/11 시행)

— 착오매매발생일의 그 다음 매매거래일 12시까지 전자전달매체를 통하
여 제출

- 거래전문회원의 거래내역 통보범위의 명확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36조 : 2006/7/7 개정, 7/10 시행)
 - 결제회원에게 통보하는 거래전문회원의 거래내역 통보범위를 명시

- Random End제도의 실효성 제고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8조, 51조의2 : 2006/9/8 개정, 10/30 시행)
 - Random End(단일가매매 참여호가 범위의 연장) 발동요건에 잠정시가 (또는 증가)가 직전가 대비 1% 이상 괴리요건을 추가
 - 시가 또는 증가결정시의 잠정가격이 예상체결가격으로부터 크게 변동(5%이상)한 경우라도 잠정가격이 직전가 대비 1% 이내인 경우 발동 배제
 - 동 직전가와와 괴리요건은 시간외단일가매매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 자기주식매매제도 관련 규정 정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52조, 57조, 106조 : 2006/9/8 개정, 10/30 시행)
 - 정규시장에서 자기주식매매를 위한 호가제출시 가격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호가의 상·하한 산출
 - 자기주식의 장개시전 시간외대량매매시 가격범위를 전일종가 기준으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기준가격으로 적용하여 산출
 - 시간외대량매매에 의한 자기주식매매의 경우 자기주식매매신청서의 거래소 제출근거를 명시

- 우회상장의 정의규정 마련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46조 : 2006/9/29 개정, 10/2 시행)
 - 주권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영업·자산 양수 등으로 인하여 지배권이 변동하는 경우를 우회상장으로 규정

- 우회상장관련 확인서 제출 의무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55조의2 : 2006/9/29 개정, 10/2 시행)
 - 주권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영업·자산 양수 등을 하는 경우 “확인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우회상장요건 충족여부에 관하여 거래소와 협의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주권비상장법인의 우회상장요건 신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80조 : 2006/9/29 개정, 10/2 시행)
 - 우회상장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우회상장요건 및 요건 미충족시 주권상장법인(존속법인)의 상장 폐지근거 신설

- 우회상장시의 매매거래 정지근거 마련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95조 : 2006/9/29 개정, 10/2 시행)
 -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이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영업·자산 양수를 하는 경우 매매거래 정지근거 신설

- 우회상장기업의 제3자배정 신주발행시 매매거래 정지근거 마련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95조 : 2006/9/29 개정, 10/2 시행)
 -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이 영업·자산양수신고서 제출일 이후 6월 이내에 제3자배정에 의한 신주 및 주식관련사채를 발행 하는 경우 매매거래 정지근거 신설

- 상장지수간접투자증권의 상장폐지요건 개선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84조, 87조 : 2006/9/29 개정, 10/2 시행)
 - 유동성공급자(LP)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므로 거래량 요건은 상장지수 간접투자증권의 상장폐지요건에서 삭제

- 최대주주 등 지분변동 제한의 완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10조 5호, 32조 1항 13호, 35조 1호·3호 : 2006/12/22 개정, 12/26 시행)
 - 양적요건으로 최대주주 등 및 5% 이상 주주의 소유주식비율 변동제한을 폐지하고, '최대주주(지배권) 변경'만을 규제
 - 질적요건으로 '경영의 안정성' 신설 및 '주주이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상장 전 지분변동의 적정성을 평가
 - 위장분산 등을 통한 상장 후 매각제한 규정 회피를 예방하기 위해 상장전 1년 이내에 '제3자배정으로 신주를 취득'하거나 또는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에 대한 매각을 제한

- 기업 실질에 따른 제조업 인정 근거 마련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1조 2항 3호 : 2006/4/18 제정, 4/19 시행)
 - 자기가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경우(하청)에 대한 제조업 인정근거 마련

- 업종변경 유예 근거 마련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1조 3항 단서 : 2006/4/18 제정, 4/19 시행)
 - 업력, 향후 영업전망 등을 고려하여 업종변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업종변경 유예 근거를 마련

- 주식워런트증권의 신고사항 제출기한 정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35조의2 2항 : 2006/4/18 제정, 4/19 시행)
 - 발행인이 주식워런트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유동성공급자가 유동성공급을 한 경우 매일 신고의무를 부과

- 주식워런트증권의 전부보유 판단 기준 신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48조의2 : 2006/4/18 제정, 4/19 시행)
 - 주식워런트증권 유동성공급 및 취득(처분)보고서를 기준으로 전부보유를 판단

- 외국주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서의 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서식 신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지 1호 서식(4) : 2006/9/4 개정, 9/5 시행)
 - 용어정의 추가 및 정비

- 국제회계기준 또는 미국회계기준 채택 반영
 - 상장을 위한 조직정비 및 상장에 관한 사항 기재 요구
 - 주식의 권리행사 및 본국 법규 등에 대한 기재요구
 - 청구서 및 첨부서류의 한글작성 원칙을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의 영어작성을 허용함을 명시
 - 관련법령 등 국가간의 차이로 인하여 작성이 곤란한 항목 등에 관한 기재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생략시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명시
- 외국주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서의 신규상장신청서 신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지 2호 서식(2) : 2006/9/4 개정, 9/5 시행)
- 외국기업이 발행한 외국주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서의 신규상장신청서에 사용되는 서식을 정함
- 외국증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서의 신규상장계약서 신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지 17호 서식(2) : 2006/9/4 개정, 9/5 시행)
- 회계처리기준 변경시 거래소의 승인 필요 조항 신설
 - 상장대리인 또는 공시대리인 변경시 거래소에 통보 의무화 조항 신설
- 우회상장의 판단기준이 되는 지배권 변동의 개념 설정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6조의2 : 2006/9/29 개정, 10/2 시행)
- 주권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 및 5% 이상 주주가 합병(주식교환, 영업양수 등) 결과 소유하게 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수가 주권상장법인의 기존 최대주주등이 소유한 주식수보다 큰 경우

- 다만, 주권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 또는 5% 이상 주주가 신고서 제출일 전 1년 이전에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된 후 최대주주의 지위가 유지되어 온 경우는 제외
- 우회상장 절차 등과 관련한 세부 시행방안 마련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31조의2 : 2006/9/29 개정, 10/2 시행)
 - 지배권 변경 여부 및 합병요건 등의 확인을 위한 확인서 서식 및 첨부서류 신설
 - 우회상장 법인에 대한 공표기간 설정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50조의2 : 2006/9/29 개정, 10/2 시행)
 - 합병(주식교환, 영업·자산양수도)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차기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까지
 - 우회상장관련 매매거래정지의 합리적 운영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49조의2 : 2006/11/14 개정, 11/15 시행)
 -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영업·자산양수 신고 당시 최대주주 변경 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의 예외를 인정함
 - 주식수 산정방법의 일원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6조의2 : 2006/11/14 개정, 11/15 시행)
 - 비상장법인 최대주주등(5%이상 주주 포함) 소유주식수 산정방법과 동일하게, 상장법인 최대주주등 소유주식수 산정시 합병 또는 주식교환으로 소유하게 될 주식을 포함하여 산정함

- 최대주주 변경 등의 명확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6조의2 : 2006/11/14 개정, 11/15 시행)
 -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우회상장 유형에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함

- 해외증권의 전환신주 등에 대한 상장신청시 첨부서류 제출의무 신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6조 3항 : 2006/11/29 개정, 11/30 시행)
 - 해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CB·BW·DR 등)의 전환권 행사 등으로 인한 신주의 상장을 신청하는 경우 유가증권신고서, 신고서 면제확인서 또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매각제한 증빙서류 등의 첨부서류 제출의무를 신설함
 -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시 첨부서류 제출의무를 면제

-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제도의 합리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50조 5항 : 2006/11/29 개정, 11/30 시행)
 - 「부산교통공단법」 폐지에 따른 '부산교통채권' 관련 조문을 정비함
 - 채권전문회원에 대한 연부과금을 부과함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해 신규로 상장되는 채권에 대하여 변경상장수수료를 부과함

- 상장 전 지분변동시 매각제한 규제의 범위 명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4조 2항 : 2006/12/22 개정, 12/26 시행)
 - 상장예비심사 청구 전 1년 이내에 최대주주 등의 소유지분을 취득하거나 제3자 배정으로 발행된 신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매각제한 의무를 부과

- 단, 매출을 하거나 코스닥시장 또는 외국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한 경우에는 매각제한 의무를 면제

○ 상장예비심사결과의 효력 불인정 사유 신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6조의2 : 2006/12/22 개정, 12/26 시행)

- 상장예비심사 청구일 후 신규상장일 전일까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한 경우 상장예비심사결과의 효력을 불인정

○ 상장지수펀드 유동성공급자제도의 도입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12조의2 : 2006/7/7 개정, 7/10 시행)

- 상장지수펀드에 대하여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회원은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호가제출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

- 정규시장중 호가스프레드가 호가가격단위의 10배 초과시 5분 이내에 호가스프레드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유동성공급호가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

○ 상장지수펀드 공매도시 가격규제 폐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9의3조 2항 : 2006/7/7 개정, 7/10 시행)

- 상장지수펀드 공매도시 기존 '직전가 이하 가격으로 호가 금지'의 가격규제를 폐지하여 직전가 이하의 가격으로도 호가할 수 있도록 함

기 존	개 정
○ 직전가 이하의 공매도호가 불가 — 단, 차익거래는 예외 허용	○ 직전가 이하의 공매도호가 허용

- 매매거래계좌 설정시 고객정보 수기기재의무 폐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33조 2항 : 2006/7/7 개정, 7/10 시행)
 - 매매거래계좌 설정시 고객정보의 수기기재의무를 폐지하여 정보 유출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
 - * 금감위(원)의 「전자거래 안전성 강화 종합대책(2005.9)」에 따라 매매거래계좌 설정시 비밀번호는 전자입력기(PIN PAD)를 통하도록 의무화

- 장개시전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한 자기주식처분 허용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10조 4항 : 2006/9/8 개정, 10/30 시행)
 - 기존에 장종료후 시간외대량매매에 한정하던 시간외시장의 자기주식처분을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에서도 허용
 - 호가가격범위는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하여 장종료후 시간외대량매매의 경우를 준용

- 시간외대량매매시 자기주식처분 호가가격범위 확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10조 5항 : 2006/9/8 개정, 10/30 시행)
 - 기존에 당일 가격제한폭 이내에서 “종가~종가 -2호가”로 한정하고 있는 호가가격범위를 “종가 ±5%”로 확대

	기 존	개 정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매시간 : 07:30~08:30 • 호가가격범위 : (전일종가 ± 5%) & (가격제한폭)
장종료후 시간외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매시간 : 15:10~18:00 • 호가가격범위 : (당일종가~당일종가-2호가) & (가격제한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과 같음) • 호가가격범위 : (당일종가 ± 5%) & (가격제한폭)

- ETF 유동성공급호가제출 관련 사항의 구체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2조의2 : 2006/7/7 개정, 7/10 시행)
 - 유동성공급호가는 매매수량단위 1,000배 이상의 수량이어야 하고, 지정가호가로만 가능하도록 함
 - 유동성공급호가의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사항을 정함
 - 단일가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 및 해당접수시간 종료 후 5분 이내, 호가스프레드가 호가가격단위의 10배 이내로 축소되는 경우 등

- 프로그램매매현황 보고방식 개선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5조 1항·3항 : 2006/7/7 개정, 2006/8/28 시행)
 - 정보 효용성이 낮은 주간 프로그램매매현황보고를 폐지하여 회원의 업무부담을 완화
 - 선물 최종거래일 프로그램매매호가의 사전보고 범위를 기존 신규호가 외에 정정호가까지 확대하여 실효성을 제고

○ 이상급등종목 지정 및 해제 요건 개선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54조, 55조 : 2006/7/7 개정, 7/10 시행)

- 이상급등종목 지정의 장기화에 따른 매매불편의 최소화를 위해 지정 일로부터 10거래일 경과시 자동해제하는 요건을 신설

기 존	개 정
- 지정 3일 후 증가가 · 최근 5일 중 최고종가 대비 10% 이상 하락 or 지정일 전 일 증가 미만 - (신 설)	- (기존 유지) - 지정 후 10일 경과시

- ETF, 증권투자회사, 외국DR의 경우 종목특성을 고려하여 이상급등종목지정요건 중 주가지수상승율요건의 적용을 배제

○ 우선주 등 매매거래정지제도 개선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06/7/7 개정, 7/10 시행)

- 기존에 가격괴리율 요건만 적용하던 우선주 등의 매매정지제도에 이상급등종목 지정요건을 추가하고,
- 재차 매매거래정지요건도 추가흐름을 고려하여 매매거래정지가 가능하도록 개선

	기 존	개 정
최초 정지	- 괴리율 2배 이상	- 괴리율 2배 + 이상급등종목 지정
재차 정지	- 괴리율 2배 이상 - 매매거래정지 직전일 증가 대비 10% 이상 상승시	(기존 유지) - 최근 3일 주가상승률 20% 이상

- 회원착오에 의한 매매거래의 정정방식 개선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3조 : 2006/7/7 개정, 9/11 시행)
 - 착오매매정정을 위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정정을 위한 문서제출 시한을 다음날 12시까지로 제한

- 거래전문회원의 매매거래내용 통보방식 개선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9조 : 2006/7/7 개정, 7/10 시행)
 - 거래전문회원의 매매거래내용을 지정결제회원에게 통보시 규정에 열거된 항목 이외의 사항은 사전에 거래전문회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 거래전문회원의 매매거래내용 통보항목에 '종목명'을 추가

- 코스닥상장법인 자기주식매매제도 개선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6/9/8 개정, 10/30 시행)
 -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을 통한 자기주식 매매시 권리락 등이 발생한 종목은 당해 권리락 등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정규시장 가격과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10조)
 - 장중 자기주식 매수호가 제출시점까지 거래 미형성시 호가가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일의 기준가격을 최고가로 보아 호가 상한폭을 결정할 근거 마련 (10조)
 - 시간외시장을 통한 자기주식 매매시 호가가격단위를 기존의 가격대별 호가가격단위(5원~100원)에서 대량매매호가가격단위(1원)로 변경하여 호가제출이 용이하도록 함 (24조 3항)

- 공매도 가격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ETF 차익거래의 범위를 확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9조 3항 : 2006/9/8 개정, 9/11 시행)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ETF중 코스닥상장종목을 구성종목으로 하는 ETF의 차익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코스닥종목의 공매도시에도 가격규제 예외를 적용

-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기업 관리방안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19조, 38조 : 2006/6/23 개정, 6/26 시행)
 - 비상장기업의 기업규모가 상장기업보다 크거나 합병으로 인해 상장기업의 경영권이 변동되는 경우로서 비상장기업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상장기업에 대해 상장폐지 조치를 취함

-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한 우회상장기업 관리방안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19조의2, 38조 : 2006/6/23 개정, 6/26 시행)
 - 비상장기업과의 주식교환을 통해 상장기업의 경영권이 변동되는 경우로서 비상장기업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상장기업에 대해 상장폐지 조치를 취함

- 주식스왑·영업양수·신주발행 등을 통한 우회상장기업 관리방안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19조의3, 38조 : 2006/6/23 개정, 6/26 시행)
 - 비상장기업과의 주식스왑·영업양수·신주발행 등을 통해 상장기업의 경영권이 변동되는 경우로서 비상장기업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상장기업에 대해 상장폐지 조치를 취함

- 우회상장기업(경영권변동 및 요건충족기업)에 대한 공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19조의4 : 2006/6/23 개정, 6/26 시행)
 — 우회상장기업에 대해서는 당해기업이 '우회상장 종목'임을 2년간 공표
 함으로써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시킴

< 우회상장 관리기준 >

기준	합병	주식교환	주식스왑	영업양수
경상이익 有*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자본잠식 無*	적용	적용	적용	부채초과 無
적정 감사의견(최근연도)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유·무상증자 제한(1년)	적용	적용	-	-
지분변동제한(최대주주 등 및 5% 이상 주주, 6월간)	적용	적용	-	-
소송 등 중요한 분쟁 無	적용	적용	적용	-
부도사유 해소(6월 전)	적용	적용	적용	-
타법인과 합병, 분할(합병), 영업양수·도시 결산 확정 (3월미만시 차기)	적용	적용	적용	-

* 재무요건은 최근사업연도(말) 기준으로 하되 영업양수는 양수대상
 영업부문을 대상으로 함

** 양수대상 영업부문의 부문별 재무제표가 기재된 영업양도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을 말함

< 우회상장 유형별 시장조치 내용 >

우회상장 유형		기 준	개 정
합병및 포괄적 주식교환	경영권 불변	매각제한 (1년)	현행 유지
	경영권 변경	요건 충족	매각제한 (2년) 우회상장 표시(2년)
		요건 미충족	매각제한 (3년)
주식스왑 및 영업양수도	경영권 불변	매각제한 (1년)	현행 유지
	경영권 변경	요건 충족	매각제한 (2년) 우회상장 표시(2년)
		요건 미충족	매각제한 (2년)

- 감사보고서 적용기준 개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3조 : 2006/6/23 개정, 6/26 시행)
 - 지정감사제도 도입에 따른 소급감사 차단으로 그 존치 필요성이 소멸된 감사보고서의 정기주총 보고 요건 삭제

- 퇴출절차의 합리적 정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40조 : 2006/6/23 개정, 6/26 시행)
 - 퇴출결정후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에서 퇴출결정 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퇴출절차 개선

- ETF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상장요건의 개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14조, 15조 : 2006/7/7 개정, 7/10 시행)
 - ETF에 대한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위하여, ETF의 상장요건으로서 유동성공급계약 체결의무를 부과
 - 지정판매회사중 1사 이상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판매회사가 LP(유동성공급자)가 되며, 동 LP는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호가를 제출(유동성 공급)

- ETF의 상장폐지예고사유의 확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39조 : 2006/7/7 개정, 10/1 시행)
 - 유동성공급 미흡 등으로 ETF가격의 괴리율이 일정수준(3%)을 초과하는 경우(LP의 유동성공급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포함)를 상장폐지예고사유에 추가
 - ETF가격의 괴리율 = [(종가 - 순자산가치)/순자산가치] × 100

- ETF의 상장폐지요건 개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43조, 44조 : 2006/7/7 개정, 10/1 시행)
 - 일정기간 안에 괴리율 미회복시 또는 LP의 수가 1사 미만이 된 경우 (유동성 공급기준에 미달하는 LP를 1월내에 교체하지 않은 경우 포함) 당해 ETF의 상장을 폐지

	기 존	개 정
상장 요건	- 지정판매회사가 2사 이상일 것 - (신 설)	- 좌 동 - 지정판매회사 1사 이상과 LP계약을 체결하고 있을것
상장 폐지 요건	- 월평균거래량 10만좌 미만 - (신 설) - (신 설) - (신 설)	- (폐 지) - 괴리율 3% 이상 · 10일 연속 또는 1분기에 20일 이상 - LP수 1사 미만 - 부적격 LP 교체의무 1월내 미이행

○ 자기자본 규모 요건 신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8조 : 2006/9/29 개정, 12/1 시행)

- 자기자본 규모에 의한 퇴출요건을 신설하여 감자를 통한 퇴출모면을 방지하고, 기업실체가 형해화된 기업의 조기퇴출을 유도
 - 자기자본 10억원 미만으로 2반기 연속시 퇴출

○ 자본잠식에 의한 퇴출주기 단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38조 : 2006/9/29 개정, 12/1 시행)

- 기존에 원칙적으로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본잠식 퇴출요건을 반기단위로 단축하여, 부실기업의 조기퇴출을 유도

	기 존	개 정
50%잠식	사업연도말(관리종목) → 1반기 또는 1년 지속(퇴출)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 (관리종목) → 1반기 지속(퇴출)
전액잠식	사업연도말 전액잠식(퇴출)	좌 동

○ 감사보고서를 통해 자구이행 여부 확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38조 : 2006/9/29 개정, 12/1 시행)

— 자구이행에 대한 확인방법을 기존의 감사인 확인서에서 감사보고서로 변경함으로써, 자구행위에 대한 검증기능 강화

- 결산기말(반기말) 기준 퇴출사유 해당기업이 자구행위를 이행한 경우, 동 자구행위를 반영한 감사보고서를 사업(반기)보고서 법정제출 기한까지 제출받아 자구이행 여부를 확인

○ 신속한 관리종목 지정을 통한 부실예고기능 강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8조 : 2006/9/29 개정, 12/1 시행)

— 관리종목(자본잠식 50%) 지정의 경우, 결산기(반기)말 실적 확인시 자구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즉시 시장조치

— 이후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본잠식률 50%미만이 된 경우 관리종목 지정 해제

< 퇴출요건 개선내용 >

	기 준	개 정
요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말 자본전액잠식 • 연말 50%잠식(관리종목) 후 1반기 또는 1년후 동 상태 유지(퇴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반기말 또는 연말 50%잠식(관리종목) 후 1반기후 동 상태 유지(퇴출)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기말 또는 연말 자기자본 10억원미만(관리종목) 후 1반기후 동 상태 유지(퇴출)
자구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종목 · 퇴출시 모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출시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인의 확인서로 확인 (확인되면 관리종목 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확인 (확인 이후에도 관리종목 유지)

○ 상장전 지분변동제한의 완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6조 1항, 21조 1항 : 2006/12/22 개정, 12/26 시행)

- 최대주주 등 및 5% 이상 주주의 소유주식비율 변동제한을 폐지하고, '최대주주 변경 제한'으로 완화
 - 최대주주 등의 지분변동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질적심사 및 매각제한 강화를 통해 이를 보완
 - *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비율변동으로 인하여 경영안정성이 저해되거나 주주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할 것
 - * 예비심사청구전 1년간 3자배정자 및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자는 상장후 1년간 동 주식의 매각을 제한

	기 준	개 정
상장전 지분변동제한	최대주주 · 특수관계인 · 5% 주주 * 지분율이 유지될 것	최대주주 * 지위가 유지될 것
상장후 매각제한	최대주주 · 특수관계인	좌 동
		상장청구전 1년간 ·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양수한 자 · 제3자배정으로 신주를 받은 자

○ 복수 평가기관에 의한 기술평가제도 도입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9조 : 2006/2/17 개정, 2/20 시행)

- 종래에는 요건을 갖춘 전문평가기관 중 한 개의 기관을 지정하여 기술평가를 받도록 하였던 것을, 2개의 기관을 지정하여 복수 평가를 받도록 평가절차를 개선함

- 2개 기관의 평가결과가 상이한 경우에는 이중 낮은 등급을 적용

○ 우회상장의 판단기준이 되는 경영권 변동의 개념 설정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시행세칙 19조 : 2006/6/23 개정, 6/26 시행)

— 합병(주식교환, 영업양수 등)으로 인하여 당해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 합병(주식교환, 영업·자산양수)신고서 제출일 이전 1년 이내에 당해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 영업양수 등의 경우 3자배정증자의 발행일이 신고서 제출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발행일까지의 최대주주 변경을 포함

— 비공개법인의 5%이상 주주 및 최대주주 등이 합병(주식교환, 영업양수 등) 결과 소유하게 되는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의 합계가 코스닥상장법인의 기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수보다 큰 경우

- 다만, 비공개법인의 5% 이상 주주 및 최대주주 등이 신고서 제출전 1년 이전에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된 경우는 제외

○ 우회상장 절차 등과 관련한 세부 시행방안 마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 세칙 19조 : 2006/6/23 개정, 6/26 시행)

— 합병(주식교환, 영업양수 등)요건의 충족여부 등과 관련하여 당해 신고서 제출 이전에 거래소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으며,

— 비공개법인과 합병(주식교환, 영업양수 등)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경영권변경여부 및 합병요건 등의 확인을 위해 거래소가 정한 서식에 따른 확인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우회상장 법인에 대한 공표기간 설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19조의4 : 2006/6/23 개정, 6/26 시행)
 - 합병(주식교환, 영업양수 등)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차기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까지

- 우회상장 절차와 관련한 매매거래정지기간 설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9조 : 2006/6/23 개정, 6/26 시행)
 - 합병·주식교환 : 공시일부터 신고서제출일까지
 - 다만, 요건충족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일까지
 - 영업양수등 : 공시일부터 신고서제출일까지
 - 다만, 요건충족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일까지
 - 이후 3자배정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충족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3자배정 공시일부터 요건충족여부 확인일까지 매매거래정지 추가

- 상장폐지시 의견청취 관련 세부절차 마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35조 : 2006/6/23 개정, 6/26 시행)
 - 이의신청이 가능한 퇴출사유가 발생한 경우 거래소가 당해 사실을 해당법인에게 통보
 - 이의가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외부전문가 의견 등을 첨부하여 이의신청
 - 이의신청후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여부 심의 (당해 기업 대표자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
 - 상장위원회 심의후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 결정

- 신규상장시 유동성공급계약서 제출 의무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15조, 16조 : 2006/7/7 개정, 7/10 시행)
 - 상장지수펀드(ETF)의 신규상장시 첨부서류로서 유동성공급자(LP)와 체결한 유동성공급계약서를 제출토록 의무화

- 유동성공급계약 변동시 신고의무 부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30조, 32조 : 2006/7/7 개정, 7/10 시행)
 - ETF의 유동성공급계약이 신규로 체결되거나, 변경 및 해지된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

- 유동성공급자(LP)의 의무이행 평가기준 마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33조의2 : 2006/7/7 개정, 7/10 시행)
 -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LP의 유동성공급의무 이행이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간주
 -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호가가격차이가 호가가격단위의 10배를 초과하는 상태가 5분 이상 지속되는 동안 상대우선평가대비 10호가단위 이내의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시하지 않은 날이 10일 이상 연속되거나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20일 이상인 경우
 - 괴리율이 3/100을 초과한 날이 5일 연속되거나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10일 이상인 경우
 - 시스템장애로 인한 경우, 대상지수나 기초자산의 급격한 가격변동이 있는 경우 및 정치·경제상황의 급변 등으로 시장조성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는 적용을 면제

-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의 기준시기 변경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6조 : 2006/10/27 개정, 12/1 시행)
 - 매출액, 경상손실, 자본잠식 등과 관련한 관리종목 지정시기를 기존의 사업보고서 기준에서 감사보고서 기준으로 변경
 - 반기의 경우에는 반기 검토보고서 기준

- 관리종목 지정일의 통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6조 : 2006/10/27 개정, 12/1 시행)
 - 관리종목 지정일을 당해 사유 확인일의 익일로 통일함
 - 기존에는 관리종목 지정일을 지정사유에 따라 사유확인일 또는 그 익일 등으로 달리 운영하였으나, 사유가 확인된 날의 익일로 통일
 - 매매거래정지는 사유 확인일 및 그 다음날부터 2일간으로 통일

- 외국기업 코스닥상장계약서의 내용 정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서식 8-2 : 2006/10/27 개정, 11/1시행)
 - 상장시 적용한 회계처리기준과 동일한 종류의 회계처리기준을 상장 이후에도 유지하도록 의무화
 - 외국지주회사 요건을 적용받아 상장한 외국기업의 경우 상장 이후에도 자회사 지분율을 지주회사 기준(30% 초과 and 최다출자)에 적합하도록 유지할 것을 의무화
 - 상장대리인 및 공시대리인 변경시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 외국기업 상장관련 제출서류 보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3조의2, 13조, 서식 4-2 : 2006/10/2 개정, 11/1 시행)
 - 예탁자계좌부 기재 확인을 위한 서류 및 주식사무대행기관과의 사무대행 계약서 등 외국기업 상장과 관련한 제출서류를 보완
 - 외국기업 상장신청서 서식을 마련

- 영업·자산 양수시 매매거래정지 기간 단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9조 : 2006/10/27 개정, 11/1 시행)
 - 우회상장에 해당하지 않는 영업·자산 양수시에는 매매거래정지기간을 단축
 - 요건충족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만 매매거래정지(요건충족여부 확인일까지)
 - 우회상장에 해당(경영권변경 등이 있는 경우)하는 영업·자산 양수시에는 매매거래정지기간을 유지
 - 수시공시후 신고서 제출일까지(요건충족여부 미확인의 경우에는 확인일까지 매매거래정지 추가)

- 매출액 기준 등에 의한 사전기술평가 의무 폐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9조 : 2006/10/27 개정, 11/1 시행)
 - 매출액 또는 업력이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예비심사청구전 의무 기술평가제도 폐지
 - 최근 사업연도(OR 3년 평균) 매출액 30억원 미만 또는 업력 2년 미만 기업이 적용대상

- 성장형벤처기업 인정 대상의 명확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7조 : 2006/10/27 개정, 11/1 시행)
 - 수익성요건(경상이익, ROE)을 충족하는 기업도 업종·기술평가 등 요건 충족시 성장형벤처기업으로 인정

- 해외증권의 전환신주 등에 대한 상장신청시 첨부서류 제출의무 신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18조 6항 : 2006/11/29 개정, 11/30 시행)
 - 해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CB·BW·DR 등)의 전환권 행사 등으로 인한 신주의 상장을 신청하는 경우 유가증권신고서, 신고서 면제확인서 또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매각제한 증빙서류 등의 첨부서류 제출의무를 신설함
 -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시 첨부서류 제출의무를 면제

- 심사청구전 주식취득자의 매각제한에 대한 예외사항의 신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조 1항 : 2006/12/22 개정, 12/26 시행)
 - 지분변동제한 완화에 대한 보완으로 신설된 매각제한 대상중 매각제한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항을 신설
 -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종업원이 취득하는 경우
 - 벤처금융 또는 기관투자자가 제3자 배정으로 취득하는 경우
 - 법령상 의무의 이행 등으로 취득하게 된 경우 등

- 우회상장시 단기사업연도 요건 적용대상의 확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19조 3항, 19조의2 3항, 19조의3 4항 : 2006/12/22 개정, 12/26 시행)
 - 우회상장시 비공개기업에 대한 경영성과 및 감사의견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결산기 변경으로 인한 경우 이외에도 법인 설립, 기업분할 등으로 최근사업연도가 6월 미만인 경우 최근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대해서도 동 요건을 적용
 - 기존에는 결산기 변경으로 인해 최근사업연도가 6월 미만인 경우에만 동 요건을 적용

2. 채권시장

가. 발행시장

- 외국법인 등의 채권등록발행 근거 마련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41조의2 : 2006/6/15 개정 · 시행)
 - 외국정부 · 외국의 공공단체 또는 외국법인 등이 발행하는 원화표시채권 및 외화표시채권을 공사채등록법상 등록대상 채권으로 지정함

나. 유통시장

- 소액채권의 범위 확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61조 2호 : 2006/7/21 개정, 8/1 시행)
 - 서울특별시지역개발채권을 서울도시철도채권과 동일한 종류의 소액채권으로 추가

- 국고채스트리핑행사에 따른 무이표부 국고채 매매수량단위 하향조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66조 3호 : 2006/10/12 개정, 11/6 시행)
 - 이표부 국고채의 원금·이자분리에 따른 무이표부 국고채에 대한 매매수량단위를 '액면 1만원'으로 별도 규정

- 체결관련 양방향조성호가 제출사유 추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79조 : 2006/10/12 개정, 11/6 시행)
 - 양방향조성호가의 어느 일방의 잔량이 양방향조성호가 수량단위(100억원) 미만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60분경과 후 양방향조성호가를 다시 제출

- 국채전문유통시장 매매거래수량 단위의 하향조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84조 : 2006/10/12 개정, 11/6 시행)
 - 액면 100억원 → 액면 10억원

- 국고채전문딜러(PD)의 기능제고를 위한 Repo신고매매의 도입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76조 : 2006/12/20 개정, 2007/1/2 시행)
 - 국고채전문딜러(PD)의 원활한 역할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환매채거래의 신고매매를 허용
 - 거래기간 : 360일 이내

- 만기별 종목당 발행액에 대한 일정금액 부과방식을 발행회차별로 동일자 발행분을 1종목으로 부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 2 : 2006/4/18 제정, 4/19 시행)
 - 월중 계속 매출되는 특수채와 같이 종목이 다수의 경우라도 상장신청일 및 발행일이 동일하면 1종목으로 부과

- 수익률 공시대상채권의 추가 (채권장외거래공시 등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3조 : 2006/1/25 개정·시행)
 - 장외거래 대표수익률 공시대상채권에 국고채권(20년)을 추가함
 - 잔존기간 18년~20년

- 수익률 공시대상채권의 잔존기간 세분화 (채권장외거래공시 등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3조 : 2006/1/25 개정·시행)
 - 종류별 잔존기간별 가중평균수익률 공시대상 채권의 잔존기간을 세분화
 - 3년 초과 → 3년~5년, 5년~10년, 10년 초과

- 수익률 보고대상채권의 추가 (채권장외거래공시 등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4조 : 2006/1/25 개정·시행)
 - 특정 잔존기간의 수익률 보고대상채권, 잔존만기별 수익률 보고대상채권, 채권종류별 잔존만기별 시장수익률 보고대상채권에 국고채권(20년)을 추가함

3. 파생금융상품시장

- 시장조성자 도입근거 마련 (선물시장 업무규정 7조의2 1항 : 2006/10/2 개정, 12/4 시행)
 -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장을 조성하는 시장조성자 제도를 도입함
 - 시장조성자는 신상품 등에 적용
 - 복수의 시장조성자도 허용하여 상호경쟁을 통한 시장조성효과를 극대화하여 일반투자자의 거래비용을 축소
- 시장조성자의 자격 (선물시장 업무규정 7조의2 2항 : 2006/10/27 개정, 12/4 시행)
 - 시장조성자는 자기계산으로 거래하는 자이므로 자기매매업을 허가받은 자로 한정

— 시장조성자는 자기명의로 거래하여야 하므로 회원으로 하되, 재무건전성이 높은 결제회원으로 한정

○ 시장조성자제도의 적용종목 (선물시장 업무규정 7조의2 3항 : 2006/10/27 개정, 12/4 시행)

—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할 수 있는 종목은 신상품 및 유동성관리품목의 종목중 세척이 정하는 종목으로 함

- 신상품의 경우 상장초기 유동성 확보가 중요
- 유동성관리품목은 일정기간내에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상장 폐지되므로 모든 관리품목에 대해 적용
- 시장조성자제도의 적용종목은 선택과 집중을 위하여 세척에서 최근 월물만 적용하도록 함 (옵션의 경우 최근월물의 $ATM \pm 2$)

○ 시장조성계약의 체결 (선물시장 업무규정 7조의3 : 2006/10/27 개정, 12/4 시행)

— 시장조성자가 되고자 하는 회원은 사전에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

- 계약체결회원이 시장조성하고자 하는 종목, 계약기간, 계약의 중도 해지사유 등을 세척에서 정함

- 시장조성호가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최우선호가 간격의 수준 (선물시장 업무규정 7조의4 1항 1호, 2호 : 2006/10/27 개정, 12/4 시행)
 - 최우선 매도호가(매도호가 없는 경우에는 상한가에서 호가가격단위를 뺀 가격)와 최우선 매수호가(매수호가 없는 경우에는 하한가에 호가가격단위를 더한 가격)의 간격이, 선물거래의 경우 호가가격단위의 10배, 옵션거래의 경우 호가가격단위의 10배에 상당하는 수준으로서 세척이 정하는 수준으로 함

- 시장조성호가 제출의무발생시점부터 5분 이내에 쌍방 또는 일방호가 제출 (선물시장 업무규정 7조의4 1항 본문 : 2006/10/27 개정, 12/4 시행)
 - 최우선호가간격을 축소시키는 고가매도와 저가매수의 쌍방호가는 일방호가를 유인하는 효과가 크고, 손실 및 재고위험이 적으므로 허용
 - 일방호가의 경우 시장조성자별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시황판단이 상이하고, 쌍방호가로 발생한 재고포지션 해소의 편리성을 위해 허용
 - 시장조성자의 의무호가 제출빈도 및 시황판단 소요시간 등을 감안하여 의무발생 시점부터 5분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

- 시장조성호가 제출의무의 면제 (선물시장 업무규정 7조의4 1항 단서 : 2006/10/27 개정, 12/4 시행)
 - 회원선물·옵션시스템의 장애, 회원의 파업 기타 세척이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조성호가 제출의무를 면제

○ 가격연속성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의무호가 제출 (선물시장 업무규정 7조의4 2항 : 2006/10/27 개정, 12/4 시행)

— 호가제출의무 발생시점의 최우선호가 간격에 직전의 약정가격(직전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가격)이 포함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제출되는 최우선호가 간격에도 직전의 약정가격이 포함되도록 하여 가격의 연속성을 유지

○ 시장조성호가의 제출방법 (선물시장 업무규정 7조의5 : 2006/10/27 개정, 12/4 시행)

— 시장조성계좌를 통하여 제출

• 시장조성호가는 별도로 개설된 시장조성계좌를 통하도록 하여 시장조성자에 대한 할인적용 거래증거금의 산출을 용이하게 하고, 시장감시와 시장조성 실적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함

— 지정가호가로 제출

• 지정가호가 아닌 시장가호가등은 매도·매수의 최우선호가 개념이 없고 가격을 지정하지 않으므로 적용제외

— 접속매매시간에 제출

• 단일가호가 접수시간에는 우선호가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접속매매시간에 한하여 제출하도록 하되, 세칙에서 정하는 접속매매시간에는 제외하도록 정함

— 의무호가는 호가당 5계약 이상으로 제출

• 시장조성호가의 제출은 결제회원에만 허용되므로 일반투자자의 호가수량(1계약)의 5배 이상으로 제출하도록 함

- 시장조성계좌를 통한 시장의 유동성 및 가격의 연속성 제고 호가의 허용
 - 시장조성계좌를 통하여 시장의 유동성을 제고하는 호가중 세척이 정하는 호가의 제출을 허용함
 - 시장조성계좌를 통하여 가격의 연속성을 제고하는 호가중 세척이 정하는 호가의 제출을 허용함

- 시장조성자에 대한 거래증거금 감면 등 (선물시장 업무규정 7조의6 : 2006/10/27 개정, 12/4 시행)
 - 거래소는 시장조성자에 대하여 시장조성할 때부터 거래증거금을 감면할 수 있음
 - 거래소는 시장조성의 실적을 평가한 후 그 실적에 따라 해당 종목의 초과 거래수수료의 일부를 해당 시장조성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 거래증거금의 감면수준, 시장조성실적의 평가시기 및 방법, 초과거래수수료의 지급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세척에서 정함

- 가격급등락 완화 장치 (선물시장 업무규정 225조 1항 4호 : 2006/10/27 개정, 12/4 시행)
 - 시장조성 종목이 포함된 품목의 각 종목별로 성립될 가격(예정가격)과 직전의 약정가격과의 차가 세척이 정하는 일정 수준을 초과하여 급변이 예상되는 때에는 당해 종목에 대해 단일가매매 하여 가격 급등락을 완화

○ 국채선물 등의 시장조성자 제도 폐지 (선물시장 업무규정 34조~39조 : 2006/10/27 개정, 12/4 시행)

- 국채선물(3년·5년), 국채선물옵션(3년), 금리선물(통안증권, CD), 통화선물·옵션(달러, 엔, 유로)에 적용되던 시장조성자제도를 폐지하여 상품별 시장조성자제도의 형평을 도모

< 신 시장조성자제도와 기존 시장조성자제도의 차이점 >

구분	신 시장조성자제도	기존 시장조성자제도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거래 허가받은 자 - 결제회원 - 시장조성직원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거래 허가받은 자 - 회원(거래전문회원 가능) - 시장조성직원 지정
유동성 요건	자유동성	좌동
시장조성계좌	의무적으로 개설	좌동
결제월	원칙적으로 최근월물	제한없음
권리행사가격	ATM±2	2개이상의 종목
의무호가간격	10틱(옵션 15~30%)	제한없음
의무호가수량	거래단위의 5배	제한없음
의무호가유형	지정가	좌동
의무호가제출	의무발생시 5분 이내	2시간 이상
의무호가제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방호가 - 일방호가 	쌍방호가
시장조성계좌로 가능한 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결호가 - 시장심도 심화호가 - 시장폭 확대호가 	의무호가만 허용
메리트 제공주체	거래소	좌동
메리트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수수료 면제 - 초과거래수수료 지급 - 거래증거금 인하 	거래수수료 면제
가격급등락 완화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가한도수량 축소 - 장중단일가 	없음

- 코스피 200 옵션의 권리행사가격(종목) 수 확대 (선물시장 업무규정 205조 2항 : 2006/10/27 개정, 12/4 시행)
 - 코스피 200 옵션의 권리행사가격밴드를 전일 종가기준으로 ATM±10P 에서 ATM±15P로 확대함으로써 2001년 이후 장중 일일 최대변동폭 (2006년 평균 11.68P)을 여유 있게 커버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의 종목 선택기회를 확대

- 주식관련상품 상·하한가호가의 단일가매매시 배분방법 개선 (선물시장 업무규정 221조 3항 2호 : 2006/10/27 개정, 12/4 시행)
 - 주식관련상품의 경우 단일가호가 배분시 상·하한가(옵션의 경우 호가최고·최저한도가격)를 포함한 모든 가격에 대해 시간우선의 원칙을 적용하는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여 더 이상 가격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하한가의 경우 수량우선의 원칙(동일수량인 경우 시간우선의 원칙)을 적용하여 투자주체별(소액투자자와 기관투자자간) 배분의 공평성을 기함
 - 수량배분시 기존 전량배분(1단계)에서 9단계로 세분화하여 소액투자자에게도 충분한 배분기회를 제공 (구체적인 방법은 세칙에서 정함)

< 9단계별 배분수량 >

배분단계	단계별 배분수량	
	선물	옵션
1단계	1계약	5계약
2단계	5계약	25계약
3단계	10계약	50계약
4단계	20계약	100계약
5단계	50계약	250계약
6단계	100계약	500계약
7단계	200계약	1,000계약
8단계	잔량의 1/2	
9단계	잔량	

○ 코스피 200 선물 순미결제약정 보유한도 확대 (선물시장 업무규정 265조
: 2006/10/27 개정, 12/4 시행)

— 코스피 200 선물의 순미결제약정 보유한도를 기존 5,000계약에서
7,500계약으로 확대

- 기존의 보유한도는 설정 당시에 비해 시장변동성 축소에 따른 결제 불이행위험 감소 및 시장지배력 감소에 따른 불공정행위의 여지가 축소되었으므로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도모 및 투자 불편 해소 등을 위해 확대함

○ 신탁업 겸영 선물업자의 신탁거래를 위탁거래로 구분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78조 1항, 별표 8 : 2006/3/8 개정, 3/20 시행)

— 선물업자(증권회사)의 신탁거래를 위탁거래로 구분하여 호가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고 호가내용의 입력코드를 "5"로 함

- 선물업자의 신탁거래는 선물업자의 지위가 아닌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자기자산이 아닌 신탁자산(타인자산)의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거래이므로 자기거래에 해당되지 않고, 신탁업자(증권회사)가 타인 자산(신탁자산)의 운용을 위하여 선물업자(동일 명의의 증권회사)에게 위탁하는 거래구조이므로 위탁거래에 해당함

* 신탁업을 겸영하는 증권회사의 신탁거래의 경우 형식적인 명이는 선물업자이지만 실질적인 계산의 귀속주체는 수익자(고객)이므로 자기거래와 위탁거래의 중간적 성질이 있음

< 재산 운용자별 위탁·자기거래의 구분 >

구분	재산운용자	주문자	호가자	위탁행위	거래구분
고유 재산 (자기자산)	회원 선물업자(A)	-	A	×	자기거래
	비회원 선물업자(B)	B	A	○	
	신탁업자(C)	C	A	○	위탁거래
신탁 재산 (타인자산)	회원 선물업자(A)	형식: A (신탁업자) 실질:수익자	A (선물업자)	△	
	비회원 선물업자(B)	B	A	○	
	신탁업자(C)	C	A	○	

* 신탁재산은 신탁업자 및 신탁업 경영 금융기관(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만 운용 가능

○ 엔선물 및 유로선물의 주문가격 제한범위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8조 1항 8호·9호 : 2006/5/22 개정, 5/26 시행)

— 엔선물 및 유로선물의 주문가격의 제한범위는 미국달러선물과 동일하게 각각 주문제한기준가격(전일의 정산가격)에 100을 가산한 가격을 상한, 차감한 가격을 하한으로 함

○ 엔선물 및 유로선물의 협의대량거래의 거래가능수량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8조 4호·5호 : 2006/5/22 개정, 5/26 시행)

— 엔선물 및 유로선물의 협의대량거래의 거래가능수량은 미국달러선물과 동일하게 각각 200계약을 최소수량, 3,000계약을 최대수량으로 함

○ 엔선물 및 유로선물의 거래증거금률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6조
2항 8호·9호 : 2006/5/22 개정, 5/26 시행)

— 증거금기준가격(환율)의 가격변동을 추세를 고려하여 엔선물 및 유로
선물의 거래증거금률을 2.5%로 함

- 거래증거금률은 증거금기준가격의 2일간 변동률에 대해 “평균+3×
표준편차”(μ+3σ) 수준(99%)에서 결정함
- 2005년 엔선물 및 유로선물의 2일간 변동률(μ+3σ)은 원/엔이
2.15%, 원/유로가 2.34%임

○ 유동성관리품목 지정기준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45조 1항 :
2006/5/22 개정, 5/26 시행)

— 매일 최초거래일의 직전 3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이 다음의 유동성관리
기준수량에 미달하는 품목을 유동성관리품목으로 지정함(상장후 거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품목에 한함)

- 주가지수 품목 : 300계약
- 주식 품목 : 기초주권별 50계약
- 금리 품목 : 200계약
- 통화 품목 : 100계약
- 일반상품 품목 : 50계약

- 유동성관리품목의 관리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45조 2항 : 2006/5/22 개정, 5/26 시행)
 - 거래소는 유동성관리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하여 유동성관리기간 (최장 18개월) 동안 거래부진 원인 등을 분석하고 그 원인의 해소 등 거래가 활성화 되도록 함

- 유동성관리품목의 지정제외 기준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45조 3항 : 2006/5/22 개정, 5/26 시행)
 - 유동성관리품목 지정 후 매월 최초거래일의 직전 3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이 3회 연속 유동성관리기준수량 이상으로 되는 경우
 - 유동성관리기간의 종료 직후 3개월간의 일평균 약정수량이 유동성관리기준수량 이상으로 되는 경우
 - 상장폐지예고품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 유동성관리품목의 지정시기 및 공표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45조 4항 : 2006/5/22 개정, 5/26 시행)
 - 거래소는 유동성관리품목의 지정 및 지정제외 사실 등을 기준 해당일의 익일(매월의 최초거래일)에 지체없이 공표함

- 상장폐지예고품목 지정기준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46조 1항 : 2006/5/22 개정, 5/26 시행)
 - 유동성관리품목 지정후 유동성관리기간 종료 직전 3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이 상장폐지예고기준수량(유동성관리기준수량의 1/3)에 미달하거나

- 유동성관리기간 종료 직전 3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이 상장폐지예고기준 수량 이상인 경우, 유동성관리기간 종료 직후 3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이 유동성관리기준수량에 미달하는 품목을 상장폐지예고품목으로 지정함

○ 상장폐지예고품목 지정의 유예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46조 2항 : 2006/5/22 개정, 5/26 시행)

- 거래소는 동종 또는 유사 품목의 상장 여부, 단기간 이후의 재상장 가능성,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장폐지예고품목의 지정을 6개월 이내의 기간 유예할 수 있음

○ 상장폐지예고품목 지정 등의 공표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46조 3항 : 2006/5/22 개정, 5/26 시행)

- 거래소는 상장폐지예고품목의 지정사실 등을 해당일의 익일에 지체없이 공표함

< 주식옵션 행사가격 설정간격 >

행사가격(S)	기 준		개 정	
	간격(A)	ATM± 4간격(B)/S	간격(A)	ATM± 4간격(B)/S
5천원 미만	100원	8.0% ~	100원	8.0% ~
5천원 ~ 1만원 미만	250원	10 ~ 20%	200원	8 ~ 16%
1만원 ~ 2만원 미만	500원	10 ~ 20%	500원	10 ~ 20%
2만원 ~ 5만원 미만	1,250원	10 ~ 25%	1천원	8 ~ 20%
5만원 ~ 10만원 미만	2,500원	10 ~ 20%	2천원	8 ~ 16%
10만원 ~ 20만원 미만	5천원	10 ~ 20%	5천원	10 ~ 20%
20만원 ~ 50만원 미만	12,500원	10 ~ 25%	1만원	8 ~ 20%
50만원 ~ 100만원 미만	2만5천원	10 ~ 20%	2만원	8 ~ 16%
100만원 이상	5만원	~ 20%	5만원	~ 20%

○ 외화(증거금)의 종류 확대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8조 1항, 별지 10호 서식 : 2006/7/19 개정, 10/2 시행)

— 현금(원화)에 갈음하여 거래증거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외화의 종류를 확대함

- 환금성, 선물거래 참여비중 및 국내은행의 취급여부 등을 감안하여 기존 7개국 통화 외에 스위스 프랑화 및 캐나다 달러화를 추가

* 기존 외화 : 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 유럽연합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홍콩 달러화, 호주 달러화, 싱가포르 달러화

○ 외화증거금제도의 시행일 지정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부칙 : 2006/7/19 개정, 10/2 시행)

— 관계법규, 시스템 반영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이 유보되고 있는 외화 증거금제도 관련규정은 200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함

< 외화증거금제도의 주요내용 >

외화의 종류 (9개국 통화)	- 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 유럽연합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홍콩 달러화, 호주 달러화, 싱가포르 달러화, 스위스 프랑화 및 캐나다 달러화 (28조 1항)
외화의 평가가격	- 기준시세 × 사정비율 (28조 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원 미만 절사 · 산출시기 : 매일 · 사정비율 : 95%
기준시세	-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해 지정 · 고시되는 날의 매매기준율 (28조 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달러화 : 당일 15시 30분에 산출되어 익일 8시 30분에 지정 · 고시되는 매매기준율 · 기타 외화 : 당일 8시 30분에 산출 · 지정 · 고시되는 재정된 매매기준율
기준시세 등의 변경	- 거래소는 외화의 담보가치 변동, 환금의 제한 기타 시장관리상 필요시 외화의 종류를 제한하거나 외화의 기준시세 및 사정비율 그 밖에 외화의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있음 (28조 4항)

○ 시장조성자의 자격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조의2 : 2006/11/13 개정, 12/18 시행)

— 시장조성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소속 임·직원 중에서 시장조성담당자를 지정하고 이를 사전에 거래소에 통지함

○ 시장조성호가의 제출 종목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조의3 : 2006/11/13 개정, 12/18 시행)

— 시장조성 결제월은 선택과 집중을 위하여 최근월물로 한정하되, 최종 거래일에 해당하는 요일과 동일한 전주의 요일(휴장일인 경우 순연)부터는 차근월물을 시장조성 대상으로 함

• 다만, 일반상품선물거래는 계절적 수요에 따라 원월물의 유동성도 높을 수 있으므로 결제월을 제한하지 않고 1개 이상의 결제월로 함

— 옵션거래의 경우 선물거래와 동일한 결제월에 속하는 등가격(ATM) 1개와 등가격에 연속하는 2개의 내가격(ITM) 및 외가격(OTM)의 5개로 함

○ 시장조성호가의 제출가능 기간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조의3 : 2006/11/13 개정, 12/18 시행)

— 시장조성호가를 의무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기간(시장조성기간)은 동일대상물거래(실물인수도방식의 선물거래, 현금결제방식의 선물거래 및 옵션거래중 동일한 거래 및 대상물 또는 기초자산이 동일한 것)의 상장일이 속하는 분기를 포함하여 8개 분기 즉 24개월(유동성관리품목인 경우에는 상장폐지예고지정일의 전일까지)로 함

- 거래소는 시장조성품목의 유동성 수준, 시장조성자가 아닌 자의 시장 참여 정도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시장조성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 서면에 의한 시장조성계약 체결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조의4 : 2006/11/13 개정, 12/18 시행)

- 시장조성계약은 서면으로 다음 사항에 대해 계약을 체결함
 - 시장조성자의 관련법규의 준수 및 성실한 시장조성의무
 - 시장조성하고자 하는 품목 및 품목별 시장조성개시일
 - 선물관련규정에 따른 시장조성기간의 변경, 시장조성제도의 변경 등 제조치, 시장조성실적 평가 등급 공표에 대한 이의제기나 민·형사상의 조치 금지 등 거래소의 면책 사항
- 거래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대상물거래의 시장조성자의 수를 적정하게 하거나 시장조성계약의 체결거부 또는 중도해지 등을 할 수 있음
 - 특정한 동일대상물거래에 집중되는 경우
 -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동일대상물거래가 과도하게 많은 경우
 - 시장조성실적의 평가 등에 비추어 시장조성을 태만히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거래의 공정성 또는 건전성을 저해하였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 시장조성계약기간은 분기단위로 함
- 분기 종료 7일 전까지 시장조성자가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지 않으면 다음 분기까지 계약기간을 자동 연장함

- 호가가 없는 경우의 의무호가 제출기준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조의5 : 2006/11/13 개정, 12/18 시행)
 - 매도호가 없는 경우에는 상한가(옵션거래의 경우 호가최고한도가격)보다 호가가격단위(1 Tick) 만큼 낮은 가격을 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으로 함
 - 매수호가 없는 경우에는 하한가(옵션거래의 경우 호가최저한도가격)보다 1 Tick만큼 높은 가격을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으로 함

- 옵션거래의 시장조성호가 제출의무 발생기준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조의6 : 2006/11/13 개정, 12/18 시행)
 - 옵션거래의 경우 최우선매도호가와 최우선매수호가의 간격이 최우선매수호가 가격의 15/100(3년 국채선물옵션거래 및 5년 국채선물옵션거래의 경우에는 25/100)를 초과하면 호가간격을 줄이는 시장조성호가를 의무적으로 제출함

- 시장조성계좌개설 등의 거래소 신고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조의7 : 2006/11/13 개정, 12/18 시행)
 - 시장조성자가 시장조성계좌를 개설·변경 또는 폐쇄하는 때에는 시행일의 7일 전에 거래소에 신고함

○ 접속거래시간중 시장조성호가의 의무제출 면제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
세칙 2조의8 : 2006/11/13 개정, 12/18 시행)

— 접속거래시간 중 매도·매수의 최우선�호가 간격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면 시장조성호가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나, 다음의 접속거래시간 중에는 제출의무가 없음 (자발적인 제출은 가능)

- 직전 약정가격이 상하한가 중인 경우
- 상한가 등(하한가 등)에 매수(매도)의 호가가 있는 경우
- 장중 단일가 결정후 20분간
- 주식시장의 Random End로 단일가호가시간이 연장되는 경우 그 시간
- 주식시장의 단일가 미결정으로 단일가호가시간이 연장되는 경우 그 시간

○ 시장조성계좌를 통한 의무호가 이외의 제출가능호가(권리호가)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조의9 : 2006/11/13 개정, 12/18 시행)

— 시장조성자는 시장조성계좌로 의무호가 이외에 동일 품목에 대한 다음의 호가를 임의로 제출 가능

- 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 이상의 매수의 지정가호가 또는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 이하의 매도의 지정가호가(체결가능 지정가호가)
- 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 이상의 매도의 지정가호가 또는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 이하의 매수의 지정가호가(시장폭 확대 및 시장심도 심화의 지정가호가)

- 주식관련상품에 대한 거래증거금의 감경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조의10 : 2006/11/13 개정, 12/18 시행)
 - 주식관련상품의 경우 시장조성계좌를 통하여 성립된 거래에 대한 거래증거금은 일반 계좌 거래증거금액의 80% 수준으로 감경

- 시장조성실적의 평가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조의11 : 2006/11/13 개정, 12/18 시행)
 - 거래소는 동일품목에 대한 시장조성실적을 분기별로 평가
 - 거래소는 평가실적의 순위를 공표할 수 있음
 - 거래소는 시장조성실적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시장조성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시장조성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함
 - 시장조성실적의 평가는 시장조성호가 제출의무의 성실히행평가(의무이행평가) 100점과 시장조성계좌를 통한 거래량 평가(거래량평가) 100점으로 구분하되, 순위는 합산점수로 결정함

- 시장조성자에 대한 대가의 지급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조의12 : 2006/11/13 개정, 12/18 시행)
 - 시장조성품목별로 시장조성자에게 지급할 대가총액은 시장조성실적의 평가기간동안 동일대상물거래에서 징수한 거래수수료의 80%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함
 - 대가총액의 50%(의무이행 대가총액)는 의무이행평가기준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거래량 대가총액)은 거래량평가기준으로 지급

- 거래소는 거래수수료의 수준을 변경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가율을 변경할 수 있음

— 대가는 시장조성평가대상 분기종료후 1개월 이내에 지급

○ 시장조성품목의 호가한도수량 축소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7조 1항, 87조 1항, 94조 1항 : 2006/11/13 개정, 12/18 시행)

— 시장조성하는 품목에 속하는 모든 종목의 호가한도수량을 일반 품목의 경우보다 1/10로 축소

- 선물거래 : 1,000계약 → 100계약, 옵션거래 : 5,000계약 → 500계약
- 시장조성자를 포함한 모든 회원 및 투자자에게 적용

○ 시장조성계좌를 통한 호가의 별도 구분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별표 8, 80조 2호 : 2006/11/13 개정, 12/18 시행)

— 시장조성계좌를 통한 호가는 일반의 자기거래호가와 구분하여 별도의 코드로 입력함

- 시장조성호가와 권리호가를 구분하여 별도 코드로 입력

— 시장조성계좌를 통한 모든 호가(의무호가 및 권리호가)는 지정가호가의 경우에만 입력을 허용함

○ 국채선물 등의 시장조성자제도 폐지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5조

7항, 44조 1항 : 2006/11/13 개정, 12/18 시행)

— 국채선물거래 등에 적용한 기존 시장조성자제도를 폐지하여 품목별 시장조성자제도의 형평을 도모함

○ 코스피 200 옵션의 행사가격(종목)의 수 확대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
세칙 72조 1항, 73조 1항 : 2006/11/13 개정, 12/18 시행)

— 행사가격의 최초설정

- 거래개시일에 설정하는 행사가격의 수는 분기월물의 경우 5P간격의 5개(ATM±2)에서 7개(ATM±3)로 확대하고, 기타월물의 경우에는 2.5P간격의 9개(ATM±4)에서 13개(ATM±6)로 확대함

— 행사가격의 추가설정

- 거래개시일의 익일 이후에는 분기월물의 경우 OTM 또는 ITM이 2개 이하인 경우 5P간격으로 3개가 되는 때까지, 기타월물의 경우 OTM 또는 ITM이 5개 이하인 경우 2.5P간격으로 6개가 되는 때까지 행사가격을 추가 설정함

< 코스피200옵션의 종목 확대 >

구 분		상장후 3개월 경과되지 않은 3·6·9·12월		기타 월 및 상장후 3개월 경과된 3·6·9·12월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최초 설정	간격	5P	5P	2.5P	2.5P
	수	ATM±2(5개)	ATM±3(7개)	ATM±4(9개)	ATM±6 (13개)
추가설정		ITM 또는 OTM 이		ITM 또는 OTM 이	
		1개 이하인 경우 2개가 되도록 추가설정	2개 이하인 경우 3개가 되도록 추가설정	3개 이하인 경우 4개가 되도록 설정	5개 이하인 경우 6개가 되도록 설정

- 주식관련상품 상·하한가 등의 단일가호가간 다단계 수량배분방법 개선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94조의2 : 2006/11/13 개정, 12/18 시행)
 - 코스피 200 선물 등 주식관련상품의 경우 상·하한가(옵션의 경우 호가최고·최저한도가격)의 단일가호가간에는 9단계의 수량우선 원칙을 적용하여 배분함
 - 수량이 많은 호가가 다음의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수량이 적은 호가에 우선함

< 상·하한가 등의 단일가호가간 9단계별 배분수량 >

배분단계	단계별 배분수량	
	선물	옵션
1단계	1계약	5계약
2단계	5계약	25계약
3단계	10계약	50계약
4단계	20계약	100계약
5단계	50계약	250계약
6단계	100계약	500계약
7단계	200계약	1,000계약
8단계	잔량의 1/2	
9단계	잔량	

- 사후증거금의 예탁시한 개선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28조 5항 : 2006/10/27 개정, 11/13일 시행)
 - 사후 위탁증거금의 예탁시한을 기존 '당일중 회원이 정하는 시간'에서 '당일중 회원이 정하는 시간 또는 그 다음날 10시 이내에서 회원이 정하는 시간'으로 변경

- 회원이 당일 또는 익일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사후 위탁증거금의 당일 납부에 따른 시간축박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결제안정성을 제고함

○ 기본예탁금의 차등적용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53조 1항 : 2006/10/27 개정, 12/18 시행)

— 적격기관투자자와 비적격기관투자자간 구분없이 동일하게 1,500만원 이상으로 적용되는 기본예탁금을 ‘know your customer rule’에 따라 회원이 비적격기관투자자에 대해 3단계로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세칙에서 정하도록 함

- 전문지식 구비 및 고도의 복합투자전략을 구사하여 전문적이고 건전한 투자자로서 수익창출가능성이 높은 투자자는 1단계 적용
- 적격기관투자자를 제외한 신규 투자자의 시장진입시에는 무조건 2단계 이상을 적용하여 현행보다 강화

○ 기본예탁금의 적용 면제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53조 1항 단서 : 2006/10/27 개정, 12/18 시행)

— 사후위탁증거금계좌 및 옵션매수전용계좌(옵션을 매수 또는 매수 미결제약정의 반대매매만 하는 계좌)의 경우 기본예탁금의 적용을 면제

○ 위탁자별 미결제약정 보유제한수량의 차등적용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73조의2 : 2006/10/27 개정, 12/4 시행)

—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수탁할 수 있는 미결제약정 보유한도를 기존의
업무규정(265조)에서 수탁계약준칙으로 이관하여 규정체계를 정비하고
세칙에서 보유한도를 차등적용

— 주가지수선물 순미결제약정 보유한도의 위탁자별 차등적용

- 모든 투자자(코스피 200 선물의 경우 비적격기관투자자)에 대해 5,000
계약 이내에서 'know your customer rule'에 따라 위탁자의 재무건
전성 및 신용상태 등을 파악하고 있는 회원이 위탁자의 신용 등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함
- 코스피 200 선물거래의 경우 적격기관투자자는 7,500계약을 최대한
도(최저한도 5,000계약)로 하여 직전월의 미결제보유현황 등을 고려
하여 미결제약정보유한도를 확대하거나 축소함

○ 미국달러선물의 계약당 주문증거금 변경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시행세칙
20조 1항 1호 가목 : 2006/2/2 개정, 2/6 시행)

— 미국달러선물의 계약당 주문증거금을 기존 200만원에서 환율(증거금기
준가격) 구간별로 다음과 같이 변경함

증거금기준가격*	계약당 주문증거금
750.00 이상 ~ 850.00 미만	130만원
850.00 이상 ~ 950.00 미만	145만원
950.00 이상 ~ 1,050.00 미만	160만원
1,050.00 이상 ~ 1,150.00 미만	175만원
1,150.00 이상 ~ 1,250.00 미만	190만원

* 증거금기준가격이 750.00 미만인 경우 계약당 주문증거금은 매 100.00 원 간격으로 130만원에서 15만원씩 차감하여 산출되는 금액으로 하며, 증거금기준가격이 1,250.00 이상인 경우 계약당 주문증거금은 매 100.00 원 간격으로 190만원에서 15만원씩 가산하여 산출되는 금액으로 함

○ 엔선물 및 유로선물의 위탁증거금률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시행세칙 19조 1항, 22조 1항 : 2006/5/22 개정, 5/26 시행)

— 위탁증거금률은 거래증거금률의 약 1.5배 수준에서 결정하므로 엔선물 및 유로선물의 위탁증거금률을 3.5%로 함

• 유지증거금률은 거래증거금률과 동일한 2.5%로 함

○ 엔선물 및 유로선물의 계약당 주문증거금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시행세칙 20조 1항·별표 : 2006/5/22 개정, 5/26 시행)

— 미국달러선물과 동일하게 환율변동에 상응한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환율구간별 계약당 주문증거금액을 사전에 설정함

— 계약당 주문증거금액은 거래편의성을 감안하여 개별 환율구간의 최대 값에 정산차금승수와 위탁증거금률을 곱하여 산출된 증거금액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함

• 최근 환율기준으로 계약당 주문증거금액은 엔선물이 150만원, 유로선물이 220만원임

○ 외화(증거금)의 종류 확대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시행세칙 16조 1항 : 2006/7/19 개정, 10/2 시행)

— 현금(원화)에 갈음하여 거래증거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외화의 종류를 확대함

- 환금성, 선물거래 참여비중 및 국내은행의 취급여부 등을 감안하여 기존 7개국 통화 외에 스위스 프랑화 및 캐나다 달러화를 추가

○ 외화증거금제도의 시행일 지정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시행세칙 부칙 : 2006/7/19 개정, 10/2 시행)

— 관계법규, 시스템 반영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이 유보되고 있는 외화 증거금제도는 200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함

○ 주식관련상품의 선물·옵션기본예탁금제도 개선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시행세칙 31조 : 2006/11/13 개정, 12/18 시행)

— 선물·옵션기본예탁금의 3단계 차등적용

- 코스피 200 선물, 코스피 200 옵션, 스타지수선물 및 주식옵션 등 주식관련상품의 선물·옵션기본예탁금은 'know your customer rule'에 따라 파악된 위탁자별 신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3단계로 차등 적용함

구 분	기본예탁금액
1단계	5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2단계	1,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3단계	3,000만원 이상

- 당해 회원에 계좌를 최초로 설정한 위탁자에 대하여는 2단계 또는 3단계를 적용함

— 회원의 선물·옵션기본예탁금 징수기준 마련 의무

- 회원은 개개 위탁자별로 적용될 단계, 단계별 적용금액 및 적용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선물·옵션기본예탁금적용기준)을 정해야 함
- 회원이 기본예탁금의 적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투자자에 대한 주지 등을 위하여 사전에 공표하고 적용일의 7일 전까지 거래소에 서면 통지하도록 함

○ 주가지수선물에 대한 미결제약정 보유 제한수량의 차등적용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시행세칙 52조의2 1항 : 2006/11/13 개정, 12/18 시행)

— 위탁자가 보유할 수 있는 주가지수선물거래의 순미결제약정수량은 다음의 수량으로 함

- 적격기관투자자(사전에 회원에게 신청한 적격기관투자자에 한함)의 코스피 200 선물거래의 경우 : 5,000계약 이상 7,500계약 이내에서 다음의 방법에 해당하는 수량

구 분		순미결제약정 제한수량
전월 제한수량의 90% 초과 거래일	10일 이상	전월 제한수량 + 500계약
	1일~10일 미만	전월 제한수량
	없음	전월 제한수량 - 500계약

- 스타지수선물거래 및 일반위탁자(미신청 적격기관투자자 포함)의 코스피 200 선물거래의 경우 : 5,000계약 이내에서 회원이 위탁자파악사항 등을 감안하여 위탁자별로 정한 수량

4. 증권예탁·결제

- 예탁된 일부 국고채권에 대한 분리 또는 재결합의 신청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49조의2 : 2006/1/24 개정, 2/20 시행)
 - 예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원금부분은 이를 무이표부 채권으로, 이표부분은 이를 각각의 이표별로 독립된 채권으로 분리 또는 그 분리된 채권들을 재결합할 수 있음
 -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행된 국고채권으로 만기가 5년 이상인 예탁채권을 대상으로 함

- 원금이자분리의 신청방법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49조의3 : 2006/1/24 개정, 2/20 시행)
 - 국고채권에 대한 원금이자분리의 신청은 “800만원 단위”로 증권예탁결제원 소정의 신청서에 의함

- 원금이자분리 및 재결합의 신청시한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49조의4 : 2006/1/24 개정, 2/20 시행)
 - 신청시한은 증권예탁결제원의 매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 다만, 원금이자분리 등의 신청이 그 대상인 원본채권 등의 원리금상환일부터 역산하여 3영업일 이내에 있는 경우 예탁원은 그 신청을 거절 가능함

- 한국은행에 대한 국채등록부의 변경요청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49조의5 : 2006/1/24 개정, 2/20 시행)
 - 예탁자에 의한 신청 당일 증권예탁결제원은 한국은행에 그 신청내용에 따른 국채등록부에의 변경기재를 요청함

- 예탁자계좌부예의 증감기재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49조의6 : 2006/1/24 개정, 2/20 시행)
 - 한국은행으로부터 국채등록부에의 변경기재 사실을 통보받은 증권예탁결제원은 그 사실에 부합하도록 예탁자계좌부에 해당 예탁채권에 대한 증감을 기재

- 증권회사 수수료 중 채권에 대한 수수료율 변경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 2006/4/7 개정·시행)
 - 기존 매매거래대금 합계액의 0.9/10,000에서 0.0225/10,000으로 수수료율을 인하함

- 증권회사 수수료의 징수대상 확대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별표 2 : 2006/4/7 개정·시행)
 - 증권회사 이외에 “증권업을 겸영하는 자”도 증권회사 수수료의 징수대상으로 추가함

- 수탁기관의 범위 확대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2조 1항 5호의5 : 2006/4/7 개정·시행)
 - 수탁기관의 정의에 “투자일임자산이 예탁된 증권회사, 기타 금융기관”을 추가함

- 증권회사수수료의 징수요율 인하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별표 : 2006/7/11 개정, 7/14 시행)
 - 주식(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증서, 주식워런트증권 및 주식예탁증서 포함)의 경우
 - 0.29/10,000 → 0.2755/10,000
 - 채권의 경우
 - 0.0225/10,000 → 0.021375/10,000
 - 상장지수간접투자증권의 경우
 - 0.29/10,000 → 0.2755/10,000

- 기관투자자 결제참가 신청자에 대한 승인요건의 구체화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2조의2 : 2006/1/18 개정·시행)
 - 기관투자자 결제참가 신청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관련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고 있을 것
 - 기관투자자 결제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 기관투자자 결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설비 등의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기타 기관투자자 결제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적 신용이 있을 것

- 기관투자자 결제참가 신청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의 근거마련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2조의3 : 2006/1/18 개정·시행)
 - 재무제표(부속명세서 포함), 영업보고서 등 재산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 기관투자자 결제업무의 수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 대금결제방법의 예외 추가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3조의6 : 2006/6/19 개정·시행)
 - “국내에서 외국통화로 표시하여 발행된 채권”을 결제하기 위하여 예탁결제원이 정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는 경우 한국은행을 통하지 않고 결제대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채권결제참가자의 매매성립내용에 관한 통지사항 추가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8조의8 3호 : 2006/6/19 개정·시행)
 - 결제대금이 외국통화인 경우 매매성립내용 통지시 그 통화의 종류를 예탁결제원에 통지하도록 함

- 계좌대체 제한에 대한 완화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19조 2항 3호 : 2006/7/10 개정·시행)
 - 계좌대체 제한기간 중이라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예탁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좌대체를 할 수 있도록 함

- 예탁증명서의 발행으로 처분제한된 예탁유가증권의 원리금 처리방법 마련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42조의3 1항 2호 : 2006/7/10 개정·시행)
 - 예탁증명서의 기초가 된 예탁유가증권에서 발생한 원리금(만기상환일에 발생하는 것에 한함)은 당해 예탁증명서의 반환이 있는 때까지 예탁원이 이를 보관하도록 함

- 대차거래 대상유가증권의 범위 확대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3조 3호·4호 : 2006/7/4 개정, 7/10 시행)
 - “주식관련사채”와 “주식워런트증권”을 대차거래 대상유가증권에 추가함

- 주식워런트증권의 대차거래기간 명시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4조 1항 4호 : 2006/7/4 개정, 7/10 시행)
 - 주식워런트증권의 대차거래기간을 대차거래 체결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으로 규정함
 - 다만, 대차거래기간 중에 주식워런트증권의 만기가 도래하거나 중도상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만기일 또는 중도상환일까지 대차거래가 종료되도록 함

- 주식워런트증권의 신청수량단위 및 최소신청수량 명시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15조 1항 4호 : 2006/7/4 개정, 7/10 시행)
 - 주식워런트증권의 신청수량단위 및 최소신청수량을 “1워런트”로 규정함

- 경쟁거래 및 지정거래의 상환연기 신청기한 단축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21조의7 1항 : 2006/7/4 개정, 7/10 시행)
 - 상환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4영업일 전까지”에서 “3영업일 전까지”로 변경함

- 상환연기가 가능한 대차거래 유형에 결제거래 추가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21조의7 1항·2항 : 2006/7/4 개정, 7/10 시행)
 - 결제거래에 대해서도 상환일까지 상환연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허용
 - 상환연기 시에 대차수수료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분할상환이 가능한 대차거래 유형에 결제거래 추가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22조 2항 : 2006/7/4 개정, 7/10 시행)
 - 결제거래에 대해서도 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허용

- 현금상환이 가능한 대차증권의 범위 확대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24조 2항·4항 : 2006/7/4 개정, 7/10 시행)
 -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해서도 현금상환이 가능하도록 허용

- 주식워런트증권의 대차증권 가격산정방법 명시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1조의2 1호·2호 : 2006/7/4 개정, 7/10 시행)
 - 주식워런트증권의 시가는 시장 전일종가로 정의하고, 대차증권가액은 워런트 수에 시가를 곱하여 산정

- 주식워런트증권의 대차수수료율 호가단위 지정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8조의2 4호 : 2006/7/4 개정, 7/10 시행)
 - 주식워런트증권의 호가단위를 0.1%로 지정

- 주식워런트증권의 현금상환방법 및 상환금액계산방법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9조의7 1항·2항 : 2006/7/4 개정, 7/10 시행)
 - 차입자의 현금상환 신청시한을 종료일 3영업일 전으로 정함
 - 주식워런트증권의 현금상환 가산금리를 현금상환일 전일종가의 1%로 정함
 - 현금상환일 전일 종가가 없는 경우 최근일 종가를 적용

- 대차채권의 보유여부에 따른 채권이자 지급방법 변경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12조 1항 1의2호 : 2006/7/4 개정, 7/10 시행)
 - 차입자가 대차채권을 보유하였음을 증빙하여 신청하는 경우 차입자가 채권발행자로부터 수령할 해당 채권의 이자를 직접 대여자에게 지급함

- 중개수수료 수납대상 및 수납 방법 변경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 2 : 2006/10/2 개정, 10/9 시행)
 - 맞춤거래의 대차수수료율을 0%로 적용한 경우 종래 차입자가 0.04%를 납부하던 것을 대여자와 차입자가 합의한 경우 각각 대차증권가액의 0.02%를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

- 차입자 발행 유가증권 및 계열회사 발행 유가증권의 담보제공 금지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9조의2 2항 : 2006/11/27 개정, 12/4 시행)
 - 담보대상 유가증권의 발행인이 차입자와 동일인이거나 공정거래법 2조 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 관계인 경우에는 당해 담보대상 유가증권을 담보물로 제공할 수 없도록 금지

- 과도한 담보주식에 대한 담보교환 청구 허용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9조의4 1항 3호 : 2006/11/27 개정, 12/4 시행)
 - 차입자 1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100을 초과하는 주식을 담보유가증권으로 제공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담보권자가 다른 담보물로 교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예탁원명의로 등록되는 단기금융상품의 예탁방법 마련 (단기금융상품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9조의2 : 2006/7/26 개정·시행)
 - 예탁원명의로 단기금융상품을 발행 또는 등록하는 경우 그 발행인은 예탁자별 신청내역을 예탁원에 통지
 - 발행인이 예탁자별 신청내역을 예탁원에 통지한 때에 해당 예탁자가 예탁을 청구한 것으로 간주함
 - 예탁원은 당해 신청내역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이를 예탁원장 및 간접투자기구원장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해당 예탁자에게 통지

- 수수료율 체계의 변경 및 일원화 (담보콜거래관리 업무규정 시행세칙
별표 2 : 2006/12/11 개정, 2007/1/2 시행)
 - 담보콜거래의 수수료율 체계를 “거래금액별 구분징수방식”에서 “거래
금액 단위별 징수방식”으로 일원화
 - 수수료율 : 담보콜거래 건별 거래금액에 대하여 매일 1억원당 35원

- 예탁 및 결제대상 외화증권의 범위조정 (외화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3조 : 2006/5/30 개정 · 시행)
 - 투자자별 구분없이 예탁 및 결제대상 외화증권을 “외국환거래법에 의
한 외화증권”으로 정함
 - 종래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대상 외화증권은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
장 또는 상장이 확정된 증권을 중심으로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음

- 담보관리업무의 범위 (금융기관 등을 위한 예탁유가증권의 담보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1조 및 4조 : 2006/4/7 개정, 5/1 시행)
 - 예탁유가증권을 대상으로 예탁원과 참가자간에 담보관리계좌를 통하
여 이루어지는 담보권의 설정·말소 및 담보물의 관리 등에 관한 업
무를 그 범위로 함

- 담보관리업무의 대상유가증권 (금융기관 등을 위한 예탁유가증권의 담보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3조 : 2006/4/7 개정, 5/1 시행)
 -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예탁대상유가증권으로 지정된 유가증권중 주식
또는 채권을 그 대상으로 함

- 담보관리업무의 참가신청 및 계좌개설 (금융기관 등을 위한 예탁유가증권의 담보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6조 및 7조 : 2006/4/7 개정, 5/1 시행)
 - 담보관리업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예탁원에 참가신청을 하여야 함
 - 참가승인을 받은 자는 담보관리업무의 참가에 사용할 담보관리계좌를 예탁원에 개설하여야 함

- 담보관리업무의 참가승인 취소 (금융기관 등을 위한 예탁유가증권의 담보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8조 : 2006/4/7 개정, 5/1 시행)
 - 예탁원은 다음의 경우 참가자에 대한 참가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참가자가 예탁원에 취소신청을 한 경우
 - 담보관리계좌(금융기관인 참가자의 담보관리계좌를 제외함)에 담보대상유가증권의 잔량이 일정기간 없는 경우
 - 참가자가 관계법령 및 이 규정 등을 위반하여 다른 참가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다고 예탁원이 판단하는 경우
 - 기타 예탁원이 업무수행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예탁원은 참가승인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를 받은 참가자의 담보관리계좌를 폐지하여야 함
 - 당해 담보관리계좌에 담보대상 유가증권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다른 계좌로 계좌대체 하도록 함

- 담보대상 유가증권의 예탁 (금융기관 등을 위한 예탁유가증권의 담보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9조 : 2006/4/7 개정, 5/1 시행)
 - 담보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참가자(예비담보설정자)는 계좌대체의 방법으로 담보대상 유가증권을 담보관리계좌에 예탁하여야 함

- 담보권의 설정 (금융기관 등을 위한 예탁유가증권의 담보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10조 : 2006/4/7 개정, 5/1 시행)
 - 예비담보설정자는 예탁원을 통하여 금융기관인 참가자(예비담보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상기한 담보제공에 대하여 예비담보권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예탁원은 예탁자계좌부상 질권설정을 하고 그 사실을 해당 담보설정자 및 담보권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 담보설정자는 담보권자에 대하여 추가담보를 제공할 수 있음

- 담보권의 말소 (금융기관 등을 위한 예탁유가증권의 담보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11조 : 2006/4/7 개정, 5/1 시행)
 - 담보권자는 담보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말소를 예탁원에 청구할 수 있음
 - 담보권이 말소된 담보대상유가증권의 경우 이를 다른 계좌로 계좌 대체 하도록 함

- 담보관리업무의 제한 (금융기관 등을 위한 예탁유가증권의 담보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12조 : 2006/4/7 개정, 5/1 시행)
 - 예탁원은 담보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음

- 전질금지 등 (금융기관 등을 위한 예탁유가증권의 담보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13조 1항 : 2006/4/7 개정, 5/1 시행)
 - 담보가 설정된 담보대상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이를 전질할 수 없음
 - 담보대상 유가증권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를 해당 권리자에게 반환하도록 함

- 담보관리부의 작성 및 비치 (금융기관 등을 위한 예탁유가증권의 담보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14조 : 2006/4/7 개정, 5/1 시행)
 - 예탁원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담보관리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함
 - 담보설정자 및 담보권자의 명칭·계좌번호
 - 담보유가증권의 종류·종목·수량 및 담보관리번호
 - 담보유가증권의 과실의 귀속주체
 - 기타 담보관리업무에 필요하다고 예탁원이 인정하는 사항

- 담보유가증권의 과실의 귀속주체 (금융기관 등을 위한 예탁유가증권의 담보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15조 : 2006/4/7 개정, 5/1 시행)
 - 담보유가증권의 과실에 대한 권리는 그 과실수령일의 전일까지 담보권자가 예탁원에 수령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담보설정자에게 있는 것으로 함

- 담보유가증권의 교환 등 (금융기관 등을 위한 예탁유가증권의 담보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16조 : 2006/4/7 개정, 5/1 시행)
 - 담보유가증권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탁원은 당해 담보유가증권에 대하여 배정된 유가증권 또는 금전을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담보유가증권 발행인의 합병·분할·분할합병 및 해산으로 인한 소멸
 - 담보유가증권 발행인의 자본감소, 담보유가증권의 일부 또는 전부의 소각이나 병합
 - 담보유가증권에 대한 무상증자
 - 담보유가증권의 만기상환일 도래 또는 전액 중도상환
 - 기타 세칙에서 정한 사항

-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금융기관 등을 위한 예탁유가증권의 담보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18조 : 2006/4/7 개정, 5/1 시행)
 - 이 규정 및 세칙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인터넷 등을 통한 업무처리의 근거 마련 (금융기관 등을 위한 예탁유가증권의 담보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19조 : 2006/4/7 개정, 5/1 시행)
 - 예탁원과 참가자는 담보관리업무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음

5. 기업공시

- 공시제도의 개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정안) : 2006/6/30
입법예고)
 - 대량보유보고제도(5% Rule)의 적용대상 범위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정부, 정부기금, 증권금융 등에 대해서도 공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시장의 정보 효율성을 높임
 - ‘증권신고서’의 적용대상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집합투자증권, 은행채, 수익증권 등에 대해서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 은행채 등의 발행자 정보를 투자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기타 자본시장관련 규제의 개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정안) : 2006/6/30 입법예고)
 - 상장법인에 대한 수시공시 채널을 거래소로 일원화하여 상장법인의 부담을 완화함
 - 증권신고서제도의 수리제도를 폐지하여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때부터 일정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신속한 증권발행이 이루어지도록 함

- 외국법인등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45조, 49조 : 2006/9/13 개정·시행)
 - 외국법인등의 유가증권 발행·공시업무를 대리할 국내대리인의 지정을 의무화하고, 대리인의 지정·변경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국내투자자 보호를 강화

- 외국법인등의 주요경영사항 신고항목 축소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49조 : 2006/9/13 개정 · 시행)
 - 외국법인등에 대해 국내법인과 달리 “의결권 있는 주식의 1% 이상 소유자의 변동이 있을 때” 신고하도록 하던 의무를 내·외국법인 동등 대우 원칙에 따라 폐지
 - 5% 이상 보유자의 경우 1% 이상 변동은 주식의 대량보유보고(5% Rule)를 통하여 파악 가능

- 외국지주회사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신고의무 명확화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49조, 68조 : 2006/9/13 개정 · 시행)
 - 외국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정의를 신설하여 외국지주회사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신고의무를 명확히 함
 - 기존에는 외국지주회사가 국내증시에 상장할 경우 자회사에 주요경영사항 발생시 신고의무 유무가 불명확하였음

-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제한 사유확대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84조 : 2006/9/13 개정 · 시행)
 - 우회상장 대응방안의 하나로서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부평가기관이 합병당사회사의 감사인인 경우 평가를 제한하는 근거규정 마련
 - 영업 · 자산양수도, 주식교환 · 이전, 분할합병시에도 준용

- 자사주 신탁보유분의 장외 처분시 신고의무 부과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69조 : 2006/9/13 개정, 9/18 시행)
 -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장외에서 처분하기로 결정한 때에도 주요경영사항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

-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처분결과보고서 제출 면제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111조 3항 : 2006/9/13 개정·시행)
 - 스톡옵션의 행사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 처분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자기주식 처분신고시부터 처분결과보고서까지 장기간(통상 2~5년)이 소요되어 교부(처분)내역을 관리하기가 번거롭고, 스톡옵션행사에 따른 자기주식처분 내용이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도 기재·공시됨

- 사업보고서 첨부서류중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평가의견서 삭제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72조 : 2006/9/13 개정·시행)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시행으로 감사인이 제출하고 있는 감사보고상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와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평가의견서'의 내용이 유사하여 중복공시되고 있으므로 이를 사업보고서 첨부서류에서 삭제

- 국내법인의 해외증권 발행시 신고서 면제기준의 명확화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12조 1항 6호 : 2006/11/30 개정·시행)
 - 국내법인이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없이 해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 및 유가증권(CB·BW·DR 등)의 전환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권이 1년내에 국내 환류될 가능성이 없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함
 - 1년간 국내거주자의 취득금지 조건을 유가증권 권면 등에 기재하고, 외국투자자가 확인·서명한 동의서를 징구함과 아울러 당해 동의서의 이행담보장치를 강구한 후 발행한 경우

- 발행지 예탁기관에 1년간 예탁한 경우
- 기타 1년내 국내거주자가 취득할 수 없는 구조로 발행한 경우

○ 해외증권의 전환 등 금지기간 단축요건의 완화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62조 : 2006/11/30 개정·시행)

— 전환권 행사 등으로 발행되는 신주가 1년내에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일정요건이 불필요하여 이를 삭제함

- 일정요건 : ‘발행지 국가의 감독기관에 신고서 등을 제출한 경우’ 또는 ‘거주자가 1년간 당해 증권의 취득 및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
- 기존에는 국내법인이 해외에서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공모발행하는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만 1월 후부터 신주전환 등을 허용

○ 자산양수도 신고서 제출면제 대상의 확대 및 자산액 기준의 명확화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87조, 88조 : 2006/11/30 개정·시행)

— 국채·지방채 등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유가증권을 양수도하거나, 법원경매·정부입찰 등 가격결정의 객관성이 확보되는 경우 등을 신고서제출 면제대상에 추가하고

— 자산양수도시 ‘자산액’의 기준을 ‘실제 거래금액’으로 명시함

- 자기주식 처분제한기간의 완화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111조 : 2006/11/30 개정·시행)
 -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완비로 기존의 3일의 제한기간이 불필요하고 가격변동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도 있어 3일의 제한기간을 완화하여 자기주식 처분신고서 제출 익일부터 3월 이내에 처분이 가능하도록 함
 - 기존의 자기주식 처분은 자기주식 처분신고서를 제출한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 주요경영상황 공시의무 추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7조 1항 11호 : 2006/9/8 제정, 9/18 시행)
 - 신탁계약 등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장외처분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여

- 상장외국법인에 대한 조회공시 범위 명확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7조의2 : 2006/9/11 개정, 9/18 시행)
 - 상장외국법인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대상중 “보도”의 수집범위를 국내 상장법인의 조회공시 대상 보도내용 및 국제적인 뉴스정보 전문제공기관 또는 통신사에 게재된 기사로 규정
 - 상장외국법인의 보도에 대한 즉각적 대응 및 현지 외국투자자와 국내투자자와의 정보불균형 발생가능성을 방지

- 상장외국법인의 공시대리인 대리권한 부여에 관한 증명서식 신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별지 4호 서식 : 2006/9/11 개정, 9/18 시행)
 - 공시대리인 선임(변경 포함)시 당해 공시대리인에게 대리권한을 부여하였음을 증명할 입증서류 신설

○ 신탁계약에 의한 자사주 장외처분시 공시의무 신설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6조 1항 : 2006/9/8 개정, 9/18 시행)

— 신탁계약을 통한 자사주 취득은 장내거래만이 허용되며 취득관련 정보가 공표(업무규정 12조)되므로, 별도의 공시의무가 없는 장외처분에 대하여 공시의무를 신설

< 자기주식 취득·처분 공시의무 >

취득 방법	장내 장외	공시시점	공시의무		
			법·금감위 규정	공시규정	업무규정
직접	장내	취득·처분결정 취득·처분	· 취득(처분)신고서	· 취득(처분)결정 공시	· 매매신청서 · 거래내용공표
	장외	처분결정	· 처분신고서	· 처분결정 공시	-
신탁	장내	체결·해지결정 취득·처분	· 계약체결(해지)신고서 · 신탁계약 등에 의한 취득 상황보고서	· 계약체결(해지)결정 수시공시	· 매매신청서 · 거래내용공표
	장외	계약체결·해지	· 계약체결(해지)신고서	· 계약체결(해지)결정 수시공시	-
		처분결정	-	· 처분결정 수시공시	-

- 관리종목 지정 확인수단 변경 등에 따른 매매거래정지(60분) 개선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11조 2항 2호 : 2006/10/30 개정, 11/1 시행)
 - 상장세척이 관리종목 지정여부 확인수단을 변경(사업·반기보고서 → 감사·검토보고서)하고, 매매거래정지 기간도 확인일을 포함하여 3일간으로 개선함에 따라 관련 공시세칙을 정비

- 우회상장 적용대상인 합병·주식교환·영업양수 사실 공시시 매매거래정지(60분) 적용배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11조 1항 6호, 7호 : 2006/10/30 개정, 11/1 시행)
 - 우회상장 적용대상인 합병·주식교환·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상장세척에 의한 매매거래정지 규정(상장세척 29조 1항)이 우선 적용되므로 공시세칙에 의한 매매거래정지의 적용을 배제
 - 종래 조직변경 관련 중요내용 공시(합병·주식교환·영업양수)시에는 매매거래를 60분간 정지하였음

- 영문공시의 활성화 유도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별표 1 제재심의 기준 : 2006/10/30 개정, 11/1 시행)
 - 영문공시 활성화를 위해 불성실공시법인 제재 감경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실효적인 유인책을 마련
 - 최근 1년간 영문공시 건수 비율이 당해 법인의 전체 공시건수 대비 10% 이상이거나 10건 이상인 영문공시 우수법인의 경우, 불성실공시 제재심의기준상 “감경사유” 중 “최근 1년간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없을 것” 요건을 삭제

II. 증권산업

1. 증권회사

가. 진입규제

- 증권회사 주식취득의 승인대상이 되는 지배주주의 범위 및 요건
(증권거래법 시행령 18조 1항~3항, 별표 2 : 2006/1/27 개정, 1/30 시행)
 - 주식취득의 승인대상이 되는 지배주주의 범위를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및 주요주주로 정하고, 지배주주의 요건을 증권업 허가시의 주요출자자의 재무건전성 기준 등으로 정함
 - 증권업 허가시의 주요출자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가 허가시의 규제를 회피하여 우회적으로 주식취득을 통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부적격자의 증권업 진출을 방지하고,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

- 증권회사의 지배주주에 대한 승인 절차 등 (증권거래법 시행령 18조 4항~8항 : 2006/1/27 개정, 1/30 시행)
 - 증권회사의 주식취득으로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지배주주 승인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문서로 통보하되, 불승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도록 함

- 일정한 기한 내에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행정처리와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

○ 대형투자은행 출현의 제도적 기반 마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 2006/6/30 입법예고)

— 금융투자회사가 6가지 금융투자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대형화되고 겸업화된 투자은행의 출현기반을 마련함

- 금융투자회사는 각 금융투자업별 진입요건을 갖추어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등 6개 금융투자업을 모두 겸영할 수 있도록 함
- 겸영에 따른 이해상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을 파악·평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를 두도록 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고 이해상충 가능성을 해소한 후 거래하도록 함
- 이해상충 가능성이 큰 금융투자업간(예; 투자매매업과 집합투자업 등)에는 매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 일정한 임직원의 겸직 제한, 사무 공간 등의 공동이용 제한 등을 부과함

○ 증권회사의 지배주주 변경승인 요건 마련 (증권업 감독규정 1-16조, 별표 3의3 : 2006/2/16 개정·시행)

—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금융기관인 경우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의 적기시정조치기준을 상회하여야 하며, 내국법인은 부채비율 200% 이하가 되어야 함

- 증권회사의 지배주주 변경시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증권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시행('06.01.30)됨에 따라, 금감위에 위임된 지배주주 변경승인 요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증권업감독규정에 반영함

— 승인신청서의 서식, 자료의 보완 요청 및 심사유예의 근거 등 승인신청의 방법 및 절차를 마련

나. 영업·상품규제

- 증권회사 임직원의 증권저축한도 산출을 위한 월정액급여 산출근거 변경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11조의2 2항 : 2006/11/18 개정·시행)

— 증권회사 임직원의 증권저축한도를 산출하기 위한 기준인 월정액급여의 산출방법을 기존의 “소득세법 시행령 13조”에서 “동령 17조 4항”에 따르는 것으로 변경함

-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확대 및 투자자보호 강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정안) : 2006/6/30 입법예고)

— 자본시장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적 제약을 철폐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취급과 설계를 허용하고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함

- 증권, 선물 등 자본시장관련 금융상품을 법령에서 일일이 열거하던 그간의 규율방식을 폐지하고, 원본손실가능성(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은 모두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

- 파생상품과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의 범위도 '계량화 가능한 모든 위험'으로 확대하여 모든 기초자산을 대상으로 파생상품과 파생결합증권이 설계될 수 있도록 함

○ 금융투자업 규율의 적용범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 2006/6/30 입법예고)

—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이 법상 금융투자업 규율을 적용함으로써 모든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있어 투자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업은 모든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으로 하되 그 기능에 따라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의 6개로 구분함
- 은행, 보험사 등이 집합투자증권, 투자성있는 예금 또는 투자성있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파생상품을 매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으로 규율하여 투자자를 보호함
 - * 다만, 이미 관련 금융법상 진입규제와 건전성 규제를 적용받는 점을 감안하여 인가는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건전성 규제는 적용하지 않음
- 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등 개별 법률상 펀드에 대해서는 공모펀드 및 일반투자자가 포함된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법에 의한 집합투자업자 규율과 펀드에 대한 규율을 적용하여 투자자를 보호함

○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범위 확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정안)
: 2006/6/30 입법예고)

—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투자자의 편의를 제고

- 부수업무(금융업이 아닌 업무로서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의 범위를 사전적으로 제약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영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투자권유대행자 제도를 도입하여 투자자가 금융투자회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투자권유대행자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투자자 보호장치를 투자권유대행자에게 적용함
- 투자자가 금융투자회사의 위탁매매 계좌의 현금을 타계좌로 송금하거나 결제 등을 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와 대표금융기관(증권금융)의 업무 범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집합투자업자가 민법, 상법 등 현행법상 설립 가능한 모든 집합투자기구(Vehicle)를 활용할 수 있도록 투자조합, 투자유한회사 등을 집합투자기구에 추가함
- 집합투자업과 관련하여 펀드 종류별 투자대상자산의 제한을 폐지하고 모든 자산에 대하여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혼합자산펀드를 허용하며 사모펀드에 대하여 수익자총회 개최의무 등 규제를 완화함

○ 투자권유와 관련된 투자자 보호장치의 선진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정안) : 2006/6/30 입법예고)

- 투자자를 위험 감수능력(전문성, 보유자산규모 등)에 따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도록 하고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투자자 보호규제를 집중 적용하고 전문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규제를 완화함
-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위험 등을 투자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는 '설명 의무제도'를 도입하고 의무 불이행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며 원본결손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추정하도록 함
-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기 전에 면담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등 특성을 파악하도록 하는 'know-your-customer 제도'를 도입함
- 투자자의 특성에 적합하게 투자권유를 하도록 하는 '적합성 원칙'을 도입하여 장외파생상품과 같이 위험이 큰 금융투자상품을 무분별하게 권유하지 못하도록 함
- 투자자로부터 요청을 받지 않고 방문·전화 등을 통해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요청받지 않은 투자권유의 금지 제도'를 도입하되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만 적용함
-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사에 반하는 재권유 금지제도'를 도입

- 기타 자본시장관련 규제의 개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 2006/6/30 입법예고)
 - 실효성이 크게 감소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등에 대한 주식 등 직접 투자 제한을 폐지하되 선진국 수준의 내부통제장치를 도입

- 조사분석자료 공표시 24시간 자기매매 제한규제의 보완 (증권업 감독규정 4-7조 : 2006/2/16 개정·시행)
 - 투자등급이나 목표가격을 종전과 동일하게 제시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는 경우나 헷지거래, 유동성 공급자로서의 거래 또는 시황급변시의 방어적 매매거래 등은 24시간 자기매매제한 대상에서 제외
 - 주식관련사채, 파생증권(ELW, ELS 등), 상장 파생금융상품(주식옵션) 등은 24시간 자기매매제한 대상에 포함

- 투자대상 외화증권의 제한 폐지 (증권업 감독규정 5-73조, 5-74조, 5-81조 : 2006/3/30 개정·시행)
 - 일반투자자가 증권회사에 매매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외화증권의 제한을 폐지하여 증권회사를 통하여 모든 외화증권의 취득이 가능하도록 함
 - 다만, 일반투자자의 증권회사를 통한 외화증권 매매거래의 절차와 방법*은 존치하여 외화증권거래의 원활화를 기하고 투자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함
 - * 외화증권의 매매주문수탁, 결제, 매매성립결과 통지, 외국보관기관 집중예탁, 권리행사 통지, 환전 및 송금 절차와 방법 등

- 증권회사간의 경쟁제한규정 폐지 (증권업 감독규정 4-12조 : 2006/12/28
개정·시행)
 - 증권회사가 다른 증권회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유가증권의 매매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경쟁제한적 규정을 삭제

- 신용거래 계좌설정정보증금의 용도제한 폐지 (증권업 감독규정 5-7조 :
2006/12/28 개정·시행)
 - 신용계좌설정정보증금(100만원)의 용도를 채권회수 목적으로만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계좌설정정보증금의 운용재량권을 확대

- 증권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용거래 허용 (증권업 감독규정 5-8조 :
2006/12/28 개정·시행)
 - 증권회사가 자기가 발행한 주권에 대하여는 신용거래(신용거래용자 또
는 신용거래대주)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

- 신용거래 상환신청의 시한제한 완화 (증권업 감독규정 5-14조 : 2006/12/28
개정·시행)
 - 신용거래의 현금·유가증권에 의한 상환은 고객이 상환을 신청한 당
일 16시까지로 제한하는 규정을 당일까지로 완화

- 예탁증권담보대출의 담보유가증권 범위제한 완화 (증권업 감독규정 5-20조 2항 : 2006/12/28 개정·시행)
 - 증권회사의 예탁증권담보대출시 담보유가증권 범위규제를 열거주의 (positive system)에서 포괄주의(negative system)로 변경
 - 고객계좌에 예탁된 유가증권 중 적정 가치산정이 곤란하거나 담보권 행사를 통한 대출금 회수가 곤란한 경우 이외에는 모두 허용

- 담보권의 실행 및 담보사정 방법의 추가 (증권업 감독규정 5-21조 : 2006/12/28 개정·시행)
 - 예탁증권담보대출의 담보권의 실행 및 담보사정 방법을 확대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증권업협회에서 정하도록 위탁

- 증권회사의 단주매매취급 의무규정 완화 (증권업 감독규정 5-46조 : 2006/12/28 개정·시행)
 - 고객이 의도적으로 분할하여 증권회사에 단주매수를 요구하거나, 증권회사가 소유하지 않은 종목을 단주매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

- 증권회사의 계관이관사유 추가 (증권업 감독규정 5-59조 2항 3호 : 2006/12/28 개정·시행)
 - 증권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저축자가 소속 증권회사를 통하여 증권저축재산 이관을 요청하는 경우를 계관이유사유에 포함

- 증권회사 임직원이 다른 증권회사에 개설한 증권저축계좌를 이관하여 소속 증권회사에서만 증권거래를 하도록 하기 위함

○ 반기 동안 거래 없는 계좌의 잔고통보 면제 기준금액 상향 조정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4-5조 : 2006/2/16 개정·시행)

- 기존의 면제기준 금액이 너무 낮아 거래현실을 감안하지 못하고 증권회사에는 업무부담 등의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잔고통보 면제 기준금액을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되, 연중 1회는 종전과 같이 10만원 초과 계좌에 대해서 잔고통보토록 함

- 종래에는 규정 4-19조 4호에서 반기동안 거래가 없는 계좌의 잔고통보 면제기준 금액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세칙에서 10만원으로 규정

○ 계좌개설시 서면에 의한 고객정보 확인방법 자율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77조 : 2006/7/7 개정, 7/10 시행)

- 매매거래계좌설정시 위탁자 확인사항을 기록·유지하는 방법이 종전에는 서면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를 자율화함

○ 공모대상 주식의 범위 명확화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2조 2항 : 2006/2/15 개정, 2/20 시행)

- 증권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외국주식예탁증서를 공모대상 주식의 정의에 포함

- 인수규칙 적용제외 주권의 명시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2조 3항 : 2006/2/15 개정, 2/20 시행)
 -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투자회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융자회사 및 상장지수 간접투자기구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권,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협회장이 인정하는 주권

- 외국증권거래소 상장기업에 대해 대표주관계약체결시한 면제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3조 : 2006/2/15 개정, 2/20 시행)
 - 외국증권거래소에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가 상장되어 있는 외국법인 등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는 경우 대표주관계약체결시한을 면제함

- 외국기업에 대한 우리사주조합 배정의무 면제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9조 : 2006/2/15 개정, 2/20 시행)
 - 외국기업에 대해 기업공개, 공모증자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배정의무를 면제함

- 주관회사·수탁회사 자격제한의 일부 완화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6조, 12조, 14조 : 2006/10/10 개정, 10/11 시행)
 - 증권선물거래소 지분분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증권금융 및 자산운용 회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증권선물거래소의 IPO 및 무보증사채 발행 시 주관회사 및 수탁회사 자격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

- 종래에는 인수업을 허가받은 45개 증권회사 중 28사가 증권선물거래소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4사가 임원겸직 등의 이해관계가 있어 증권선물거래소의 IPO 및 무보증사채 발행시 주관회사로서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었음

○ 증권회사 직원의 채용제한범위 축소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4-4조 : 2006/2/15 개정, 2/20 시행)

- 증권회사 직원의 채용제한 범위를 징계면직자로 한정하고, 정직 및 감봉처분을 받은 자는 채용제한 대상에서 제외

< 채용제한기간 >

문책의 종류	기 존	개 정
징계면직·금고 이상의 실형	5년	좌동
정직	2년	-
감봉(4월 이상)	1년	

○ 등록전문인력 제재제도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4-28조, 4-38조, 4-42조, 6-7조 : 2006/2/15 개정, 2/20 시행)

- 투자상담사, 금융자산관리사 및 조사분석담당자 등 등록전문인력에 대한 제재양정기준 적용방법을 증권회사의 문책수위에 연동되는 것으로 일원화함
- 자격취소·등록취소·등록의 효력정지로 삼원화되어 있는 제재의 종류를 “자격취소”와 “등록의 효력정지”의 두 가지로 단순화

- 위규행위의 종류와 관계없이 징계면직자에 대해서는 자격취소(조사 분석담당자의 경우에는 등록의 효력 정지) 조치가 부과되며 자격취소(투자상담사 및 금융자산관리사 시험합격 취소) 조치를 받은 자는 5년간 증권업협회가 주관하는 증권전문 인력자격시험에 응시가 불가함

< 등록전문인력 제재양정세부기준 >

증권회사 징계처분결과	제재기준(등록거부기간)
징계면직	자격취소(5년)
정직	등록의 효력정지(정직월수+6월)
감봉(5월 ~ 6월)	등록의 효력정지(3월)
감봉(3월 ~ 4월)	등록의 효력정지(2월)
감봉(1월 ~ 2월)	등록의 효력정지(1월)
견책	-

*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다음해 1월 1일부터 보수교육 이수시까지 등록의 효력정지

○ 선물거래상담사의 보수교육 이수 의무 강화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4-35조 1항 : 2006/2/15 개정, 2/20 시행)

— 2006년부터 선물거래상담사도 전담투자상담사와 마찬가지로 1년에 연간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IPO 주관기업에 대한 조사분석자료 공표의무화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1-15조의2 1항 : 2006/4/5 개정, 4/10 시행)
 - 일반투자자들이 신규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증권회사에 대해 IPO 업무를 주관한 신규상장 기업에 대한 조사분석자료의 공표를 의무화
 - 조사분석자료 의무공표 회수는 상장주권의 매매거래 개시일로부터 1년간 4회 이상
 - 조사분석업무의 중단 등으로 조사분석자료 공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표의무 면제

- 조사분석자료 공표중단시 당해 사실 고지의무화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1-15조의2 3항 : 2006/4/5 개정, 4/10 시행)
 - 증권회사가 최근 1년간 3회 이상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기업에 대하여 향후 6월 이내의 기간 동안 후속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
 - 동 사실을 조사분석자료 또는 당해 증권회사의 홈페이지 등에 고지토록 의무화

- 통합계좌의 잡수익처리 근거 폐지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2-4조, 2-5조, 2-17조 : 2006/4/5 개정, 4/10 시행)
 - “위탁매매계약”의 특성상 증권계좌에 대해 소멸시효를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잡수익처리 근거규정을 폐지
 - 잡수익으로 처리하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이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환급하며, 당해 환급액은 잡손실로 처리하도록 명시

- 기존에 증권회사는 고객 계좌가 통합계좌로 분류된 후 4년 6월이 경과하면 고객에게 사전 고지한 후 당해 계좌의 예탁자산을 압수익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고객으로부터 인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환급하였음
 - 아울러 고객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증권회사가 자율적으로 제정·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 예탁금 이용료 산정기준을 삭제
- 상위규정 개정사항 반영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별표 6, 6-2 : 2006/4/5 개정, 4/10 시행)
- “외국환거래규정”개정으로 금감위의 증권업감독규정 중 일반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외화증권의 범위제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외화증권거래설명서 중 일반투자자의 투자대상에 관한 내용을 삭제
 - 증권회사는 반기동안 매매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예탁자산 평가액이 금감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반기말 잔고통보의무가 면제되는 바,
 - 금감원장이 정하는 금액이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어 동 내용을 신용거래설명서 등에 반영
- 선물거래상담사 등록 당해연도의 보수교육 이수 의무 면제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4-35조 : 2006/5/10 개정, 5/11 시행)
- 선물거래상담사의 보수교육 이수 의무가 전담투자상담사와 동일 수준으로(1년 1회) 상향조정 되었던 바
 - 선물거래상담사에 대해서도 전담투자상담사와 동일하게 당해연도의 보수교육 이수 의무를 면제

○ 준법감시인 및 대표이사 승인금액 자율화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1-23조 2항 : 2006/6/26 개정, 6/30 시행)

— 준법감시인 또는 대표이사 승인금액을 증권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자율화

- 기존에는 편익제공의 규모별로 100만원 초과시에는 준법감시인,
200만원 초과시에는 대표이사의 사전 승인 등을 의무화

○ 자산관리자 소속 기관장에 대한 통지의무 폐지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1-23조 3항·4항, 1-24조 5항 : 2006/6/26 개정, 6/30 시행)

— 동일 자산관리자에게 제공된 편익의 경제적 가치의 총계가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자산관리자에 대한 추가 편익의 제공은 당해 자
산관리자 소속 기관장에게 편익제공 내역을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허
용하던 제한을 폐지

- 다만, 자산관리자에게 부당한 편익이나 이득이 제공된 경우 당해
자산관리자 소속 기관장에게 부당편익 등의 제공내역을 통지하고,
• 자산관리자 소속 기관의 장이 서면에 의하여 소속 자산관리자에 대
한 편익제공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

○ 경조비·조화 등의 제공한도 폐지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1-24조
4항 : 2006/6/26 개정, 6/30 시행)

— 자산관리자에 대한 경조비·조화·화환 등의 제공한도를 20만원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함

- 기록보관 의무화 및 내부통제기준 필수기재 사항 명시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1-23조 4항, 6-3 3항·4항 : 2006/6/26 개정, 6/30 시행)
 - 자산관리자에 대한 편익제공 내역을 3년 이상의 기간동안 기록·보관하도록 의무화
 - 편익제공과 관련된 내부통제기준 제·개정시 협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 증권회사가 정한 내부통제기준이 내부통제 기능의 효율적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권회사에 대한 협회의 개정요구 근거를 마련

- 조사분석자료 공표제한 범위의 확대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1-15조 1항 : 2006/10/10 개정, 10/11 시행)
 - 증권회사가 공개입찰 방식에 의한 지분매각 또는 당해 지분매입을 위한 중개·주선·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중인 경우, 해당 법인 및 상대방인에 대한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및 특정인 제공이 금지됨
 - 증권회사가 공개입찰 방식에 의한 지분매각과 관련하여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 계약체결 시점부터 당해 매각지분 발행법인에 대한 조사분석자료의 공표가 금지됨
 - * 당해 지분매입을 위하여 입찰참여의향서(Letter of Internet)를 제출한 기업에 대해서도 당해 의향서 제출시점부터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등이 금지됨
 - 증권회사가 공개입찰 방식에 의한 매각지분의 매입을 위하여 특정법인에 대한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지분매입을 의뢰한 법인이 매각지분 매입을 위하여 입찰참여의 향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당해 법인 및 매각지분 발행법인에 대한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등이 금지됨

○ 주가연계증권 등에 대한 대고객 위협고지 강화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1-8조 4항 : 2006/10/10 개정, 10/11 시행)

— 공모로 발행된 주가연계증권 또는 파생결합증권이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으로 원금손실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일반고객에게 우편 또는 전자통신수단의 방법으로 고지하도록 의무화

- 원금손실 조건에 해당되었다는 사실
- 조기상환 조건 및 조기상환시 예상수익율
- 환매청구방법, 환매청구기한 및 환매수수료 등

— 고지의무는 공모로 발행된 원금비보장형 ELS·DLS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고지대상은 일반고객으로 한정

— 만기전에 원금손실 조건에 최초로 해당된 경우에만 고지의무가 발생되며, 만기일의 원금손실 사실에 대하여는 고지의무가 없음

— 개정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행된 주가연계증권 및 파생결합증권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 파생금융상품거래설명서의 변경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별표 3 : 2006/12/14 개정, 12/18 시행)

— 파생금융상품거래설명서 중 기본예탁금 관련 부분을 개정된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과 일치하도록 변경

○ 잔고통보 면제금액 상향조정 (증권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칙 별표 1, 별표3, 별표 4 : 2006/2/15 개정, 2/20 시행)

— 증권회사는 반기동안 매매 기타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예탁자산 평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기말 잔액·잔량 통보의무가 면제되는 바,

—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이 '10만원'에서 '100만원(최근 잔고통보 후 1년간 매매 기타 거래가 없는 계좌의 경우에는 1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어 이를 해당 약관*에 반영함

*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증권저축약관

○ 세금우대증권저축 가입자격 제한 (증권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칙 별표 4 : 2006/2/15 개정, 2/20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06.1.1)으로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자격이 거주자에서 20세 이상의 거주자로 축소됨에 따라 동 내용을 증권저축약관에 반영함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사항 반영 (증권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칙 별표 3 : 2006/4/5 개정, 4/10 시행)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으로 금감위의 증권업감독규정 중 일반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외화증권의 범위 등에 대한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외화증권 매매거래 계좌설정약관 중 일반투자자의 투자범위 제한내용을 삭제

- 세금우대증권저축의 특별해지 요건 강화 (증권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칙
별표 4 : 2006/4/5 개정, 4/10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80조 5항) 개정으로 저축자가 비과세 또는 감면혜택을 받으면서 저축계약을 중도해지하기 위해서는 해지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바, 이를 증권저축약관의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반영

- 대금결제방법의 예외 추가 (증권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칙 23조의6 :
2006/6/19 개정 · 시행)
 - “국내에서 외국통화로 표시하여 발행된 채권”을 결제하기 위하여 예탁결제원이 정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는 경우 한국은행을 통하지 않고 결제대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채권결제참가자의 매매성립내용에 관한 통지사항 추가 (증권회사의 약관
운용에 관한 규칙 28조의8 3호 : 2006/6/19 개정 · 시행)
 - 결제대금이 외국통화인 경우 매매성립내용 통지시 그 통화의 종류를 예탁결제원에 통지하도록 함

- 「선물·옵션계좌설정약관」 중 적격기관투자자의 위탁증거금 예탁시한 변경
(증권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칙 4조 3항 : 2006/11/16 개정, 11/20 시행)
 - 증권선물거래소의 「선물시장수탁계약준칙」 개정에 따라, 적격기관투자자의 위탁증거금 납부시한을 “당일 중 증권회사가 정하는 시간”에서 “당일 중 증권회사가 정하는 시간 또는 그 다음날 10시 이내에서 증권회사가 정하는 시간”으로 변경함

- 선물·옵션계좌설정약관의 변경 (증권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칙 4조 1항, 5조 1항 : 2006/12/14 개정, 12/18 시행)
 - 선물·옵션계좌설정약관중 기본예탁금 징수 및 수탁거부 조항을 증권선물거래소의 개정규정과 동일하게 변경

-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의 제정 (증권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칙 별표 10 : 2006/12/28 개정, 2007/1/1 시행)
 -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전자금융거래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
 - 전자금융 거래내용의 확인방법 및 이용자 요청시 증권회사의 제공 의무 등 명시
 - 전자금융거래 오류시 이용자의 정정요구권 명시
 - 전자금융 사고시 증권회사의 책임 열거
 - 전자지급거래의 효력발생시기 명시 등

- 시험관리위원회의 구성 (자산설계 전문인력 시험 등에 관한 규정 4조, 5조, 7조 : 2006/3/23 개정·시행)
 - 위원장인 증권연수원장과, 증권협회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함
 -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시험방법 및 시행 (자산설계 전문인력 시험 등에 관한 규정 10조 : 2006/3/23 개정·시행)

—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며, 1차의 필기시험으로 하고, 시험문제의 형식은 선택형으로 함

○ 합격자 결정 (자산설계 전문인력 시험 등에 관한 규정 14조 : 2006/3/23 개정·시행)

— 합격자는 과목별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과목별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체시험과목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함

○ 자산설계 전문인력 교육 (자산설계 전문인력 시험 등에 관한 규정 23조, 24조 : 2006/3/23 개정·시행)

— 증권회사는 자산설계 전문인력으로 종사하려는 자를 협회에 등록해야 함

- 2년마다 1회씩 협회에서 시행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다. 재무건정성규제

○ 수익자예수금의 당일자 별도예치 및 구분운용 방안 마련 (증권업 감독규정 3-2조, 3-3조 : 2006/6/29 개정·시행)

— 수익자예수금은 다른 고객예탁금과 달리 증권금융에 당일자로 별도예치토록 하고, 익일인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초단기물(1일물)로 전액운용할 수 있도록 함

- 일반고객예탁금과 수익자예수금을 분리 운용하게 하여 예치시기·운용대상을 차별화
 - 수익자예수금에 한하여 당일예치를 의무화하여 증권회사의 이중 자금부담 문제를 해소
 - 예치 수익자예수금 운용의 단기대출한도를 폐지하여 대부분의 자금을 1일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
 - RP 매입대상채권의 신용등급제한을 완화하여 단기자금운용의 원활화 도모
- * 다만, RP거래 및 콜론의 거래상대방을 적격 금융기관으로 한정하여 예치자산의 안전성을 확보

< 수익자예수금의 예치·운용 개정 >

	기 존	개 정
운용구분	일반고객예탁금과 통합운용	일반고객예탁금과 분리운용
예치시기	익일예치	당일예치
운용수단	- 콜론 등 단기대출 한도 : 30% - RP매입대상채권 : AAA등급 이상	- 한도확대(100%) - 대상채권확대(A등급이상)

- 경영실태평가기준 항목의 상위규정 이관 (증권업 감독규정 2-31조, 별표 19 : 2006/8/31 개정·시행)
 -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고 있는 <별표 7>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을 증권업 감독규정 <별표 19>로 이관

— 경영실태평가 비계량항목 중 주관적 판단의 가능성이 크거나 평가의 실효성이 적은 11개 항목 폐지

- 4개 부문에 공통적인 비계량항목인 「기타 경영실태평가지 중요하다 고 인정되는 사항」
- 자본적정성부문의 「위험액 변동요인의 적정성」, 「위험자산·부채관리의 적정성」, 「연결영업용순자본비율Ⅰ」, 「연결영업용순자본비율Ⅱ」, 「연결자기자본비율」
- 수익성부문의 「연결자기자본순이익률」, 「연결총자산영업수익률」

○ 경영개선권고 및 경영개선계획 승인 주체 변경 (증권업 감독규정 2-32조, 2-36조 : 2006/8/31 개정·시행)

— 증권회사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및 동 권고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시 행사주체를 금융감독원장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변경

○ 증권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시 권리구제 강화 (증권업 감독규정 2-34조의2, 2-36조 : 2006/8/31 개정·시행)

— 금감위의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시 당해 증권회사에게 조치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는 조항 신설

- 동 조치의 중대성에 비추어 객관적인 근거 및 이유의 명확한 제시를 통하여 조치의 투명성 확보

— 증권회사의 경영개선계획을 경영평가위원회가 사전 심의하는 경우 해당 증권회사를 출석시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조항 신설

-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계획 수립 및 승인을 위해 해당 증권회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함

- 신탁업 겸영에 따른 재무제표 등 정비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 12, 별지 1호 : 2006/2/16 개정·시행)
 - 재무제표 및 업무보고서에 신탁업과 관련된 계정과목 등을 추가

- 평가부문별 가중치의 명시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2-14조, 별표 7 : 2006/8/31 개정·시행)
 - 기존 금융감독원장이 내부기준으로 정하고 있던 평가부문별 가중치를 세칙<별표 7>에 명시하여 투명성을 제고

- 경영실태평가의 내용설명 및 의견진술기회 부여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2-14조 : 2006/8/31 개정·시행)
 - 경영실태 종합평가지 그 내용을 증권회사에 충분히 설명하고 증권회사의 의견을 청취하여 평가결과에 반영하는 조항을 신설

- 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의 등록요건 정비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감독규정 44조 : 2006/5/18 개정·시행)
 - 신탁업법 개정으로 증권회사·보험회사가 신탁업 겸영이 가능함에 따라 증권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150%)·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100%)을 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 등록을 위한 재무건전성 기준으로 함

2. 자산운용회사

가. 진입규제

- 자산운용회사 주식취득의 승인대상이 되는 지배주주의 범위 및 요건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시행령 13조의2 1항~3항, 별표 1의2 : 2006/1/27 개정, 1/30 시행)
 - 주식취득의 승인대상이 되는 지배주주의 범위를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및 주요주주로 정하고, 지배주주의 요건을 자산운용회사의 설립허가시의 주요출자자의 재무건전성 기준 등으로 정함
 - 자산운용업 허가시의 주요출자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가 허가시의 규제를 회피하여 우회적으로 주식취득을 통하여 자산운용업을 영위하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부적격자의 자산운용업 진출을 방지하고, 자산운용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

- 자산운용회사의 지배주주에 대한 승인 절차 등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시행령 13조의2 4항~7항 : 2006/1/27 개정, 1/30 시행)
 - 자산운용회사의 주식취득으로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지배주주 승인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문서로 통보하되, 불승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도록 함
 - 일정한 기한 내에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행정처리와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

○ 자산운용회사 지배주주 변경승인 요건 등 마련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감독 규정 5조의2, 별지 6-2호·8호·8-2호 : 2006/2/16 개정·시행)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에서 금융감독위원회에 위임한 지배주주의 세부요건을 자산운용회사 신규허가시의 주요출자자 요건을 감안하여 마련

- 지배주주의 재무건전성 요건은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상 적기시정조치기준을 상회토록 하고, 적기시정조치기준이 없는 금융기관 및 내국법인의 경우 부채비율 200% 이하로 정함

— 지배주주 승인신청서의 서식, 자료의 보완 요청 및 심사유예의 근거 등 승인신청의 방법 및 절차를 마련

○ 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의 등록요건 정비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감독규정 44조 : 2006/5/18 개정·시행)

— 신탁업법 개정으로 증권회사·보험회사가 신탁업 겸영이 가능함에 따라 증권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150%)·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100%)을 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 등록을 위한 재무건전성 기준으로 함

나. 영업·상품규제

○ 간접투자증권의 취득권유제도 도입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시행령 55조 6호 : 2006/4/27 개정·시행)

— 보험설계사 등은 간접투자증권 판매업무 관련 교육을 받고 판매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자에게 간접투자증권의 취득을 권유할 수 있도록 함

- 기존에는 판매회사(은행 및 증권회사 등)의 임·직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간접투자증권의 판매 위탁이 금지되어 있어 투자자의 간접투자증권에의 접근과 선택이 제한되어 있었음
- 간접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자의 접근 및 선택의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간접투자산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외국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국내대리인제도 도입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시행령 154조 및 155조 : 2006/4/27 개정·시행)

— 외국 간접투자증권의 국내판매시 국내대리인제도를 도입하여, 국내대리인이 외국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신고·변경·판매중지신고 등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기존에는 외국 간접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대행회사를 통하여 신고서를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다수의 판매대행회사가 동일한 외국간접투자증권을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모든 판매회사가 유사한 신고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었음

- 국내대리인을 두도록 함으로써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국내판매에 대한 신고절차가 간소화되고, 국내 투자자의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투자증권의 통합주문 허용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시행규칙 12조 2항 1호·1호의2·1호의3 : 2006/5/9 개정·시행)

- 자산운용회사의 계열회사 중 독립된 부서에서 매매주문업무를 수행하는 계열회사는 투자증권의 매매시 그 자산운용회사의 계열회사들의 매매주문을 통합하여 주문할 수 있도록 함
 - 기존에는 자산운용회사로부터 투자증권의 매매주문을 위탁받은 그 계열회사는 위탁하는 금융기관별로 독립하여 매매주문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매매주문의 분산으로 수수료 부담 등 비효율이 발생하였으며, 국제기준과도 맞지 아니하였음

○ 업종지수 등을 활용한 다양한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개발유도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시행규칙 43조 3호·4호 : 2006/5/9 개정·시행)

-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 상위 5종목의 시가총액의 합계가 그 지수의 시가총액의 합계의 60% 이하가 되도록 하는 요건을 삭제하는 등 상장지수 간접투자기구의 요건을 조정함
 - 기존에는 상장지수 간접투자기구의 지수구성 요건은 시장전체를 대표하는 지수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다양한 업종별 지수를 기초로 하는 상장지수 간접투자기구의 개발이 곤란하였음
 - 투자자들의 선택의 폭이 확대되어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 금융투자업 규율의 적용범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 2006/6/30 입법예고)

—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이 법
상 금융투자업 규율을 적용함으로써 모든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있어
투자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업은 모든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으로
하되 그 기능에 따라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
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의 6개로 구분함

- 은행, 보험사 등이 집합투자증권, 투자성있는 예금 또는 투자성있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파생상품을 매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 투자매매
업·투자중개업으로 규율하여 투자자를 보호함

- * 다만, 이미 관련 금융법상 진입규제와 건전성 규제를 적용받는 점
을 감안하여 인가는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건전성 규제는 적용하
지 않음

- 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등 개별 법률상 펀드
에 대해서는 공모펀드 및 일반투자자가 포함된 사모펀드를 운용하
는 경우에 한하여 이 법에 의한 집합투자업자 규율과 펀드에 대한
규율을 적용하여 투자자를 보호함

○ 전문인력의 능력검증시험의 구분 (운용 및 자산설계 전문인력의 시험 및
교육인정에 관한 기준 2조 : 2006/1/3 개정·시행)

— 전문인력의 능력검증시험은 운용전문인력시험과 자산설계전문인력시
험으로 구분

- 능력검증시험의 주관기관 (운용 및 자산설계 전문인력의 시험 및 교육 인정에 관한 기준 4조 : 2006/1/3 개정·시행)
 - 운용전문인력시험은 자산운용협회, 자산설계전문인력시험은 증권업협회가 주관

- 시험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용 및 자산설계 전문인력의 시험 및 교육인정에 관한 기준 5조 : 2006/1/3 개정·시행)
 - 시험주관기관은 시험문제의 출제, 시험합격자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시험관리위원회를 구성

- 부동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운용 및 자산설계 전문인력의 시험 및 교육 인정에 관한 기준 7조, 8조 : 2006/1/3 개정·시행)
 - 운용전문인력과 자산설계전문인력을 대상으로 부동산교육을 실시
 - 운용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은 자산운용협회·금융연수원·보험연수원에서 주관하고, 자산설계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은 증권업협회가 주관

- 교육대상 (간접투자증권 판매업무담당 임·직원 교육에 관한 기준 2조 : 2006/1/3 개정·시행)
 - 간접투자증권의 판매회사의 판매업무담당 임·직원에 대한 교육은 판매회사 등에서 간접투자증권 판매업무를 담당하고자 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함

- 판매교육의 주관기관 (간접투자증권 판매업무담당 임·직원 교육에 관한
기준 3조 : 2006/1/3 개정·시행)
 - 간접투자증권의 판매회사의 판매업무담당 임·직원에 대한 교육은 자산운용협회, 증권업협회, 금융연수원, 보험연수원, 판매회사가 주관

- 판매인력관리위원회의 구성 (간접투자증권 판매업무담당 임·직원 교육에
관한 기준 4조 : 2006/1/3 개정·시행)
 - 자산운용협회는 판매교육의 실시 및 능력평가지험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판매인력관리위원회를 구성

- 보수교육 (간접투자증권 판매업무담당 임·직원 교육에 관한 기준 6조 :
2006/1/3 개정·시행)
 - 판매교육을 이수한 자는 2년마다 1회 이상 판매교육기관이 시행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간접투자증권 판매업무를 수행하지 못함

-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확대 및 투자자보호 강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정안) : 2006/6/30 입법예고)
 - 자본시장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적 제약을 철폐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취급과 설계를 허용하고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함

- 증권, 선물 등 자본시장관련 금융상품을 법령에서 일일이 열거하던 그간의 규율방식을 폐지하고, 원본손실가능성(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은 모두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
- 파생상품과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의 범위도 '계량화 가능한 모든 위험'으로 확대하여 모든 기초자산을 대상으로 파생상품과 파생결합증권이 설계될 수 있도록 함

○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범위 확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 2006/6/30 입법예고)

—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투자자의 편의를 제고

- 부수업무(금융업이 아닌 업무로서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의 범위를 사전적으로 제약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영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투자권유대행자 제도를 도입하여 투자자가 금융투자회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투자권유대행자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투자자 보호장치를 투자권유대행자에게 적용함
- 투자자가 금융투자회사의 위탁매매 계좌의 현금을 타계좌로 송금하거나 결제 등을 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와 대표금융기관(증권금융)의 업무 범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집합투자업자가 민법, 상법 등 현행법상 설립 가능한 모든 집합투자기구(Vehicle)를 활용할 수 있도록 투자조합, 투자유한회사 등을 집합투자기구에 추가함
- 집합투자업과 관련하여 펀드 종류별 투자대상자산의 제한을 폐지하고 모든 자산에 대하여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혼합자산펀드를 허용하며 사모펀드에 대하여 수익자총회 개최의무 등 규제를 완화함

○ 투자권유와 관련된 투자자 보호장치의 선진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정안) : 2006/6/30 입법예고)

- 투자자를 위험 감수능력(전문성, 보유자산규모 등)에 따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도록 하고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투자자 보호규제를 집중 적용하고 전문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규제를 완화함
-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위험 등을 투자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는 '설명 의무제도'를 도입하고 의무 불이행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며 원본결손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추정하도록 함
-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기 전에 면담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등 특성을 파악하도록 하는 'know-your-customer 제도'를 도입함
- 투자자의 특성에 적합하게 투자권유를 하도록 하는 '적합성 원칙'을 도입하여 장외파생상품과 같이 위험이 큰 금융투자상품을 무분별하게 권유하지 못하도록 함

- 투자자로부터 요청을 받지 않고 방문·전화 등을 통해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요청받지 않은 투자권유의 금지 제도'를 도입 하되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만 적용함
 -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사에 반하는 재권유 금지제도'를 도입
- 적격기관투자자의 범위 확대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4-1조 : 2006/2/16 개정·시행)
- 국민연금관리공단, 자산운용을 주업무로 하는 외국 국가기관(예 : 싱가포르 투자청) 등을 적격기관투자자에 추가
 - 적격기관투자자와 일반투자자를 구분하여 고객을 위한 보호의무를 차등 적용하고 있으나, 일부 자산운용 전문기관이 규정상의 적격기관투자자로 지정되지 않아 증권회사의 업무상 부담이 발생하고 당해 기관도 선물거래증거금 사후납부제도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불편 초래
- 간접투자관련 광고의 절차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감독규정 52조의3 : 2006/5/18 개정·시행)
-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가 간접투자자와 관련된 광고를 하는 경우 당해 회사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자산운용협회에 위임함

○ 국내운용사가 설립한 해외운용사의 외국간접투자증권 국내 판매 허용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감독규정 별지 20호 1호 : 2006/12/28 개정, 2007/2/13 시행)

— 국내 자산운용사가 50%이상 출자한 외국자산운용회사가 설정·운영하는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국내 판매를 허용

• 다만, 총 발행금액의 50% 이상을 해외에서 판매하도록 제한

* 기존에는 국내자산운용사가 50%이상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이 현지에서 설정한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국내 판매를 금지하여,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을 제약하고 역차별 요인으로 작용했음

○ 국내 판매가 가능한 외국간접투자증권 범위 확대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감독규정 별지 20호 1호·3호·7 : 2006/12/28 개정, 2007/2/13 시행)

— 부동산·상품·간접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국내 판매를 허용하되, 분산투자 규제 등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

• 동일 부동산·상품·간접투자증권에 대해 간접투자재산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지 않을 것

* 다만, 간접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이 되는 간접투자기구는 간접투자재산의 10%를 초과하여 다른 간접투자기구가 발행한 간접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없어야 함

* 유가증권 이외의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간접투자기구가 발행한 간접투자증권에 대해서는 각 간접투자재산의 30%를 초과하여 투자하지 않을 것

• 최소 분기 단위로 환매가 이루어질 것

다. 재무건정성규제

- 자산운용회사의 간접투자재산 운용시 신용파생상품의 거래 허용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시행령 10조 : 2006/4/27 개정·시행)
 - 자산운용회사의 간접투자재산의 운용시에 신용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으로의 신용파생상품의 거래를 허용함
 - 기존에는 자산운용회사의 간접투자재산 운용시에 신용파생상품의 거래가 금지됨에 따라 신용위험이 있는 유가증권 등의 편입이 제한되어 다양한 자산운용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었음
 - 간접투자재산으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산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방법의 확대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시행령 69조·72조 및 73조 : 2006/4/27 개정·시행)
 -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 투자증권의 차입을 허용하고, 정부투자기관 등이 발행한 어음 및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투자한도를 확대함
 - 기존에는 투자증권의 차입 금지 등 간접투자기구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로 인하여 간접투자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음
 - 투자증권의 차입을 허용함에 따라 차입매도 등을 통한 수익창출이 가능하고, 정부투자기관 발행어음 등에 대한 투자한도를 확대함에 따라 탄력적·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주식·부동산 등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의 개선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시행령 82조 : 2006/4/27 개정·시행)

—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보유한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시가 외에 영업권의 대가를 포함한 취득원가로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의 취득 후 1년 이내에도 시장가치·자산가치가 현저하게 변동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함

- 기존에는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상장주식에 대하여 평가기준일의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함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영업권의 대가를 지불한 것이 반영되지 아니하고,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후 1년 이내에는 취득원가로만 평가하도록 함에 따라 가격이 급변동하여도 그 가치를 반영하지 못했음
- 간접투자재산의 평가방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가치가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최소출자금액, 운용대상자산, 의무투자비율 등에 관한 규제 완화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시행령 131조의 4 및 131조의 6 : 2006/4/27 개정·시행)

—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최소출자금액을 낮추고, 부실채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며, 경영권 참여 목적 등에 있어서 의무투자비율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함

- 기존에는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최소출자금액, 운용대상 자산의 제한, 의무투자비율 등의 규제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이 활발하지 못했음

-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투자확대, 자산운용의 자율성 확대 등을 통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활성화를 도모함

○ 경영개선권고 등 적기시정조치 관련 제도 개선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감독규정 33조의2, 35조 : 2006/8/31 개정·시행)

— 경영개선권고 등 적기시정조치시 당사자에게 조치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명문화

— 경영평가위원회의 경영개선계획 사전심의회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
회를 부여

- 경영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받은 자산운용회사는 동 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2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동 계획의 승인여부
를 결정하기 전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
를 거쳐야 함

○ 경영실태평가기준 및 내용의 객관화·명확화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감독
규정 25조, 별지 9-2호 : 2006/8/31 개정·시행)

— 경영실태평가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수시 경영실태평가의 근거를 마련
- 세칙 별표에 규정된 계량평가항목 및 비계량평가항목을 규정으로 이관

- 적기시정조치 관련 비계량 평가항목의 객관화·최소화 (간접투자 자산
 운용업 감독규정 별지 9-2호 : 2006/8/31 개정·시행)
 - 비계량 평가항목중 주관적 판단 가능성이 큰 “기타 경영실태평가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항목을 삭제

- 자산운용 제한규정의 개선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감독규정 별지 20호
 1호·3호 : 2006/12/28 개정, 2007/2/13 시행)
 - 동일인과의 총 거래한도를 간접투자재산의 35%로 제한
 - 단, 투자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포함하는 경우
 동 한도를 20%로 축소
 -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허용하되,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
 - 헤지 이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 관련 투자위험을
 투자설명서에 명시
 -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순자산가치 이내로 제한
 -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동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위험평가액을 간접투
 자재산의 10% 이내로 제한
 - 간접투자재산으로 제3자를 위한 보증행위의 금지

- 옵션거래의 위험평가액(risk exposure) 산정기준 보완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감독규정 74조 1항 2호 : 2006/12/28 개정, 2007/3/28 시행)
 - 풋옵션 매도는 ‘옵션행사가격’을, 콜옵션 매도는 ‘옵션행사가격과 기초
 자산가격 중 큰 가격’을 기준으로 위험평가액을 산정

- 기존에는 파생상품거래의 위험평가액을 일률적으로 '시장가격'으로 산정함에 따라 옵션거래의 위험평가액이 과대 또는 과소평가되는 문제가 발생했었음

< 옵션매도의 위험평가액 산정기준 비교 >

	손실 가능범위 *	위험평가액	
		기존	개정
풋옵션 매도	0~행사가격	기초자산 가격	행사가격
콜옵션 매도	0~무한대		Max[행사가격, 기초자산 가격]

* 옵션 프리미엄을 제외한 손익구조(payoff)

- 위험평가액 산정시 상계(netting)의 허용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감독규정 74조 4항 : 2006/12/28 개정, 2007/3/28 시행)
 - 위험평가액 산정시 기초자산, 만기 등이 동일하고 가격변화 방향만 반대인 파생상품 거래간 상계(netting)를 허용
 - 단, 장외파생상품의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이 다르므로 거래상대방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 * 기존에는 펀드가 보유하는 기초자산과 가격변화가 반대인 파생상품거래만을 위험회피거래로 인정(위험평가액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파생상품 거래간의 상계를 불인정
- 금융회사의 경영실태평가기준 및 내용의 객관화·명확화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6조, 별지 6호 : 2006/8/31 개정·시행)
 - 종래 내부기준으로 운영중이던 평가부문별 가중치를 세칙에 명시하여 투명성을 제고

— 경영실태평가지 금융회사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도록 명시

- 다만, 분기별로 계량지표만을 대상으로 서면평가하는 경우(간이계량 평가)에는 실익이 없으므로 예외

라. 가격규제 및 기업지배구조 등

○ 자산운용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직원의 겸직 등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시행규칙 10조 : 2006/5/9 개정·시행)

— 자산운용회사의 비상근 임·직원이 그 계열회사인 자산운용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자산운용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그 계열회사인 자산운용회사의 비상근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자산운용회사의 임·직원의 겸직제한을 완화함

— 국내·외 자산운용회사간의 형평성 및 자산운용회사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 외국간접투자기구의 법률고문 선임의무 폐지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감독 규정 별지 20호 9호 : 2006/12/28 개정, 2007/2/13 시행)

— 외국간접투자기구 설립시 신탁약관 등의 법규위반 여부를 검토할 독립적인 법률고문 선임의무를 폐지

3. 투자자문회사

○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확대 및 투자자보호 강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정안) : 2006/6/30 입법예고)

— 자본시장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적 제약을 철폐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취급과 설계를 허용하고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함

- 증권, 선물 등 자본시장관련 금융상품을 법령에서 일일이 열거하던 그간의 규율방식을 폐지하고, 원본손실가능성(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은 모두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
- 파생상품과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의 범위도 '계량화 가능한 모든 위험'으로 확대하여 모든 기초자산을 대상으로 파생상품과 파생결합증권이 설계될 수 있도록 함

○ 금융투자업 규율의 적용범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정안) : 2006/6/30 입법예고)

—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이 법상 금융투자업 규율을 적용함으로써 모든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있어 투자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업은 모든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으로 하되 그 기능에 따라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의 6개로 구분함

- 은행, 보험사 등이 집합투자증권, 투자성있는 예금 또는 투자성있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파생상품을 매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으로 규율하여 투자자를 보호함
 - * 다만, 이미 관련 금융법상 진입규제와 건전성 규제를 적용받는 점을 감안하여 인가는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건전성 규제는 적용하지 않음
- 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등 개별 법률상 펀드에 대해서는 공모펀드 및 일반투자자가 포함된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법에 의한 집합투자업자 규율과 펀드에 대한 규율을 적용하여 투자자를 보호함

○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범위 확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 2006/6/30 입법예고)

—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투자자의 편의를 제고

- 부수업무(금융업이 아닌 업무로서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의 범위를 사전적으로 제약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영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투자권유대행자 제도를 도입하여 투자자가 금융투자회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투자권유대행자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투자자 보호장치를 투자권유대행자에게 적용함

- 투자자가 금융투자회사의 위탁매매 계좌의 현금을 타계좌로 송금하거나 결제 등을 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와 대표금융기관(증권금융)의 업무 범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집합투자업자가 민법, 상법 등 현행법상 설립 가능한 모든 집합투자기구(Vehicle)를 활용할 수 있도록 투자조합, 투자유한회사 등을 집합투자기구에 추가함
- 집합투자업과 관련하여 펀드 종류별 투자대상자산의 제한을 폐지하고 모든 자산에 대하여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혼합자산펀드를 허용하며 사모펀드에 대하여 수익자총회 개최의무 등 규제를 완화함

○ 투자권유와 관련된 투자자 보호장치의 선진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정안) : 2006/6/30 입법예고)

- 투자자를 위험 감수능력(전문성, 보유자산규모 등)에 따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도록 하고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투자자 보호규제를 집중 적용하고 전문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규제를 완화함
-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위험 등을 투자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는 '설명 의무제도'를 도입하고 의무 불이행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며 원본결손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추정하도록 함
-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기 전에 면담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등 특성을 파악하도록 하는 'know-your-customer 제도'를 도입함

- 투자자의 특성에 적합하게 투자권유를 하도록 하는 ‘적합성 원칙’을 도입하여 장외파생상품과 같이 위험이 큰 금융투자상품을 무분별하게 권유하지 못하도록 함
- 투자자로부터 요청을 받지 않고 방문·전화 등을 통해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요청받지 않은 투자권유의 금지 제도’를 도입 하되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만 적용함
-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사에 반하는 재권유 금지제도’를 도입

○ 법률의 통합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 2006/6/30 입법예고)

- 현재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에만 적용되는 대주주 변경시 금융감독위원회 사전승인제도를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자문업자에게도 적용하여 건전경영을 유도

4. 선물회사

가. 진입규제

○ 선물회사 주식취득의 승인대상이 되는 지배주주의 범위 및 요건

(선물거래법 시행령 10조의3 1항~3항, 별표 2 : 2006/1/27 개정, 1/30 시행)

— 주식취득의 승인대상이 되는 지배주주의 범위를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및 주요주주로 정하고, 지배주주의 요건을 선물업 허가시의 주요출자자의 재무건전성 기준 등으로 정함

- 선물업 허가시의 주요출자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가 허가시의 규제를 회피하여 우회적으로 주식취득을 통하여 선물업을 영위하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부적격자의 선물업 진출을 방지하고, 선물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

○ 선물회사의 지배주주에 대한 승인 절차 등 (선물거래법 시행령 10조의3

4항~8항 : 2006/1/27 개정, 1/30 시행)

— 선물회사의 주식취득으로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지배주주 승인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문서로 통보하되, 불승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도록 함

- 일정한 기한 내에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행정처리와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

○ 선물회사 지배주주 변경승인 요건 등 마련 (선물업 감독규정 2조의16, 별표 1의2 : 2006/2/16 개정·시행)

—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함에 있어, 선물회사 설립시의 주요출자자 요건을 준용하여 지배주주 변경승인 요건을 마련

- 금융기관인 지배주주의 재무건전성은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토록 하고 그 기준이 없거나 적용이 부적합한 지배주주의 재무건전성 요건은 부채비율 200% 이하로 정함

— 승인신청서의 서식, 자료의 보완 요청 및 심사유예의 근거 등 승인신청의 방법 및 절차를 마련

나. 영업·상품규제

○ 금융투자업 규율의 적용범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정안) : 입법예고)

—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이 법상 금융투자업 규율을 적용함으로써 모든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있어 투자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업은 모든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으로 하되 그 기능에 따라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의 6개로 구분함
- 은행, 보험사 등이 집합투자증권, 투자성있는 예금 또는 투자성있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파생상품을 매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으로 규율하여 투자자를 보호함

* 다만, 이미 관련 금융법상 진입규제와 건전성 규제를 적용받는 점을 감안하여 인가는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건전성 규제는 적용하지 않음

- 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등 개별 법률상 펀드에 대해서는 공모펀드 및 일반투자자가 포함된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법에 의한 집합투자업자 규율과 펀드에 대한 규율을 적용하여 투자자를 보호함

○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확대 및 투자자보호 강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정안) : 2006/6/30 입법예고)

— 자본시장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적 제약을 철폐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취급과 설계를 허용하고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함

- 증권, 선물 등 자본시장관련 금융상품을 법령에서 일일이 열거하던 그간의 규율방식을 폐지하고, 원본손실가능성(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은 모두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
- 파생상품과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의 범위도 '계량화 가능한 모든 위험'으로 확대하여 모든 기초자산을 대상으로 파생상품과 파생결합증권이 설계될 수 있도록 함

○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범위 확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정안) : 2006/6/30 입법예고)

—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투자자의 편의를 제고

- 부수업무(금융업이 아닌 업무로서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의 범위를 사전적으로 제약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영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투자권유대행자 제도를 도입하여 투자자가 금융투자회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투자권유대행자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투자자 보호장치를 투자권유대행자에게 적용함
- 투자자가 금융투자회사의 위탁매매 계좌의 현금을 타계좌로 송금하거나 결제 등을 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와 대표금융기관(증권금융)의 업무 범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집합투자업자가 민법, 상법 등 현행법상 설립 가능한 모든 집합투자기구(Vehicle)를 활용할 수 있도록 투자조합, 투자유한회사 등을 집합투자기구에 추가함
- 집합투자업과 관련하여 펀드 종류별 투자대상자산의 제한을 폐지하고 모든 자산에 대하여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혼합자산펀드를 허용하며 사모펀드에 대하여 수익자총회 개최의무 등 규제를 완화함

○ 투자권유와 관련된 투자자 보호장치의 선진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정안) : 2006/6/30 입법예고)

- 투자자를 위험 감수능력(전문성, 보유자산규모 등)에 따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도록 하고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투자자 보호규제를 집중 적용하고 전문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규제를 완화함

-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위험 등을 투자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는 '설명 의무제도'를 도입하고 의무 불이행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며 원본결손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추정하도록 함
 -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기 전에 면담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등 특성을 파악하도록 하는 'know-your-customer 제도'를 도입함
 - 투자자의 특성에 적합하게 투자권유를 하도록 하는 '적합성 원칙'을 도입하여 장외파생상품과 같이 위험이 큰 금융투자상품을 무분별하게 권유하지 못하도록 함
 - 투자자로부터 요청을 받지 않고 방문·전화 등을 통해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요청받지 않은 투자권유의 금지 제도'를 도입하되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만 적용함
 -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사에 반하는 재권유 금지제도'를 도입
- 사후증거금의 예탁시한 개선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28조 5항 : 2006/10/27 개정, 11/13일 시행)
- 사후 위탁증거금의 예탁시한을 기존 '당일중 회원이 정하는 시간'에서 '당일중 회원이 정하는 시간 또는 그 다음날 10시 이내에서 회원이 정하는 시간'으로 변경

- 회원이 당일 또는 익일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사후 위탁증거금의 당일 납부에 따른 시간축박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결제안정성을 제고함

○ 기본예탁금의 차등적용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53조 1항 : 2006/10/27 개정, 12/18 시행)

— 적격기관투자자와 비적격기관투자자간 구분없이 동일하게 1,500만원 이상으로 적용되는 기본예탁금을 ‘know your customer rule’에 따라 회원이 비적격기관투자자에 대해 3단계로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세칙에서 정하도록 함

- 전문지식 구비 및 고도의 복합투자전략을 구사하여 전문적이고 건전한 투자자로서 수익창출가능성이 높은 투자자는 1단계 적용
- 적격기관투자자를 제외한 신규 투자자의 시장진입시에는 무조건 2단계 이상을 적용하여 현행보다 강화

○ 기본예탁금의 적용 면제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53조 1항 단서 : 2006/10/27 개정, 12/18 시행)

— 사후위탁증거금계좌 및 옵션매수전용계좌(옵션을 매수 또는 매수 미결 계약정의 반대매매만 하는 계좌)의 경우 기본예탁금의 적용을 면제

○ 위탁자별 미결제약정 보유제한수량의 차등적용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73조의2 : 2006/10/27 개정, 12/4 시행)

—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수탁할 수 있는 미결제약정 보유한도를 기존의
업무규정(265조)에서 수탁계약준칙으로 이관하여 규정체계를 정비하고
세칙에서 보유한도를 차등적용

— 주가지수선물 순미결제약정 보유한도의 위탁자별 차등적용

- 모든 투자자(코스피 200 선물의 경우 비적격기관투자자)에 대해 5,000
계약 이내에서 'know your customer rule'에 따라 위탁자의 재무건
전성 및 신용상태 등을 파악하고 있는 회원이 위탁자의 신용 등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함
- 코스피 200 선물거래의 경우 적격기관투자자는 7,500계약을 최대한
도(최저한도 5,000계약)로 하여 직전월의 미결제보유현황 등을 고려
하여 미결제약정보유한도를 확대하거나 축소함

○ 미국달러선물의 계약당 주문증거금 변경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시행세칙
20조 1항 1호 가목 : 2006/2/2 개정, 2/6 시행)

— 미국달러선물의 계약당 주문증거금을 기존 200만원에서 환율(증거금기
준가격) 구간별로 다음과 같이 변경함

증거금기준가격*	계약당 주문증거금
750.00 이상 ~ 850.00 미만	130만원
850.00 이상 ~ 950.00 미만	145만원
950.00 이상 ~ 1,050.00 미만	160만원
1,050.00 이상 ~ 1,150.00 미만	175만원
1,150.00 이상 ~ 1,250.00 미만	190만원

* 증거금기준가격이 750.00 미만인 경우 계약당 주문증거금은 매 100.00원 간격으로 130만원에서 15만원씩 차감하여 산출되는 금액으로 하며, 증거금기준가격이 1,250.00 이상인 경우 계약당 주문증거금은 매 100.00원 간격으로 190만원에서 15만원씩 가산하여 산출되는 금액으로 함

○ 엔선물 및 유로선물의 위탁증거금률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시행세칙 19조 1항, 22조 1항 : 2006/5/22 개정, 5/26 시행)

— 위탁증거금률은 거래증거금률의 약 1.5배 수준에서 결정하므로 엔선물 및 유로선물의 위탁증거금률을 3.5%로 함

• 유지증거금률은 거래증거금률과 동일한 2.5%로 함

○ 엔선물 및 유로선물의 계약당 주문증거금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시행세칙 20조 1항·별표 : 2006/5/22 개정, 5/26 시행)

— 미국달러선물과 동일하게 환율변동에 상응한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환율구간별 계약당 주문증거금액을 사전에 설정함

- 계약당 주문증거금액은 거래편의성을 감안하여 개별 환율구간의 최대 값에 정산차금승수와 위탁증거금률을 곱하여 산출된 증거금액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함
 - 최근 환율기준으로 계약당 주문증거금액은 엔선물이 150만원, 유로 선물이 220만원임

- 외화(증거금)의 종류 확대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시행세칙 16조 1항 : 2006/7/19 개정, 10/2 시행)
 - 현금(원화)에 갈음하여 거래증거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외화의 종류를 확대함
 - 환금성, 선물거래 참여비중 및 국내은행의 취급여부 등을 감안하여 기존 7개국 통화 외에 스위스 프랑화 및 캐나다 달러화를 추가

- 외화증거금제도의 시행일 지정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시행세칙 부칙 : 2006/7/19 개정, 10/2 시행)
 - 관계법규, 시스템 반영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이 유보되고 있는 외화 증거금제도는 200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함

- 주식관련상품의 선물·옵션기본예탁금제도 개선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시행세칙 31조 : 2006/11/13 개정, 12/18 시행)
 - 선물·옵션기본예탁금의 3단계 차등적용

- 코스피 200 선물, 코스피 200 옵션, 스타지수선물 및 주식옵션 등 주식관련상품의 선물·옵션기본예탁금은 'know your customer rule'에 따라 파악된 위탁자별 신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3단계로 차등 적용함

구 분	기본예탁금액
1단계	5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2단계	1,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3단계	3,000만원 이상

- 당해 회원에 계좌를 최초로 설정한 위탁자에 대하여는 2단계 또는 3단계를 적용함

— 회원의 선물·옵션기본예탁금 징수기준 마련 의무

- 회원은 개개 위탁자별로 적용될 단계, 단계별 적용금액 및 적용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선물·옵션기본예탁금적용기준)을 정해야 함
- 회원이 기본예탁금의 적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투자자에 대한 주지 등을 위하여 사전에 공표하고 적용일의 7일 전까지 거래소에 서면 통지하도록 함

○ 주가지수선물에 대한 미결제약정 보유 제한수량의 차등적용 (선물시장수탁계약준칙 시행세칙 52조의2 1항 : 2006/11/13 개정, 12/18 시행)

— 위탁자가 보유할 수 있는 주가지수선물거래의 순미결제약정수량은 다음의 수량으로 함

- 적격기관투자자(사전에 회원에게 신청한 적격기관투자자에 한함)의 코스피 200 선물거래의 경우 : 5,000계약 이상 7,500계약 이내에서 다음의 방법에 해당하는 수량

구 분		순미결제약정 제한수량
전월 제한수량의 90% 초과 거래일	10일 이상	전월 제한수량 + 500계약
	1일~10일 미만	전월 제한수량
	없음	전월 제한수량 - 500계약

- 스타지수선물거래 및 일반위탁자(미신청 적격기관투자자 포함)의 코스피 200 선물거래의 경우 : 5,000계약 이내에서 회원이 위탁자과 약사항 등을 감안하여 위탁자별로 정한 수량

다. 재무건정성규제

- 결산지침 관련조항의 삭제 (선물업 감독규정 9조 : 2006/12/28 개정·시행)
 - 금융감독원장의 결산회계처리에 관한 지침제정권 및 명령권을 폐지
 -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계정과목별 처리기준을 제정하고 있고, 계정과목의 신설·개정을 승인하고 있으므로 유사규제를 폐지
- 경영개선권고 및 경영개선계획 승인 주체의 변경 (선물업 감독규정 28조, 32조 : 2006/12/28 개정·시행)
 - 선물업자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및 동 권고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주체를 금융감독원장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변경

- 선물업자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시 권리구제 강화 (선물업 감독규정 30조의2, 32조 : 2006/12/28 개정·시행)
 - 금감위의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시 당해 선물업자에게 조치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는 조항을 신설
 - 조치의 중대성에 비추어 객관적인 근거 및 이유의 명확한 제시를 통하여 조치의 투명성을 확보
 - 선물업자의 경영개선계획을 경영평가위원회가 사전 심의하는 경우 당해 선물업자를 출석시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
 -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계획의 수립 및 승인을 위하여 당해 선물업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 후순위차입금 최저만기요건의 연장 (선물업 감독규정 20조 1항 : 2006/12/28 개정·시행)
 -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도록 한 후순위차입금의 취지에 맞도록 최저만기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원금상환일까지의 잔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영업용순자본에 가산하는 후순위차입금을 분기별로 25%씩 차감

- 후순위차입금 최초 차입 및 계약내용 사후변경에 대한 규제완화 (선물업 감독규정 20조 2항 : 2006/12/28 개정·시행)
 - 후순위차입금의 최초 차입 및 계약내용 사후변경을 승인사항에서 사전 신고사항으로 전환

○ 후순위차입금 조기상환요건의 명시 (선물업 감독규정 20조 4항~6항 :
2006/12/28 개정·시행)

— 후순위차입금 상환과정의 투명성제고를 위하여 선물업자의 재무건전성 정도에 따른 후순위차입금 조기상환요건을 명시

- 상환후 영업용순자본비율이 200% 이상인 경우 : 상환재원이나 금리요건 등에 관계없이 조기상환을 허용
- 상환후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 이상 200% 미만인 경우 : 일정요건 충족시 조기상환 허용
- 상환후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 미만인 경우 : 조기상환 불허

III. 증권감독

1. 법적규제기관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증권거래법 시행령 37조, 83조의8 : 2006/3/3 개정·시행)
 - 금감위의 명령을 위반한 증권회사에 대한 벌칙 규정과 상장된 유가증권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유지하는 안정조작 등을 금지하는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하위 대통령령의 규정을 상위 법률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증권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부과 기준의 명확화 (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 별표 3호 : 2006/3/30 개정·시행)
 - 동종의 원인사실로 인한 행위가 2개 이상의 공시위반에 해당된 경우 하나의 위반행위로 간주하는 과징금부과 기준상 통칙을 명료화
 - 수시공시 위반사항이 동시에 “정기보고서 등의 재무제표 본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종의 위반행위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의 위반행위로 간주함

- 정기보고서 공시위반에 대한 법정부과한도액의 예외적용사항 명시 (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 별표 3호 : 2006/3/30 개정·시행)
 - 동종의 원인사실로 인한 행위가 수시공시를 위반하고, 동 사항이 “정기보고서 등의 공시사항 기재위반 및 주석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기준금액에 100분의 10이 아닌 100분의 3을 곱함

- 사전통지 내용 및 예외사유 개선 (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 57조, 76조 : 2006/9/13 개정·시행)
 - 당사자 등에 대한 사전통지의 내용과 통지 예외사유를 행정절차법에 맞추어 상세히 규정하고
 - 사전통지 업무를 금감원장이 할 수 있도록 위탁근거를 신설

- 조치기준의 투명화 (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 별표 4호 : 2006/9/13 개정·시행)
 -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시 적용하는 내부운영기준(양정기준)을 가능한 한 규정예 반영

- 의견제출 절차 개선 (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 58조 : 2006/9/13 개정·시행)
 - 의견제출 방법을 행정절차법에 맞추어 서면·구술 외에 정보통신망도 추가하고
 - 의견청취 예외사유를 행정절차법에 맞추어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로 규정

- 이의신청제도 개선 (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 60조 : 2006/9/13 개정·시행)
 - 이의신청이 행정쟁송 제기기한(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처리기간을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단축
 -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되, 이 경우에는 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문서로 통지
 -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재조사를 위하여 당해사건을 조사하지 않은 부서에 배정

- 직권재심제도 개선 (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 60조의2 : 2006/9/13 개정·시행)
 - 감독당국의 직권에 의한 재심사유를 기존의 증거서류의 오류·누락 외에 법원의 확정판결, 검찰의 무혐의결정, 새로운 증거의 발견을 추가하여 권리구제를 강화

-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 개선 (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 별표 4호 : 2006/9/13 개정·시행)
 - 공시위반이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된 경우에는 회계·공시분야와 같이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
 - 다만, 부도발생 등의 사유로 과징금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유가증권발행 제한 등을 조치
 - 공시위반의 실질적 행위자(대표이사 등)가 불공정거래 등 다른 위법행위로 형사조치되는 경우, 공시위반 내용도 함께 통보

○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조체제 강화 (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
42조, 62조, 64조, 67조 : 2006/9/13 개정·시행)

—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회」 안전심사의 전문성 제고와 조사·심리
기관간 업무협조 강화를 위하여 거래소 심리담당임원을 배석토록 하
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발언할 수 있도록 개선

—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위원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거래소 통합에 맞추어 위원구성을 정비

- 금감위 조사기획과장 →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
- 감독원 조사담당부서장 → 감독원 시장담당부원장보
- 증권거래소 심리담당부이사장보, 증권업협회 심리담당상무이사, 선
물거래소 심리담당상무이사 →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 또한, 협의회 개최일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유기적 협조를 위하
여 산하에 실무협의회를 운영

- 매 2주 → 분기 1회

○ 영업 일부·전부 정지 및 폐쇄조치 사유의 구체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17조 : 2006/8/31 개정·시행)

— 금융업법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도록 영업의 전부정지 조치 사유를 일
부정지 조치 사유와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

- 영업의 전부정지 조치사유를 인허가·등록 취소 사유와 함께 규정

— 인허가·등록 취소, 영업의 전부·일부정지 조치사유를 상위법에 부합
하도록 개정

- 각 금융업법에서 인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로 열거되
어 있지 않은 사항을 삭제하고 열거된 사항은 반영

* 삭제사항 : 금융관련법규의 반복 위반, 금융업계의 신용질서 문란

* 추가사항 : 인허가 조건 위반, 시정명령 불이행

○ 금감위 또는 금감원장에 대한 재심청구제도 개선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37조 : 2006/8/31 개정·시행)

— 재심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세칙에서 규정으로 이관하고, '재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용어 변경

— 감독당국의 조치의뢰에 의거, 당해 금융회사로부터 특정조치가 예정된
직원에 대해 해당 기관장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

○ 직권재심제도 개선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37조 : 2006/8/31
개정·시행)

— 직권재심 대상 및 기간에 관한 사항을 세칙에서 규정으로 이관

— 직권재심 대상에 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등을 추가

— 직권재심 절차 착수시 제재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진술기회를 부여

— '제재일로부터 1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직권재심 기한을 삭제

○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조치의뢰제도의 확대 운영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45조 : 2006/8/31 개정·시행)

— 기존의 은행·증권·보험사 외에 종금사, 신용카드사 및 상호저축은행
에 대해서도 조치의뢰제도 적용

— 유가증권 일임매매, 경미한 보험모집질서 위반 등 일부 직접조치 요구
대상을 조치의뢰대상으로 변경

- 임·직원이 함께 관련된 위법·부당행위시 주행위자가 직원이 아닌 경우에는 조치의뢰

-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증권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6조 : 2006/7/25 개정·시행)
 - 위반행위 혐의자를 오인하여 주변인물 등을 잘못 적시하더라도 신고 내용에 따라 위반행위자가 적발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
 - 조사 결과, 신고자가 자신이 제보한 당해 불공정거래행위로 형사조치(고발·수사기관 통보)를 받는 경우 이외는 포상금을 지급

- 포상금 지급금액 대폭 상향 조정 등 (증권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별표 : 2006/7/25 개정·시행)
 - 사건의 중요도 등급별 기준금액(지급한도)을 상향 조정하고, 유형별 구분을 없애으로써 등급분류를 단순화
 - 300만~3천만원(5~2등급 기준) → 500만~4천만원(")
 -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요도 평가요소로 부적합한 과징금 대신에 위법 및 죄질의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중대 위반행위의 수)를 도입하는 등 등급평가방식을 개선

- 증권범죄조사의 일반조사로의 전환 (증권범죄조사 사무처리 규정 18조의2 : 2006/9/11 개정·시행)
 - 증선위위원장은 압수·수색으로 증빙물건의 확보 등 증권범죄조사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일반조사로 전환할 수 있으며

— 일반조사로 전환된 사건은 감독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원에 이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인력 등의 협조요청 (증권범죄조사 사무처리 규정 9조의2 : 2006/9/11 개정·시행)

— 증선위위원장은 증권범죄조사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독원장 또는 거래소 이사장에게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감독분담금의 분담요율 결정 (금융기관 분담금징수 등에 관한 규정 2006/6/2 개정·시행)

— 은행·비은행권역은 0.783805/1만, 보험권역은 2.744649/1만, 증권·기타권역은 9.971845/1만으로 결정

— 산정방식 : 현행 방식 적용 (2002년 이후 동일)

- 총부채(50%), 투입인력(40%), 총자산(5%), 영업수익(5%)

< 2006년도 금융권역별 분담요율 >

구 분	분담요율	법시행령상 분담요율 한도
은행·비은행	0.783805/10,000	3/10,000
보 험	2.744649/10,000	15/10,000
증권·기타	9.971845/10,000	30/10,000

○ 감독분담금 부과면제 대상기관 조정 (금융기관 분담금징수 등에 관한 규정 2006/6/2 개정·시행)

— 면제 대상기관 추가 : 한국수출보험공사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업 허가 취득(2004.7.23)에 따라 감독분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되었으나, 동사의 자체 업무 대비 신용정보업의 비중이 낮은 점 등을 감안하여 감독분담금 부과를 면제

— 면제 대상기관 삭제 : 기술신용보증기금

- 신용정보업 허가 반납(2005.3.29)으로 검사대상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른 조문 정리

2. 자율규제기관

○ 법률의 통합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제정안) : 2006/6/30 입법예고)

—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명칭을 한국거래소로 변경하고 증권예탁결제원의 명칭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변경함

— 자율규제기관(협회)의 기능별 재편을 위하여 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를 단일의 '금융투자협회'로 통합하는 방안으로 조문을 마련함

- 협회간 자율적 합의가 이루어져 기능별 재편방안이 마련되면 이를 제정안에 반영할 계획임

○ 회원제재의 병과대상의 정비 (시장감시규정 24조 1항 : 2006/12/1 개정·시행)

— 회원징계와 회원에 대한 개선·시정요구의 병과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회원제재의 실효성을 제고

○ 회원제재 대상자 권리보호에 관한 징계절차의 정비 (시장감시규정 26조, 27조의2 : 2006/12/1 개정·시행)

- 회원제재시에 회의일 10일전까지 징계사유·근거 및 예정내용과 의견진술 일시·장소 등을 사전통보하고 위원회에서 의견진술방법을 구두 및 서면방식을 모두 인정하고 징계 등을 한 경우 회원에게 고지
- 재심 명칭을 당사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으로 변경하는 한편, 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권재심 등의 사항을 규정으로 이관함으로써 회원제재절차상의 적법성을 강화

○ 회원에 대한 비징계적 조치의 다양화 (시장감시규정 22조 4항 : 2006/12/1 개정·시행)

- 회원에 대한 업무개선이나 원상회복을 위한 시정요구 외에 예방계도 목적의 주의촉구 등 회원의 자율적 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비징계적 조치를 도입
 - 주의촉구 공문발송, 이행확약서 징구 등

○ 시장감시위원회의 전자문서 사용 근거 마련 (시장감시규정 5조 2항 : 2006/12/1 개정·시행)

- 회원에 통보하는 서면에 전자문서를 포함시킴으로써 심리 및 감리업무의 편의성을 제고

-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공표대상의 정비 (시장감시규정 5조 3항·4항 : 2006/12/1 개정·시행)
 - 불공정거래예방을 위한 공표사항을 현실에 맞게 '소수지점거래집중종목'에서 '투자주의사항'으로 변경
 - 투자주의사항 중 유가증권·코스닥시장에 모두 공표하는 사항은 규정으로 정하되, 코스닥시장에서만 공표하는 증가급변종목 등 시장 특성을 감안하여 시장별로 개별 공표하는 사항은 세칙으로 정함

- 기한 계산의 명확화 (시장감시규정 6조 2항 : 2006/12/1 개정·시행)
 - 회원의 시장감시위원회에 대한 보고기일의 종료일이 토요일인 경우 보고시기를 그 다음 거래일로顺延함으로써 회원의 보고 편의를 제고

- 민원·분쟁현황 보고시기의 개선 (시장감시규정 7조 4항 : 2006/12/1 개정·시행)
 - 회원에 대한 고객의 민원·분쟁현황의 보고시기를 '월별'에서 '분기별'로 변경하여 회원의 업무부담을 경감

- 외국거래소와의 정보교환을 위한 심리자료 등 징구근거 마련 (시장감시규정 14조 1항 : 2006/12/1 개정·시행)
 - 국경간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외국거래소와의 정보교환 및 공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외국거래소가 요청한 심리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

- 감리요원의 명칭 변경 (시장감시규정 2조 10항, 8조, 9조, 14조, 15조, 17조, 20조 : 2006/12/1 개정·시행)
 - 시장감시·심리·감리·연계감시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감리요원을 시장감시요원으로 명칭 변경

-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 관련조문의 정비 (시장감시규정 4조 1항 11호, 2항 9호 : 2006/12/1 개정·시행)
 - 개별시장에서의 규제대상행위에 일부 포함된 시장간 연계거래관련 사항을 시장간 연계거래에서의 규제대상 행위로 이관

- 규정에서 위임된 투자주의사항의 명시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3조 : 2006/12/1 개정·시행)
 - 투자주의사항으로 종가급변종목·상한가잔량상위종목 및 단일계좌거래량상위종목을 명시

- 불공정거래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기준의 명시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6조의2, 6조의3 : 2006/12/1 개정·시행)
 - 내부지침에서 규정하던 불공정거래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세칙으로 이관

- 풍문수집 근거의 상향조정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7조 2항 : 2006/12/1 개정·시행)
 - 상장법인 수시공시 사항 등에 대한 풍문수집의 근거규정을 내부지침에서 세칙으로 이관

- 정기감리의 실효성 제고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12조 3항·4항 : 2006/12/1 개정·시행)
 - 시장감시위원회가 정기감리계획을 최종결정한 경우에 회원에게 통보하거나 설명함으로써 감리업무의 신뢰성 및 실효성을 제고
 - 거래내용 분석 결과, 정기감리대상으로 선정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 이를 회원에게 미리 예고함으로써 회원의 자발적 불공정거래 예방기회를 부여

- 구체적인 감리실시방법 근거의 상향조정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12조 1항·2항, 12조의2, 12조의3 : 2006/12/1 개정·시행)
 - 내부지침으로 운영하던 정기감리 및 수시감리 실시 방법 등을 세칙으로 이관
 - 감리범위 확대 및 병합에 관한 사항을 세칙으로 이관

- 회원에 대한 비징계성 조치요구기준의 마련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14조 2항 : 2006/12/1 개정·시행)
 - 회원에 대한 비징계성 조치요구유형으로 추가된 '이행확약서 징구' 및 '주의촉구'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

- 감리에 따른 회원조치기준의 개선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14조 3항·4항 : 2006/12/1 개정·시행)
 - 다수의 위규행위에 대한 회원조치시의 제재수준은 그 중 책임이 중한 징계로 가중하여 일괄조치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감리횟수 계산에 있어서 복수의 감리건을 병합처리하여 가중 조치된 경우에는 단일의 조치건으로 간주

○ 회원 징계 및 임·직원의 징계요구시 감경기준의 마련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18조 : 2006/12/1 개정·시행)

- 회원 징계의 가중·감경요소로서 내부통제 평가결과를 신설
- 회원의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를 할 경우 당해 임직원에게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요구의 종류 및 내용을 감경
 - 상훈법에 의한 표창,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장관이상의 표창, 금감위위원장·금감원장·거래소이사장·시장감시위원장의 표창을 받은 경우

○ 징계공표에 관한 절차 및 내용의 명확화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20조 : 2006/12/1 개정·시행)

- 내부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 또는 징계요구에 관한 공표사항을 세칙으로 이관
- 회원의 이의신청 결과 제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 회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재차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약식제재금 부과대상행위별 부과기준 및 감면사유의 마련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23조, 별표 2 : 2006/12/1 개정, 2007/1/1 시행)

- 내부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약식제재금 부과대상인 경미한 위규행위 유형을 세칙으로 이관

— 경미한 위규행위별로 구체적인 약식제재금 부과기준 및 감경사유를 마련

- 자기주식매매거래관련 사항 위반 : 거래량/신고수량 대비 위반비율에 따라 20만원,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등 5단계로 차등 부과
- 프로그램매매호가 보고의무 위반 : 위반금액에 따라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등 4단계로 차등 부과
- 호가·주문위반 및 수탁관련 사항 위반 : 규정최고액의 범위내에서 위반행위의 성격, 횟수, 자발적 노력 등을 감안하여 시장감시위원장이 결정

○ 규율위원회에서의 의견진술절차 신설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21조 8항 : 2006/12/1 개정·시행)

— 회원제재시 회원 등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기회 등의 권리보호 절차를 규율위원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 규율위원회에서의 의견진술을 위한 사전통지기간은 10일에서 3일로 축소

— 다만, 시장감시위원회에서의 의견진술을 위한 사전통지서에 규율위원회에서의 의견진술방법을 병기할 경우에는 규율위원회 통지절차를 생략

○ 이의신청 절차의 정비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22조 : 2006/12/1 개정·시행)

— 이의신청 각하사유에 해당할 경우 무조건 각하하던 것을 부득이한 사유로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허용

- 시장감시규정으로 이관된 직권재심에 관한 조항을 삭제
- 심리자료 징구절차 개선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8조, 9조 : 2006/12/1 개정·시행)
 - 외국법인 등이 증권회사 전용계좌를 이용한 투자에 있어서 당해인의 계좌정보 및 배분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금융실명법 개정에 따라 심리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동법에서 규정하는 양식을 준용하도록 심리자료 요청 서식을 변경
- 분쟁조정대상의 조정 (분쟁조정규정 3조 : 2006/12/1 개정·시행)
 - LP제도, ELW 등 새로운 상품 및 제도 도입으로 법에서 정한 시장내 거래관련분쟁이 명백함에도 분쟁의 조정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분쟁조정대상을 법에서 정한 대상과 일치시킴
- 시장감시위원회 회부전 종결처리사유의 정비 (분쟁조정규정 9조 1항 1호 : 2006/12/1 개정·시행)
 - 수사기관이 수사중인 조정신청사건을 타 기관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새로이 종결처리사유로 함
- 분쟁조정 취하방법의 다양화 (분쟁조정규정 10조, 18조 4항 : 2006/12/1 개정·시행)
 - 서면에 의한 취하외에 구술에 의한 취하를 허용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

- 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 자격 및 운영방법 명시 (분쟁조정규정 13조 : 2006/12/1 개정·시행)
 - 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목적을 명시하고 Pool제에 따라 개별 조정부제로 운영하는 분쟁조정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자격·운영방법 등을 세칙에서 규정으로 이관하여 투명성을 제고

- 소송지원제도의 개선 (분쟁조정규정 22조 1항 : 2006/12/1 개정·시행)
 - 소송지원 대상사건을 조정결정 불수락 사건외에 조정결정전 회원의 소 제기 등이 부당한 경우 등으로 확대

- 구술에 의한 취하방법의 명시 (분쟁조정규정 시행세칙 9조 2항 : 2006/12/1 개정·시행)
 - 신청인이 구술로 취하할 경우 녹취 등을 통해 취하의사를 확인

- 소송지원 중단사유의 명시 (분쟁조정규정 시행세칙 20조 4항 : 2006/12/1 개정·시행)
 - 소송지원 결정후 신청인이 소송당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일정한 경우 시장감시위원장이 소송지원을 중단

IV. 발행기업

1. 기업경영감시

-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제한 사유확대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84조 : 2006/9/13 개정·시행)
 - 우회상장 대응방안의 하나로서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부평가기관이 합병당사회사의 감사인인 경우 평가를 제한하는 근거규정 마련
 - 영업·자산양수도, 주식교환·이전, 분할합병시에도 준용

- 사업보고서 첨부서류중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평가의견서 삭제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72조 : 2006/9/13 개정·시행)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시행으로 감사인이 제출하고 있는 감사보고상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보고서'와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평가의견서'의 내용이 유사하여 중복공시되고 있으므로 이를 사업보고서 첨부서류에서 삭제

- 증선위·금감원의 품질관리감리 직접실시 대상 명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67조 : 2006/6/29 개정·시행)
 - 상장법인 총수의 1% 이상 혹은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상장법인을 감사하는 감사인, 또는 등록공인회계사수가 30인 이상인 감사인 등 시장영향력이 큰 감사인 등에 대하여는 증선위·금감원이 품질관리감리를 직접 실시

- 품질관리감리 실시대상 선정방법을 명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26조, 49조 1항 : 2006/6/29 개정·시행)
 - 증선위·금감원 직접 실시 대상 중 당해연도 실시 대상은 감사대상 상장법인의 수, 감리실시 경과연수, 감리담당 인력 등을 감안하여 감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품질관리의 개선권고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52조 2항 : 2006/6/29 개정·시행)
 - 품질관리감리 결과 감사인의 감사업무 관련 품질관리제도 또는 그 운영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선할 것을 권고하되, 이를 대외 비공개

- 감리위원회의 전문성·중립성·업무연계성 제고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24조 3항, 25조 1항·3항 : 2006/6/29 개정·시행)
 - 감리위원회의 전문성·중립성·업무연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과 자격요건을 개선
 - 공인회계사회장 추천위원 대신 공인회계사회의 회계감사자율감리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명시
 - 상장회사협의회회장 추천위원의 경우 기업회계 또는 회계감사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전문성 요건을 도입
 - 금융감독원장 위촉위원의 경우 기업회계·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자격범위를 확대

- 회계제도심의위원회와 감리위원회 외부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단축 하되 연임 가능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심의활동을 활성화

○ 감리실시 제외사유 명확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48조 2항 : 2006/6/29 개정·시행)

- 감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를 형사소송과 증권관련집단소송으로 한정함으로써 사소한 민사소송 등에 의한 감리 회피 악용 방지
- 감사조서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감리(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 포함) 제외할 수 있도록 명시

○ 감리결과 공표제도의 합리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59조 : 2006/6/29 개정·시행)

- 위반행위 공시 관련 외감법 제16조의2 제1항의 '할 수 있다'는 문언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감리결과 일정수준 이상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만 관련 내용을 공표하도록 함

○ 사전통지 내용 및 예외사유 개선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60조 : 2006/9/13 개정·시행)

- 당사자 등에 대한 사전통지의 내용과 통지 예외사유를 행정절차법에 맞추어 상세히 규정

○ 이의신청제도 개선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62조 : 2006/9/13
개정·시행)

- 이의신청이 행정쟁송 제기기한(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처리기간을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단축
 -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되, 이 경우에는 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문서로 통지
-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재조사를 위하여 당해사건을 조사·감리하지 않은 부서에 배정

○ 직권재심제도 도입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62조의2 : 2006/9/13
개정·시행)

- 당사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원의 확정판결, 검찰의 무혐의 결정 및 증거서류의 오류·누락 또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감독당국이 직권으로 재심하여 원조치를 취소 또는 변경하는 직권재심제도를 도입

○ 감사보고서 적용기준 개선 (3조: 2006/6/23 개정, 6/26 시행)

- 지정감사제도 도입에 따른 소급감사 차단으로 그 존치 필요성이 소멸된 감사보고서의 정기주총 보고 요건 삭제

2. 지원 · 관리제도

- 주식매수선택권 취소의 근거규정 마련 (증권거래법 시행령 84조의 6 : 2006/3/30 개정 · 시행)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 · 직원이 금감위로부터 해임권고,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조치를 받은 경우에 회사가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 자기주식 처분제한기간의 적용배제사유 확대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36조의7 3의3호 : 2006/11/18 개정 · 시행)
 - 국가 ·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당해 주식으로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에 갈음하여 발행하는 주식예탁증서로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를 해외에서 발행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도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
 - 기존에는 취득한 자기주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도 자기주식의 처분으로 보았기 때문에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없었음

- 자사주 신탁보유분의 장외 처분시 신고의무 부과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69조 : 2006/9/13 개정, 9/18 시행)
 -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장외에서 처분하기로 결정한 때에도 주요경영사항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

-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처분결과보고서 제출 면제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111조 3항 : 2006/9/13 개정·시행)
 - 스톡옵션의 행사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 처분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자기주식 처분신고시부터 처분결과보고서까지 장기간(통상 2~5년)이 소요되어 교부(처분)내역을 관리하기가 번거롭고, 스톡옵션행사에 따른 자기주식처분 내용이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도 기재·공시됨

- 장 개시전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한 자기주식 처분 허용 및 처분가격 범위 확대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111조 5항 : 2006/9/13 개정, 10/30 시행)
 - 장 개시전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한 자기주식의 처분을 허용하고, 시간외대량매매에 적용되는 호가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상장법인의 가격변동 리스크 완화
 - 기존에는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한 자기주식 처분이 매매신청서 제출일 익일 장 종료후 시간외시장으로 한정되어 있어 익일 정규시장에서의 가격변동 리스크를 상장법인이 부담하였음

시간외대량매매	기 준	개 정
장 개시전 (07:30~08:30)	×	○ (전일종가±5%)
장 종료후 (15:10~18:00)	○ (당일종가~당일종가-2호가)	○ (당일종가±5%)

○ 자기주식 처분제한기간의 완화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111조 : 2006/11/30 개정·시행)

—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완비로 기존의 3일의 제한기간이 불필요하고
가격변동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도 있어 3일의 제한기간을 완화하여
자기주식 처분신고서 제출 익일부터 3월 이내에 처분이 가능하도록 함

- 기존의 자기주식 처분은 자기주식 처분신고서를 제출한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V. 기업구조조정

1. 금융기관

○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인가시 경영상태 심사요건 개선 (금융지주회사 감독 규정 10조 2항 : 2006/3/30 개정·시행)

—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건전성에 미치는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자회사 등의 경영상태 심사요건을 차등화

- 신설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력자회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경영상태(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 2등급 이상)를 심사
- 여타 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 3등급 이상 및 개별 금융업법상 자본적정성 기준 충족'으로 심사요건을 변경

< 설립인가시 경영상태 심사요건 개선 방안 >

기 준	개 정
• 모든 자회사 등의 경영 실태평가 2등급 이상	• 주력자회사는 경영실태평가 2등급 이상 • 여타 자회사 등은 경영실태평가 3등급 이상 및 자본적정성 기준 충족

○ 자회사 등 편입승인시 경영상태 심사요건 개선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10조 3항 : 2006/3/30 개정 · 시행)

—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경영상태(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 2등급 이상)를 심사하되

- 편입대상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 3등급 이상 및 개별 금융업법상 자본적정성 기준 충족’으로 심사요건을 변경

< 자회사 등 편입승인시 경영상태 심사요건 개선 방안 >

기 준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 대상회사의 경영실태평가 2등급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실태평가 2등급 이상(현행 유지) • 편입대상회사의 경영실태평가 3등급 이상 및 자본적정성기준 충족

○ 주요출자자요건 개선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별표 1 : 2006/3/30 개정 · 시행)

— 금융지주회사 설립인가시 주요출자자요건을 보험 · 증권 등 다른 금융회사와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개선

- 최근 3년간 금감위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금융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요건 신설
- 개별 및 기업집단 부채비율 산정시 비금융회사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명시

- 적기시정조치 유예규정 정비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39조 : 2006/3/30 개정·시행)
 - 근거법률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위임범위에 맞도록 개선함
 - 적기시정조치 유예요건 중에서 “기준을 충족시킬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를 삭제

-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정기준 변경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별표 1, 별표 1-2 : 2006/3/30 개정·시행)
 - 주요출자자 및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은행인 경우의 심사요건 중 하나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의 산정기준을 반기말에서 분기말로 변경

- 경영개선권고 및 경영개선계획 승인의 행사주체 변경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36조 1항, 41조 1항 2항·4항 : 2006/8/31 개정·시행)
 -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중요사항이므로 조치주체를 금융감독원장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상향 변경

- 적기시정조치의 투명성·객관성 제고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38조의2, 41조 10항 : 2006/8/31 개정·시행)
 - 적기시정조치시 금융지주회사에 조치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명문화
 - 경영평가위원회의 경영개선계획 사전심의시 금융지주회사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

○ 은행지주회사 그룹에 대한 자본적정성 규제방식의 변경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25조 1항 1호, 36조 1항 1호, 37조 1항 1호, 38조 1항 2호, 43조 2호, 46조 2항 : 2006/11/30 개정, 2007/1/1 시행)

— 은행지주회사 그룹에 대한 자본적정성 규제기준을 그룹내 연결기준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BIS기준) 규제방식으로 변경

변경전 (필요자본 대비 자기자본비율)	변경후 (BIS비율)
<p>○ Bottom-Up방식에 의한 자본적정성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회사별 수준에서의 자본적정성 관리를 우선시 - 그룹의 자본적정성은 자회사별 자본적정성기준에 따라 산출한 필요자본과 자기자본의 단순합을 비교 <p>→ 지주회사의 그룹 위험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통제·관리기능 미흡</p>	<p>○ Top-Down방식에 의한 자본적정성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을 경제적 동일체로 인식하여 그룹 전체를 우선시 - 그룹 연결대차대조표에 기초하여 통일된 자본적정성기준 적용 <p>→ 지주회사의 그룹 위험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통제·관리기능 제고</p>
<p>○ 동 비율에 대한 시장의 인식 부족 등으로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 기능 미흡</p>	<p>○ 국제적 정합성 및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 기능 제고</p>

— 규제방식 변경과 관련하여 적기시정조치 등의 기준비율을 조정

구분	비은행지주회사* (기존 유지)	은행지주회사
경영개선권고	필요자본 대비 자기자본 비율 100% 미만	연결기준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 8% 미만**
경영개선요구	필요자본 대비 자기자본 비율 75% 미만	연결기준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 6% 미만
부실금융기관 평가대상***	필요자본 대비 자기자본 비율 50% 미만	연결기준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 4% 미만
경영개선명령	필요자본 대비 자기자본 비율 25% 미만	연결기준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 2% 미만

* 은행지주회사가 아닌 금융지주회사(은행자회사가 없는 금융지주회사)

** 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시의 BIS비율과 동일하게 적용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조 3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평가

○ 자회사 행위규제의 완화

-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손자회사 포함)가 은행자회사 발행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동 사용액을 그룹소속 회사간 신용공여제한 대상에서 제외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21조 1호 : 2006/11/30 개정 · 시행)
- 자회사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하여는 자회사간 불량자산 양도를 예외적으로 허용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23조 3항 4호 : 2006/11/30 개정 · 시행)
- 외화부채의 비중이 낮은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외화유동성관련 규제를 완화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25조 1항 3호 : 2006/11/30 개정, 2007/1/1 시행)

- 총자산에 대한 외화부채의 비율이 1/100에 미달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적용을 배제

- 「회계연구원」의 명칭변경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31조 1항 : 2006/11/30 개정·시행)
 - 한국회계연구원 → 한국회계기준원

- 금융지주회사에 의견진술기회 부여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시행세칙 12조 5항 : 2006/8/31 개정·시행)
 - 경영실태평가지 금융지주회사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진술기회를 부여

VI. 기타

- 신탁회사의 재무구조개선적립금 적립의무의 면제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6조 3항 12호 : 2006/11/30 개정·시행)
 - 여타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신탁회사의 재무구조개선적립금 적립의무를 면제함
 - 기존 신탁업법상 신탁회사는 증권거래법상 「재무구조개선적립금」과 적립기준 및 용도가 유사한 「신탁사업적립금」을 신탁업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적립하였음

- 적기시정조치 관련 권리구제장치 강화 (종합금융업 감독규정 29조의2, 30조의6 4항 : 2006/8/31 개정·시행)
 - 적기시정조치시 조치권자가 당해 종금사에게 조치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명문화
 - 경영평가위원회의 경영개선계획 사전심의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

- 종합금융회사의 경영실태평가기준 중 중요사항의 상위규정 이관 (종합금융업 감독규정 29조 3항·5항·6항, 별표 4 : 2006/8/31 개정·시행)
 - 감독업무시행세칙에 규정된 경영실태평가기준 중 중요사항인 부문별 평가항목, 평가시기 및 평가기준일을 상위 감독규정으로 이관

- 세부시행사항, 평가방법 및 절차, 시장상황변동에 따른 수시변경사항 등은 동 세칙에 존치
 - 계량지표에 의한 분기별(또는 수시) 경영실태평가 근거를 감독규정에 명시
- 경영실태평가 비계량평가항목의 명확화·최소화 (종합금융업 감독규정 별표 4 : 2006/8/31 개정·시행)
- 경영실태평가 비계량항목 중 주관적 요소가 강한 “기타 경영실태 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평가항목에서 제외
- 경영실태평가기준의 객관화 (종합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36조의2, 별표 8 : 2006/8/31 개정·시행)
- 경영실태평가 평가항목 부문별 가중치를 세칙에 반영
 - 감독원장은 금융시장 상황 및 해당 종금사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동 가중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정 가능
 -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의무 부과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 선수금환급보증 관련 ‘신용공여의 범위’ 조정 (은행업 감독규정 별표 2 : 2006/11/16 개정·시행)
- 선수금환급보증중 환급의무가 발생하는 기입금선수금에 대해서만 한도관리대상 신용공여금액으로 관리하고 미입금선수금은 관리대상에서 제외함

- 주채무계열 선정기준이 되는 '신용공여의 범위' 조정 (은행업 감독규정 별표 2 : 2006/11/16 개정·시행)
 - 주채무계열의 선정기준이 되는 신용공여금액에서 위험가중치가 20% 이하인 저위험여신은 제외함

- 대출채권의 연체기준 변경 (은행업 감독규정 별표 3 : 2006/11/30 개정, 2007/1/1 시행)
 - 대출채권의 연체기준을 기존 원금기준에서 원리금기준으로 변경하고 동 연체기준에 관한 사항을 감독규정에 명시
 - 이자 또는 원금 중 하나라도 연체되는 경우 원금을 연체채권으로 처리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기준)

- 총당금 최저적립률 상향 조정 및 적립대상의 확대 (은행업 감독규정 29조 : 2006/12/28 개정, 12/31 시행)
 - 은행 보유자산의 신용위험도에 상응하는 적정 총당금을 유지토록 하는 한편, 향후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내부유보 적립을 강화하기 위해 총당금 최저적립률을 상향 조정

< 총당금 최저적립률 >

(단위 : %)

구 분	기 업		가 계		신용카드	
	기 준	개 정	기 준	개 정	기 준	개 정
정 상	0.5	0.7	0.75	1.0	1.0	1.5
요주의	2.0	7.0	8.0	10.0	12.0	15.0

* 고정이하 여신에 대한 최저적립률은 기존 유지

- 은행 미사용약정에 내재된 손실위험을 적절히 흡수할 수 있도록 신용 손실이 발생가능한 모든 미사용약정을 총당금 적립대상에 포함

< 총당금 적립대상 >

구분		기 존	개 정
미사용 약정*	가계	정상분류 미사용약정	모든(정상~추정손실) 미사용약정
	기업	정상분류 미사용약정	모든(정상~추정손실) 미사용약정
	신용카드	정상분류 미사용약정 (단, 최근 1년간 사용실적이 없는 계좌 제외)	모든(정상~추정손실) 미사용약정 (최근 1년간 사용실적이 없는 계좌 포함)

* 당좌대월,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일정한도를 정하여 은행이 고객에게 신용공여를 약속한 여신한도 중 기사용된 부분(대출잔액)을 제외한 한도 미사용분

- 금융상품 공시제도의 개선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59조 3호, 5호~8호, 63조 6호, 73조의2, 73조의3, 74조 : 2006/12/28 개정, 12/31 시행)
 - 금융상품의 공시수단에 인터넷 등 전자통신매체를 추가
 - 약관 및 상품설명서의 공시수단으로 기존의 영업점 비치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시토록 개선 (2007/4/30 시행)
 - 공시대상 금융상품의 범위에 기업대출, 파생금융상품 및 복합금융상품을 추가
 - 파생상품 및 복합금융상품의 필요공시사항에 손실위험 등을 추가

- 차주예금 편법 인출제한행위 금지의 명문화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67조 : 2006/12/28 개정, 12/31 시행)
 - 정당한 사유 없이 차주 예금을 주의 또는 사고계좌로 전산등록하여 예금 인출을 제한하는 행위는 차주 의사에 반하는 사실상 예금의 구속행위에 해당하므로 동 행위를 ‘예금의 구속행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금지

- 주주 및 임원과의 거래내역 보고대상의 축소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15조, 별책서식 16호 : 2006/12/28 개정, 12/31 시행)
 - 주주 및 임원과의 거래내역 보고대상 중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물품공급 및 용역계약’ 등을 보고대상에서 제외
 - 기존의 은행과 사외이사추천주주 및 임원과의 건물임대차 등 주요 거래내역 보고는 은행의 내부통제확립으로 불공정 소지가 희박하고 내부경영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있었음

- 자회사 경영실태평가항목의 보완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13 : 2006/12/28 개정, 12/31 시행)
 - 자회사 경영실태평가지 평가항목 중 영업수지비율은 경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률 실현 여부를 평가하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경상 영업활동 기준으로 변경
 - (총비용/총수익)×100 → (영업비용/영업수익)×100

- 재무제표 계정과목 명칭 및 구분의 변경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1
별표 3, 별표 4, 별표 7, 별표 11 : 2006/12/28 개정, 12/31 시행)
 - BIS비율산정과 관련된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과 경영지표별
비율 산정방식 등의 계정과목을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에 부합하
도록 계정과목 명칭 및 구분을 변경

< 부록 > 규정별 변경내용

I. 법령 등

1. 증권거래법 시행령

○ 주식취득의 승인대상이 되는 지배주주의 범위 및 요건 (18조 1항~3항,
별표 2 : 2006/1/27 개정, 1/30 시행)

— 주식취득의 승인대상이 되는 지배주주의 범위를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및 주요주주로 정하고, 지배주주의 요건을 증권업 허가시의 주요출자자의 재무건전성 기준 등으로 정함

- 증권업 허가시의 주요출자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가 허가시의 규제를 회피하여 우회적으로 주식취득을 통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부적격자의 증권업 진출을 방지하고,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

○ 증권회사의 지배주주에 대한 승인 절차 등 (18조 4항~8항 : 2006/1/27
개정, 1/30 시행)

— 증권회사의 주식취득으로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지배주주 승인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문서로 통보하되, 불승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도록 함

- 일정한 기한 내에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행정처리와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37조, 83조의8 : 2006/3/3 개정·시행)

— 금감위의 명령을 위반한 증권회사에 대한 벌칙 규정과 상장된 유가증권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유지하는 안정조작 등을 금지하는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하위 대통령령의 규정을 상위 법률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증권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주식매수선택권 취소의 근거규정 마련 (84조의 6 : 2006/3/30 개정·시행)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금감위로부터 해임권고,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조치를 받은 경우에 회사가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2.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 관련 규정의 정비 (14조, 36조의3 : 2006/3/30 개정·시행)

— 대통령령으로 이관되어 규정된 증권회사에 대한 금감위의 명령에 관한 세부사항 및 시장조성 기간에 관한 관련조문을 정비함

○ 증권회사 임직원의 증권저축한도 산출을 위한 월정액급여 산출근거 변경
(11조의2 2항 : 2006/11/18 개정 · 시행)

— 증권회사 임직원의 증권저축한도를 산출하기 위한 기준인 월정액급여의 산출방법을 기존의 “소득세법 시행령 13조”에서 “동령 17조 4항”에 따르는 것으로 변경함

○ 자기주식 처분제한기간의 적용배제사유 확대 (36조의7 3의3호: 2006/11/18 개정 · 시행)

— 국가·예금보험공사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당해 주식으로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에 갈음하여 발행하는 주식예탁증서로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를 해외에서 발행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도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

• 기존에는 취득한 자기주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도 자기주식의 처분으로 보았기 때문에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없었음

3.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시행령

○ 주식취득의 승인대상이 되는 지배주주의 범위 및 요건 (13조의2 1항~3항,
별표 1의2 : 2006/1/27 개정, 1/30 시행)

— 주식취득의 승인대상이 되는 지배주주의 범위를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및 주요주주로 정하고, 지배주주의 요건을 자산운
용회사의 설립허가시의 주요출자자의 재무건전성 기준 등으로 정함

- 자산운용업 허가시의 주요출자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가 허
가시의 규제를 회피하여 우회적으로 주식취득을 통하여 자산운용업
을 영위하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부적격자의 자산운용업 진출을
방지하고, 자산운용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

○ 자산운용회사의 지배주주에 대한 승인 절차 등 (13조의2 4항~7항 : 2006/1/27
개정, 1/30 시행)

— 자산운용회사의 주식취득으로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지배주주
승인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승
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
이 문서로 통보하되, 불승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도
록 함

- 일정한 기한 내에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통보하도
록 함으로써 신속한 행정처리와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

○ 자산운용회사의 간접투자재산 운용시 신용파생상품의 거래 허용

(10조 : 2006/4/27 개정 · 시행)

— 자산운용회사의 간접투자재산의 운용시에 신용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으로의 신용파생상품의 거래를 허용함

- 기존에는 자산운용회사의 간접투자재산 운용시에 신용파생상품의 거래가 금지됨에 따라 신용위험이 있는 유가증권 등의 편입이 제한되어 다양한 자산운용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었음
- 간접투자재산으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산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간접투자증권의 취득권유제도 도입 (55조 6호 : 2006/4/27 개정 · 시행)

— 보험설계사 등은 간접투자증권 판매업무 관련 교육을 받고 판매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자에게 간접투자증권의 취득을 권유할 수 있도록 함

- 기존에는 판매회사(은행 및 증권회사 등)의 임·직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간접투자증권의 판매 위탁이 금지되어 있어 투자자의 간접투자증권에의 접근과 선택이 제한되어 있었음
- 간접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자의 접근 및 선택의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간접투자산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방법의 확대 (69조·72조 및 73조
: 2006/4/27 개정·시행)

—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 투자증권의 차입을 허용하고, 정부투자기관 등이 발행한 어음 및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투자한도를 확대함

- 기존에는 투자증권의 차입 금지 등 간접투자기구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로 인하여 간접투자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음
- 투자증권의 차입을 허용함에 따라 차입매도 등을 통한 수익창출이 가능하고, 정부투자기관 발행어음 등에 대한 투자한도를 확대함에 따라 탄력적·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주식·부동산 등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의 개선
(82조 : 2006/4/27 개정·시행)

—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보유한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시가 외에 영업권의 대가를 포함한 취득원가로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의 취득 후 1년 이내에도 시장가치·자산가치가 현저하게 변동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함

- 기존에는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상장주식에 대하여 평가기준일의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함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영업권의 대가를 지불한 것이 반영되지 아니하고,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후 1년 이내에는 취득원가로만 평가하도록 함에 따라 가격이 급변동하여도 그 가치를 반영하지 못했음
- 간접투자재산의 평가방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가치가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최소출자금액, 운용대상자산, 의무투자비율 등에 관한 규제 완화 (131조의 4 및 131조의 6 : 2006/4/27 개정·시행)

—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최소출자금액을 낮추고, 부실채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며, 경영권 참여 목적 등에 있어서 의무투자비율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함

- 기존에는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최소출자금액, 운용대상 자산의 제한, 의무투자비율 등의 규제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이 활발하지 못했음
-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투자확대, 자산운용의 자율성 확대 등을 통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활성화를 도모함

○ 외국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국내대리인제도 도입 (154조 및 155조 : 2006/4/27 개정·시행)

— 외국 간접투자증권의 국내판매시 국내대리인제도를 도입하여, 국내대리인이 외국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신고·변경·판매중지신고 등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기존에는 외국 간접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대행회사를 통하여 신고서를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다수의 판매대행회사가 동일한 외국간접투자증권을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모든 판매회사가 유사한 신고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었음
- 국내대리인을 두도록 함으로써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국내판매에 대한 신고절차가 간소화되고, 국내 투자자의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4.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시행규칙

○ 자산운용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직원의 겸직 등 (10조 : 2006/5/9 개정·시행)

- 자산운용회사의 비상근 임·직원이 그 계열회사인 자산운용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자산운용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그 계열회사인 자산운용회사의 비상근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자산운용회사의 임·직원의 겸직제한을 완화함
- 국내·외 자산운용회사간의 형평성 및 자산운용회사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 투자증권의 통합주문 허용 (12조 2항 1호·1호의2·1호의3 : 2006/5/9 개정·시행)

- 자산운용회사의 계열회사 중 독립된 부서에서 매매주문업무를 수행하는 계열회사는 투자증권의 매매시 그 자산운용회사의 계열회사들의 매매주문을 통합하여 주문할 수 있도록 함
 - 기존에는 자산운용회사로부터 투자증권의 매매주문을 위탁받은 그 계열회사는 위탁하는 금융기관별로 독립하여 매매주문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매매주문의 분산으로 수수료 부담 등 비효율이 발생하였으며, 국제기준과도 맞지 아니하였음

○ 업종지수 등을 활용한 다양한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개발유도

(43조 3호·4호 : 2006/5/9 개정·시행)

—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 상위 5종목의 시가총액의 합계가 그 지수의 시가총액의 합계의 60% 이하가 되도록 하는 요건을 삭제하는 등 상장지수 간접투자기구의 요건을 조정함

- 기존에는 상장지수 간접투자기구의 지수구성 요건은 시장전체를 대표하는 지수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다양한 업종별 지수를 기초로 하는 상장지수 간접투자기구의 개발이 곤란하였음
- 투자자들의 선택의 폭이 확대되어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5. 선물거래법 시행령

○ 주식취득의 승인대상이 되는 지배주주의 범위 및 요건 (10조의3 1항~3항,

별표 2 : 2006/1/27 개정, 1/30 시행)

— 주식취득의 승인대상이 되는 지배주주의 범위를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및 주요주주로 정하고, 지배주주의 요건을 선물업 허가시의 주요출자자의 재무건전성 기준 등으로 정함

- 선물업 허가시의 주요출자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가 허가시의 규제를 회피하여 우회적으로 주식취득을 통하여 선물업을 영위하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부적격자의 선물업 진출을 방지하고, 선물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

○ 선물회사의 지배주주에 대한 승인 절차 등 (10조의3 4항~8항 : 2006/1/27 개정, 1/30 시행)

— 선물회사의 주식취득으로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지배주주 승인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문서로 통보하되, 불승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도록 함

- 일정한 기한 내에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행정처리와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

6. 운용 및 자산설계 전문인력의 시험 및 교육인정에 관한 기준

○ 전문인력의 능력검증시험의 구분 (2조 : 2006/1/3 개정·시행)

— 전문인력의 능력검증시험은 운용전문인력시험과 자산설계전문인력시험으로 구분

○ 능력검증시험의 주관기관 (4조 : 2006/1/3 개정·시행)

— 운용전문인력시험은 자산운용협회, 자산설계전문인력시험은 증권업협회가 주관

- 시험관리위원회의 구성 (5조 : 2006/1/3 개정 · 시행)
 - 시험주관기관은 시험문제의 출제, 시험합격자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시험관리위원회를 구성

- 부동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7조, 8조 : 2006/1/3 개정 · 시행)
 - 운용전문인력과 자산설계전문인력을 대상으로 부동산교육을 실시
 - 운용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은 자산운용협회 · 금융연수원 · 보험연수원에서 주관하고, 자산설계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은 증권업협회가 주관

7. 간접투자증권 판매업무담당 임·직원 교육에 관한 기준

- 교육대상 (2조 : 2006/1/3 개정 · 시행)
 - 간접투자증권의 판매회사의 판매업무담당 임·직원에 대한 교육은 판매회사 등에서 간접투자증권 판매업무를 담당하고자 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함

- 판매교육의 주관기관 (3조 : 2006/1/3 개정 · 시행)
 - 간접투자증권의 판매회사의 판매업무담당 임·직원에 대한 교육은 자산운용협회, 증권업협회, 금융연수원, 보험연수원, 판매회사가 주관

- 판매인력관리위원회의 구성 (4조 : 2006/1/3 개정 · 시행)
 - 자산운용협회는 판매교육의 실시 및 능력평가지험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판매인력관리위원회를 구성

- 보수교육 (6조 : 2006/1/3 개정 · 시행)
 - 판매교육을 이수한 자는 2년마다 1회 이상 판매교육기관이 시행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간접투자증권 판매업무를 수행하지 못함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정안)

-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확대 및 투자자보호 강화 (2006/6/30 입법예고)
 - 자본시장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적 제약을 철폐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취급과 설계를 허용하고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함
 - 증권, 선물 등 자본시장관련 금융상품을 법령에서 일일이 열거하던 그간의 규율방식을 폐지하고, 원본손실가능성(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은 모두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
 - 파생상품과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의 범위도 '계량화 가능한 모든 위험'으로 확대하여 모든 기초자산을 대상으로 파생상품과 파생결합증권이 설계될 수 있도록 함

○ 금융투자업 규율의 적용범위 (2006/6/30 입법예고)

—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이 법상 금융투자업 규율을 적용함으로써 모든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있어 투자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업은 모든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으로 하되 그 기능에 따라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의 6개로 구분함

- 은행, 보험사 등이 집합투자증권, 투자성있는 예금 또는 투자성있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파생상품을 매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으로 규율하여 투자자를 보호함

- * 다만, 이미 관련 금융법상 진입규제와 건전성 규제를 적용받는 점을 감안하여 인가는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건전성 규제는 적용하지 않음

- 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등 개별 법률상 펀드에 대해서는 공모펀드 및 일반투자자가 포함된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법에 의한 집합투자업자 규율과 펀드에 대한 규율을 적용하여 투자자를 보호함

○ 대형투자은행 출현의 제도적 기반 마련 (2006/6/30 입법예고)

— 금융투자회사가 6가지 금융투자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대형화되고 겸업화된 투자은행의 출현기반을 마련함

- 금융투자회사는 각 금융투자업별 진입요건을 갖추어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등 6개 금융투자업을 모두 겸영할 수 있도록 함

- 경영에 따른 이해상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을 파악·평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를 두도록 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고 이해상충 가능성을 해소한 후 거래하도록 함
- 이해상충 가능성이 큰 금융투자업간(예; 투자매매업과 집합투자업 등)에는 매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 일정한 임직원의 겸직 제한, 사무 공간 등의 공동이용 제한 등을 부과함

○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범위 확대 (2006/6/30 입법예고)

—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투자자의 편의를 제고

- 부수업무(금융업이 아닌 업무로서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의 범위를 사전적으로 제약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영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투자권유대행자 제도를 도입하여 투자자가 금융투자회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투자권유대행자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투자자 보호장치를 투자권유대행자에게 적용함
- 투자자가 금융투자회사의 위탁매매 계좌의 현금을 타계좌로 송금하거나 결제 등을 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와 대표금융기관(증권금융)의 업무 범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집합투자업자가 민법, 상법 등 현행법상 설립 가능한 모든 집합투자기구(Vehicle)를 활용할 수 있도록 투자조합, 투자유한회사 등을 집합투자기구에 추가함
- 집합투자업과 관련하여 펀드 종류별 투자대상자산의 제한을 폐지하고 모든 자산에 대하여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혼합자산펀드를 허용하며 사모펀드에 대하여 수익자총회 개최의무 등 규제를 완화함

○ 투자권유와 관련된 투자자 보호장치의 선진화 (2006/6/30 입법예고)

- 투자자를 위험 감수능력(전문성, 보유자산규모 등)에 따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도록 하고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투자자 보호규제를 집중 적용하고 전문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규제를 완화함
-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위험 등을 투자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는 '설명 의무제도'를 도입하고 의무 불이행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며 원본결손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추정하도록 함
-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기 전에 면담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등 특성을 파악하도록 하는 'know-your-customer 제도'를 도입함
- 투자자의 특성에 적합하게 투자권유를 하도록 하는 '적합성 원칙'을 도입하여 장외파생상품과 같이 위험이 큰 금융투자상품을 무분별하게 권유하지 못하도록 함
- 투자자로부터 요청을 받지 않고 방문·전화 등을 통해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요청받지 않은 투자권유의 금지 제도'를 도입하되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만 적용함

-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사에 반하는 재권유 금지제도’를 도입

○ 공시제도의 개선 (2006/6/30 입법예고)

- 대량보유보고제도(5% Rule)의 적용대상 범위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정부, 정부기금, 증권금융 등에 대해서도 공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시장의 정보 효율성을 높임
- ‘증권신고서’의 적용대상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집합투자증권, 은행채, 수익증권 등에 대해서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 은행채 등의 발행자 정보를 투자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기타 자본시장관련 규제의 개선 (2006/6/30 입법예고)

- 실효성이 크게 감소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등에 대한 주식 등 직접 투자 제한을 폐지하되 선진국 수준의 내부통제장치를 도입
- 상장법인에 대한 수시공시 채널을 거래소로 일원화하여 상장법인의 부담을 완화함
- 증권신고서제도의 수리제도를 폐지하여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때부터 일정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신속한 증권발행이 이루어지도록 함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규제 대상증권의 범위와 내부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의 대상증권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시장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함

- 현물과 선물간의 시세조종, 파생결합증권과 그 기초자산간의 시세조종 등 연계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함

○ 법률의 통합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 (2006/6/30 입법예고)

-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명칭을 한국거래소로 변경하고 증권예탁결제원의 명칭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변경함
- 자율규제기관(협회)의 기능별 재편을 위하여 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를 단일의 '금융투자협회'로 통합하는 방안으로 조문을 마련함
 - 협회간 자율적 합의가 이루어져 기능별 재편방안이 마련되면 이를 제정안에 반영할 계획임
- 집합투자증권 공모시 증권신고서의 제출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설명서 제공 의무를 폐지하여 투자자에 대한 투자정보 제공을 증권신고서 제출시 투자설명서(기존의 사업설명서)로 일원화함
- 현재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에만 적용되는 대주주 변경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승인제도를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자문업자에게도 적용하여 건전경영을 유도
- 이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기존의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신탁회사 등에 대하여 법률이 시행되기 6개월 전에 현재 영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일괄하여 재인가·등록을 받도록 함
- 종합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이 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종합금융회사로서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함
- 법 위반시 형벌 수준을 은행법 수준으로 강화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함

II. 금융감독위원회 규정

1.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외국법인 등의 채권등록발행 근거 마련 (41조의2 : 2006/6/15 개정 · 시행)
 - 외국정부 · 외국의 공공단체 또는 외국법인 등이 발행하는 원화표시채권 및 외화표시채권을 공사채등록법상 등록대상 채권으로 지정함

- 외국법인등의 예비상장심사결과서류 첨부 의무 명시 (40조 : 2006/9/13 개정 · 시행)
 - 내 · 외국법인 동등대우 원칙에 따라 외국법인등에 대해서도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시 예비상장심사결과서류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정보 제공을 확대
 - 국내법인은 이미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시 예비상장심사결과서류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외국법인등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45조, 49조 : 2006/9/13 개정 · 시행)
 - 외국법인등의 유가증권 발행 · 공시업무를 대리할 국내대리인의 지정을 의무화하고, 대리인의 지정 · 변경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국내투자자 보호를 강화

- 외국법인등의 주요경영사항 신고항목 축소 (49조 : 2006/9/13 개정·시행)
 - 외국법인등에 대해 국내법인과 달리 “의결권 있는 주식의 1% 이상 소유자의 변동이 있을 때” 신고하도록 하던 의무를 내·외국법인 동등대우 원칙에 따라 폐지
 - 5% 이상 보유자의 경우 1% 이상 변동은 주식의 대량보유보고(5% Rule)를 통하여 파악 가능

- 외국지주회사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신고의무 명확화 (49조, 68조 : 2006/9/13 개정·시행)
 - 외국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정의를 신설하여 외국지주회사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신고의무를 명확히 함
 - 기존에는 외국지주회사가 국내증시에 상장할 경우 자회사에 주요경영사항 발생시 신고의무 유무가 불명확하였음

-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제한 사유확대 (84조 : 2006/9/13 개정·시행)
 - 우회상장 대응방안의 하나로서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부평가기관이 합병당사회사의 감사인인 경우 평가를 제한하는 근거규정 마련
 - 영업·자산양수도, 주식교환·이전, 분할합병시에도 준용

- 자사주 신탁보유분의 장외 처분시 신고의무 부과 (69조 : 2006/9/13 개정, 9/18 시행)
 -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장외에서 처분하기로 결정한 때에도 주요경영사항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

○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처분결과보고서 제출 면제 (111조 3항 : 2006/9/13 개정 · 시행)

— 스톡옵션의 행사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 처분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자기주식 처분신고시부터 처분결과보고서까지 장기간(통상 2~5년)이 소요되어 교부(처분)내역을 관리하기가 번거롭고, 스톡옵션행사에 따른 자기주식처분 내용이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도 기재 · 공시됨

○ 장 개시전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한 자기주식 처분 허용 및 처분가격 범위 확대 (111조 5항 : 2006/9/13 개정, 10/30 시행)

— 장 개시전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한 자기주식의 처분을 허용하고, 시간외대량매매에 적용되는 호가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상장법인의 가격변동 리스크 완화

- 기존에는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한 자기주식 처분이 매매신청서 제출일 익일 장 종료후 시간외시장으로 한정되어 있어 익일 정규시장에서의 가격변동 리스크를 상장법인이 부담하였음

시간외대량매매	기 준	개 정
장 개시전 (07:30~08:30)	×	○ (전일종가±5%)
장 종료후 (15:10~18:00)	○ (당일종가~당일종가-2호가)	○ (당일종가±5%)

- 사업보고서 첨부서류중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평가의견서 삭제 (72조 : 2006/9/13 개정·시행)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시행으로 감사인이 제출하고 있는 감사보고상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보고서'와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평가의견서'의 내용이 유사하여 중복공시되고 있으므로 이를 사업보고서 첨부서류에서 삭제

- 국내법인의 해외증권 발행시 신고서 면제기준의 명확화 (12조 1항 6호 : 2006/11/30 개정·시행)
 - 국내법인이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없이 해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 및 유가증권(CB·BW·DR 등)의 전환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권이 1년내에 국내 환류될 가능성이 없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함
 - 1년간 국내거주자의 취득금지 조건을 유가증권 권면 등에 기재하고, 외국투자자가 확인·서명한 동의서를 징구함과 아울러 당해 동의서의 이행담보장치를 강구한 후 발행한 경우
 - 발행지 예탁기관에 1년간 예탁한 경우
 - 기타 1년내 국내거주자가 취득할 수 없는 구조로 발행한 경우

- 해외증권의 전환 등 금지기간 단축요건의 완화 (62조 : 2006/11/30 개정·시행)
 - 전환권 행사 등으로 발행되는 신주가 1년내에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일정요건이 불필요하여 이를 삭제함

- 일정요건 : '발행지 국가의 감독기관에 신고서 등을 제출한 경우'
또는 '거주자가 1년간 당해 증권의 취득 및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
도록 한 경우'
- 기존에는 국내법인이 해외에서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공
모발행하는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만 1월 후부터 신주전환
등을 허용

○ 신탁회사의 재무구조개선적립금 적립의무의 면제 (56조 3항 12호 : 2006/11/30
개정·시행)

— 여타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신탁회사의 재무구조개선적립금 적립의
무를 면제함

- 기존 신탁업법상 신탁회사는 증권거래법상 「재무구조개선적립금」과
적립기준 및 용도가 유사한 「신탁사업적립금」을 신탁업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적립하였음

○ 자산양수도 신고서 제출면제 대상의 확대 및 자산액 기준의 명확화

(87조, 88조 : 2006/11/30 개정·시행)

— 국채·지방채 등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유가증권을 양수도하거
나, 법원경매·정부입찰 등 가격결정의 객관성이 확보되는 경우 등을
신고서제출 면제대상에 추가하고

— 자산양수도시 '자산액'의 기준을 '실제 거래금액'으로 명시함

- 자기주식 처분제한기간의 완화 (111조 : 2006/11/30 개정·시행)
 -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완비로 기존의 3일의 제한기간이 불필요하고 가격변동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도 있어 3일의 제한기간을 완화하여 자기주식 처분신고서 제출 익일부터 3월 이내에 처분이 가능하도록 함
 - 기존의 자기주식 처분은 자기주식 처분신고서를 제출한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2. 증권업 감독규정

- 지배주주 변경 승인요건 마련 (1-16조, 별표 3의3 : 2006/2/16 개정·시행)
 -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금융기관인 경우는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상의 적기시정조치기준을 상회하여야 하며, 내국법인인 부채비율 200% 이하가 되어야 함
 - 증권회사의 지배주주 변경시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증권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시행('06.01.30)됨에 따라, 금감위에 위임된 지배주주 변경 승인 요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증권업감독규정에 반영함
 - 승인신청서의 서식, 자료의 보완 요청 및 심사유예의 근거 등 승인신청의 방법 및 절차를 마련

○ 조사분석자료 공표시 24시간 자기매매 제한규제의 보완 (4-7조 : 2006/2/16
개정·시행)

- 투자등급이나 목표가격을 종전과 동일하게 제시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는 경우나 헷지거래, 유동성 공급자로서의 거래 또는 시황급변시의 방어적 매매거래 등은 24시간 자기매매제한 대상에서 제외
- 주식관련사채, 파생증권(ELW, ELS 등), 상장 파생금융상품(주식옵션) 등은 24시간 자기매매제한 대상에 포함

○ 투자대상 외화증권의 제한 폐지 (5-73조, 5-74조, 5-81조 : 2006/3/30 개정·시행)

- 일반투자자가 증권회사에 매매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외화증권의 제한을 폐지하여 증권회사를 통하여 모든 외화증권의 취득이 가능하도록 함
 - 다만, 일반투자자의 증권회사를 통한 외화증권 매매거래의 절차와 방법*은 존치하여 외화증권거래의 원활화를 기하고 투자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함

* 외화증권의 매매주문수탁, 결제, 매매성립결과 통지, 외국보관기관 집중예탁, 권리행사 통지, 환전 및 송금 절차와 방법 등

○ 수익자예수금의 당일자 별도예치 및 구분운용 방안 마련 (3-2조, 3-3조 :
2006/6/29 개정·시행)

- 수익자예수금은 다른 고객예탁금과 달리 증권금융에 당일자로 별도예치토록 하고, 익일인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초단기물(1일물)로 전액운용할 수 있도록 함

- 일반고객예탁금과 수익자예수금을 분리 운용하게 하여 예치시기·운용대상을 차별화
- 수익자예수금에 한하여 당일예치를 의무화하여 증권회사의 이중 자금부담 문제를 해소
- 예치 수익자예수금 운용의 단기대출한도를 폐지하여 대부분의 자금을 1일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
- RP 매입대상채권의 신용등급제한을 완화하여 단기자금운용의 원활화 도모
 - * 다만, RP거래 및 콜론의 거래상대방을 적격 금융기관으로 한정하여 예치자산의 안전성을 확보

< 수익자예수금의 예치·운용 개정 >

	기 존	개 정
운용구분	일반고객예탁금과 통합운용	일반고객예탁금과 분리운용
예치시기	익일예치	당일예치
운용수단	- 콜론 등 단기대출 한도 : 30% - RP매입대상채권 : AAA 등급이상	- 한도확대(100%) - 대상채권확대(A등급이상)

○ 경영실태평가기준 항목의 상위규정 이관 (2-31조, 별표 19 : 2006/8/31 개정·시행)

—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고 있는 <별표 7>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을 증권업 감독규정 <별표 19>로 이관

— 경영실태평가 비계량항목 중 주관적 판단의 가능성이 크거나 평가의 실효성이 적은 11개 항목 폐지

- 4개 부문에 공통적인 비계량항목인 「기타 경영실태평가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자본적정성부문의 「위험액 변동요인의 적정성」, 「위험자산·부채관리의 적정성」, 「연결영업용순자본비율Ⅰ」, 「연결영업용순자본비율Ⅱ」, 「연결자기자본비율」
- 수익성부문의 「연결자기자본순이익률」, 「연결총자산영업수익률」

○ 경영개선권고 및 경영개선계획 승인 주체 변경 (2-32조, 2-36조 : 2006/8/31 개정·시행)

— 증권회사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및 동 권고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시 행사주체를 금융감독원장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변경

○ 증권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시 권리구제 강화 (2-34조의2, 2-36조 : 2006/8/31 개정·시행)

— 금감위의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시 당해 증권회사에게 조치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는 조항 신설

- 동 조치의 중대성에 비추어 객관적인 근거 및 이유의 명확한 제시를 통하여 조치의 투명성 확보

— 증권회사의 경영개선계획을 경영평가위원회가 사전 심의하는 경우 해당 증권회사를 출석시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조항 신설

-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계획 수립 및 승인을 위해 해당 증권회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함

- 증권회사간의 경쟁제한규정 폐지 (4-12조 : 2006/12/28 개정·시행)
 - 증권회사가 다른 증권회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유가증권의 매매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경쟁제한적 규정을 삭제

- 신용거래 계좌설정정보증금의 용도제한 폐지 (5-7조 : 2006/12/28 개정·시행)
 - 신용계좌설정정보증금(100만원)의 용도를 채권회수 목적으로만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계좌설정정보증금의 운용재량권을 확대

- 증권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용거래 허용 (5-8조 : 2006/12/28 개정·시행)
 - 증권회사가 자기가 발행한 주권에 대하여는 신용거래(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

- 신용거래 상환신청의 시한제한 완화 (5-14조 : 2006/12/28 개정·시행)
 - 신용거래의 현금·유가증권에 의한 상환은 고객이 상환을 신청한 당일 16시까지로 제한하는 규정을 당일까지로 완화

- 예탁증권담보대출의 담보유가증권 범위제한 완화 (5-20조 2항 : 2006/12/28 개정·시행)
 - 증권회사의 예탁증권담보대출시 담보유가증권 범위규제를 열거주의(positive system)에서 포괄주의(negative system)로 변경
 - 고객계좌에 예탁된 유가증권 중 적정 가치산정이 곤란하거나 담보권 행사를 통한 대출금 회수가 곤란한 경우 이외에는 모두 허용

- 담보권의 실행 및 담보사정 방법의 추가 (5-21조 : 2006/12/28 개정 · 시행)
 - 예탁증권담보대출의 담보권의 실행 및 담보사정 방법을 확대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증권업협회에서 정하도록 위탁

- 증권회사의 단주매매취급 의무규정 완화 (5-46조 : 2006/12/28 개정 · 시행)
 - 고객이 의도적으로 분할하여 증권회사에 단주매수를 요구하거나, 증권회사가 소유하지 않은 종목을 단주매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

- 증권회사의 계관이관사유 추가 (5-59조 2항 3호 : 2006/12/28 개정 · 시행)
 - 증권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저축자가 소속 증권회사를 통하여 증권저축재산 이관을 요청하는 경우를 계관이유사유에 포함
 - 증권회사 임직원이 다른 증권회사에 개설한 증권저축계좌를 이관하여 소속 증권회사에서만 증권거래를 하도록 하기 위함

3.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 적격기관투자자의 범위 확대 (4-1조 : 2006/2/16 개정 · 시행)
 - 국민연금관리공단, 자산운용을 주업무로 하는 외국 국가기관(예 : 싱가포르 투자청) 등을 적격기관투자자에 추가

- 적격기관투자자와 일반투자자를 구분하여 고객을 위한 보호의무를 차등 적용하고 있으나, 일부 자산운용 전문기관이 규정상의 적격기관투자자로 지정되지 않아 증권회사의 업무상 부담이 발생하고 당해 기관도 선물거래증거금 사후납부제도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불편 초래

○ 반기 동안 거래 없는 계좌의 잔고통보 면제 기준금액 상향 조정 (4-5조 : 2006/2/16 개정·시행)

- 기존의 면제기준 금액이 너무 낮아 거래현실을 감안하지 못하고 증권회사에는 업무부담 등의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잔고통보 면제 기준금액을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되, 연중 1회는 종전과 같이 10만원 초과 계좌에 대해서 잔고통보토록 함

- 종래에는 규정 4-19조 4호에서 반기동안 거래가 없는 계좌의 잔고통보 면제기준 금액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세칙에서 10만원으로 규정

○ 신탁업 경영에 따른 재무제표 등 정비 (별표 12, 별지 1호 : 2006/2/16 개정·시행)

- 재무제표 및 업무보고서에 신탁업과 관련된 계정과목 등을 추가

○ 평가부문별 가중치의 명시 (2-14조, 별표 7 : 2006/8/31 개정·시행)

- 기존 금융감독원장이 내부기준으로 정하고 있던 평가부문별 가중치를 세칙<별표 7>에 명시하여 투명성을 제고

○ 경영실태평가의 내용설명 및 의견진술기회 부여 (2-14조 : 2006/8/31
개정·시행)

— 경영실태 종합평가지 그 내용을 증권회사에 충분히 설명하고 증권회
사의 의견을 청취하여 평가결과에 반영하는 조항을 신설

4.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감독규정

○ 지배주주 변경승인 요건 등 마련 (5조의2, 별지 6-2호·8호·8-2호 : 2006/2/16
개정·시행)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에서 금융감독위원회에 위임한 지
배주주의 세부요건을 자산운용회사 신규허가시의 주요출자자 요건을
감안하여 마련

- 지배주주의 재무건전성 요건은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상 적기시정조치기준을 상회토록 하고, 적기시
정조치기준이 없는 금융기관 및 내국법인의 경우 부채비율 200%
이하로 정함

— 지배주주 승인신청서의 서식, 자료의 보완 요청 및 심사유예의 근거
등 승인신청의 방법 및 절차를 마련

○ 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의 등록요건 정비 (44조 : 2006/5/18 개정·시행)

— 신탁업법 개정으로 증권회사·보험회사가 신탁업 겸영이 가능함에 따라
증권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150%)·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100%)을
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 등록을 위한 재무건전성 기준으로 함

- 간접투자관련 광고의 절차 (52조의3 : 2006/5/18 개정·시행)
 -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가 간접투자과 관련된 광고를 하는 경우 당해 회사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자산운용협회에 위임함

- 경영개선권고 등 적기시정조치 관련 제도 개선 (33조의2, 35조 : 2006/8/31 개정·시행)
 - 경영개선권고 등 적기시정조치시 당사자에게 조치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명문화
 - 경영평가위원회의 경영개선계획 사전심의회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
 - 경영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받은 자산운용회사는 동 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2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동 계획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함

- 경영실태평가기준 및 내용의 객관화·명확화 (25조, 별지 9-2호 : 2006/8/31 개정·시행)
 - 경영실태평가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수시 경영실태평가의 근거를 마련
 - 세칙 별표에 규정된 계량평가항목 및 비계량평가항목을 규정으로 이관

○ 적기시정조치 관련 비계량 평가항목의 객관화·최소화 (별지 9-2호 :

2006/8/31 개정·시행)

- 비계량 평가항목중 주관적 판단 가능성이 큰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항목을 삭제

○ 국내운용사가 설립한 해외운용사의 외국간접투자증권 국내 판매 허용

(별지 20호 1호 : 2006/12/28 개정, 2007/2/13 시행)

- 국내 자산운용사가 50%이상 출자한 외국자산운용회사가 설정·운영하는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국내 판매를 허용

- 다만, 총 발행금액의 50% 이상을 해외에서 판매하도록 제한

- * 기존에는 국내자산운용사가 50%이상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이 현지에서 설정한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국내 판매를 금지하여,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을 제약하고 역차별 요인으로 작용했음

○ 국내 판매가 가능한 외국간접투자증권 범위 확대 (별지 20호 1호·3호·7 :

2006/12/28 개정, 2007/2/13 시행)

- 부동산·상품·간접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국내 판매를 허용하되, 분산투자 규제 등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

- 동일 부동산·상품·간접투자증권에 대해 간접투자재산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지 않을 것

- * 다만, 간접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이 되는 간접투자 기구는 간접투자재산의 10%를 초과하여 다른 간접투자기구가 발행한 간접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없어야 함

* 유가증권 이외의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간접투자기구가 발행한 간접투자증권에 대해서는 각 간접투자재산의 30%를 초과하여 투자하지 않을 것

- 최소 분기 단위로 환매가 이루어질 것

○ 자산운용 제한규정의 개선 (별지 20호 1호·3호 : 2006/12/28 개정, 2007/2/13 시행)

— 동일인과의 총 거래한도를 간접투자재산의 35%로 제한

- 단, 투자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포함하는 경우 동 한도를 20%로 축소

—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허용하되,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

- 헤지 이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 관련 투자위험을 투자설명서에 명시
-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순자산가치 이내로 제한
-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동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위험평가액을 간접투자재산의 10% 이내로 제한

— 간접투자재산으로 제3자를 위한 보증행위의 금지

○ 외국간접투자기구의 법률고문 선임의무 폐지 (별지 20호 9호 : 2006/12/28 개정, 2007/2/13 시행)

— 외국간접투자기구 설립시 신탁약관 등의 법규위반 여부를 검토할 독립적인 법률고문 선임의무를 폐지

○ 옵션거래의 위험평가액(risk exposure) 산정기준 보완 (74조 1항 2호 : 2006/12/28 개정, 2007/3/28 시행)

— 풋옵션 매도는 '옵션행사가격'을, 콜옵션 매도는 '옵션행사가격과 기초자산가격 중 큰 가격'을 기준으로 위험평가액을 산정

- 기존에는 파생상품거래의 위험평가액을 일률적으로 '시장가격'으로 산정함에 따라 옵션거래의 위험평가액이 과대 또는 과소평가되는 문제가 발생했었음

< 옵션매도의 위험평가액 산정기준 비교 >

	손실 가능범위*	위험평가액	
		기존	개정
풋옵션 매도	0~행사가격	기초자산 가격	행사가격
콜옵션 매도	0~무한대		Max[행사가격, 기초자산 가격]

* 옵션 프리미엄을 제외한 손익구조(payoff)

○ 위험평가액 산정시 상계(netting)의 허용 (74조 4항 : 2006/12/28 개정, 2007/3/28 시행)

— 위험평가액 산정시 기초자산, 만기 등이 동일하고 가격변화 방향만 반대인 파생상품 거래간 상계(netting)를 허용

- 단, 장외파생상품의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이 다르므로 거래상대방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 기존에는 펀드가 보유하는 기초자산과 가격변화가 반대인 파생상품거래만을 위험회피거래로 인정(위험평가액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파생상품 거래간의 상계를 불인정

5.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 경영실태평가기준 및 내용의 객관화·명확화 (6조, 별지 6호 : 2006/8/31 개정·시행)
 - 종래 내부기준으로 운영중이던 평가부문별 가중치를 세칙에 명시하여 투명성을 제고
 - 경영실태평가지 금융회사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도록 명시
 - 다만, 분기별로 계량지표만을 대상으로 서면평가하는 경우(간이계량 평가)에는 실익이 없으므로 예외

6. 선물업 감독규정

- 지배주주 변경승인 요건 등 마련 (2조의16, 별표 1의2 : 2006/2/16 개정·시행)
 -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함에 있어, 선물회사 설립시의 주요출자자 요건을 준용하여 지배주주 변경승인 요건을 마련
 - 금융기관인 지배주주의 재무건전성은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토록 하고 그 기준이 없거나 적용이 부적합한 지배주주의 재무건전성 요건은 부채비율 200% 이하로 정함
 - 승인신청서의 서식, 자료의 보완 요청 및 심사유예의 근거 등 승인신청의 방법 및 절차를 마련

- 결산지침 관련조항의 삭제 (9조 : 2006/12/28 개정·시행)
 - 금융감독원장의 결산회계처리에 관한 지침제정권 및 명령권을 폐지
 -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계정과목별 처리기준을 제정하고 있고, 계정과목의 신설·개정을 승인하고 있으므로 유사규제를 폐지

- 경영개선권고 및 경영개선계획 승인 주체의 변경 (28조, 32조 : 2006/12/28 개정·시행)
 - 선물업자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및 동 권고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주체를 금융감독원장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변경

- 선물업자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시 권리구제 강화 (30조의2, 32조 : 2006/12/28 개정·시행)
 - 금감위의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시 당해 선물업자에게 조치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는 조항을 신설
 - 조치의 중대성에 비추어 객관적인 근거 및 이유의 명확한 제시를 통하여 조치의 투명성을 확보
 - 선물업자의 경영개선계획을 경영평가위원회가 사전 심의하는 경우 당해 선물업자를 출석시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
 -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계획의 수립 및 승인을 위하여 당해 선물업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 후순위차입금 최저만기요건의 연장 (20조 1항 : 2006/12/28 개정·시행)
 -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도록 한 후순위차입금의 취지에 맞도록 최저만기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원금상환일까지의 잔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영업용순자본에 가산하는 후순위차입금을 분기별로 25%씩 차감

- 후순위차입금 최초 차입 및 계약내용 사후변경에 대한 규제완화 (20조 2항 : 2006/12/28 개정·시행)
 - 후순위차입금의 최초 차입 및 계약내용 사후변경을 승인사항에서 사전 신고사항으로 전환

- 후순위차입금 조기상환요건의 명시 (20조 4항~6항 : 2006/12/28 개정·시행)
 - 후순위차입금 상환과정의 투명성제고를 위하여 선물업자의 재무건전성 정도에 따른 후순위차입금 조기상환요건을 명시
 - 상환후 영업용순자본비율이 200% 이상인 경우 : 상환재원이나 금리요건 등에 관계없이 조기상환을 허용
 - 상환후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 이상 200% 미만인 경우 : 일정요건 충족시 조기상환 허용
 - 상환후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 미만인 경우 : 조기상환 불허

7. 종합금융업 감독규정

○ 적기시정조치 관련 권리구제장치 강화 (29조의2, 30조의6 4항 : 2006/8/31
개정·시행)

- 적기시정조치시 조치권자가 당해 종금사에게 조치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명문화
- 경영평가위원회의 경영개선계획 사전심의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

○ 경영실태평가기준 중 중요사항의 상위규정 이관 (29조 3항·5항·6항,
별표 4 : 2006/8/31 개정·시행)

- 감독업무시행세칙에 규정된 경영실태평가기준 중 중요사항인 부문별 평가항목, 평가시기 및 평가기준일을 상위 감독규정으로 이관
 - 세부시행사항, 평가방법 및 절차, 시장상황변동에 따른 수시변경사항 등은 동 세칙에 존치
- 계량지표에 의한 분기별(또는 수시) 경영실태평가 근거를 감독규정에 명시

○ 경영실태평가 비계량평가항목의 명확화·최소화 (별표 4 : 2006/8/31
개정·시행)

- 경영실태평가 비계량항목 중 주관적 요소가 강한 “기타 경영실태 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평가항목에서 제외

8. 종합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 경영실태평가기준의 객관화 (36조의2, 별표 8 : 2006/8/31 개정·시행)
 - 경영실태평가 평가항목 부문별 가중치를 세칙에 반영
 - 감독원장은 금융시장 상황 및 해당 종금사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동 가중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정 가능
 -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의무 부과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9. 은행업 감독규정

- 선수금환급보증 관련 '신용공여의 범위' 조정 (별표 2 : 2006/11/16 개정·시행)
 - 선수금환급보증중 환급의무가 발생하는 기입금선수금에 대해서만 한도관리대상 신용공여금액으로 관리하고 미입금선수금은 관리대상에서 제외함
- 주채무계열 선정기준이 되는 '신용공여의 범위' 조정 (별표 2 : 2006/11/16 개정·시행)
 - 주채무계열의 선정기준이 되는 신용공여금액에서 위험가중치가 20% 이하인 저위험여신은 제외함

- 대출채권의 연체기준 변경 (별표 3 : 2006/11/30 개정, 2007/1/1 시행)
 - 대출채권의 연체기준을 기존 원금기준에서 원리금기준으로 변경하고 동 연체기준에 관한 사항을 감독규정에 명시
 - 이자 또는 원금 중 하나라도 연체되는 경우 원금을 연체채권으로 처리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기준)

- 충당금 최저적립률 상향 조정 및 적립대상의 확대 (29조 : 2006/12/28 개정, 12/31 시행)

- 은행 보유자산의 신용위험도에 상응하는 적정 충당금을 유지토록 하는 한편, 향후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내부유보 적립을 강화하기 위해 충당금 최저적립률을 상향 조정

< 충당금 최저적립률 >

(단위 : %)

구 분	기 업		가 계		신용카드	
	기 존	개 정	기 존	개 정	기 존	개 정
정 상	0.5	0.7	0.75	1.0	1.0	1.5
요주의	2.0	7.0	8.0	10.0	12.0	15.0

* 고정이하 여신에 대한 최저적립률은 기존 유지

- 은행 미사용약정에 내재된 손실위험을 적절히 흡수할 수 있도록 신용손실이 발생가능한 모든 미사용약정을 충당금 적립대상에 포함

< 충당금 적립대상 >

구분		기 존	개 정
미사용 약정*	가계	정상분류 미사용약정	모든(정상~추정손실) 미사용약정
	기업	정상분류 미사용약정	모든(정상~추정손실) 미사용약정
	신용카드	정상분류 미사용약정 (단, 최근 1년간 사용실적이 없는 계좌 제외)	모든(정상~추정손실) 미사용약정 (최근 1년간 사용실적이 없는 계좌 포함)

* 당좌대월,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일정한도를 정하여 은행이 고객에게 신용공여를 약속한 여신한도 중 기사용된 부분(대출잔액)을 제외한 한도 미사용분

10.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 금융상품 공시제도의 개선 (59조 3호, 5호~8호, 63조 6호, 73조의2, 73조의3, 74조 : 2006/12/28 개정, 12/31 시행)
 - 금융상품의 공시수단에 인터넷 등 전자통신매체를 추가
 - 약관 및 상품설명서의 공시수단으로 기존의 영업점 비치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시토록 개선 (2007/4/30 시행)
 - 공시대상 금융상품의 범위에 기업대출, 파생금융상품 및 복합금융상품을 추가
 - 파생상품 및 복합금융상품의 필요공시사항에 손실위험 등을 추가

○ 차주예금 편법 인출제한행위 금지의 명문화 (67조 : 2006/12/28 개정, 12/31 시행)

— 정당한 사유 없이 차주 예금을 주의 또는 사고계좌로 전산등록하여 예금 인출을 제한하는 행위는 차주 의사에 반하는 사실상 예금의 구속행위에 해당하므로 동 행위를 '예금의 구속행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금지

○ 주주 및 임원과의 거래내역 보고대상의 축소 (15조, 별책서식 16호 : 2006/12/28 개정, 12/31 시행)

— 주주 및 임원과의 거래내역 보고대상 중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물품공급 및 용역계약' 등을 보고대상에서 제외

- 기존의 은행과 사외이사추천주주 및 임원과의 건물임대차 등 주요 거래내역 보고는 은행의 내부통제확립으로 불공정 소지가 희박하고 내부경영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있었음

○ 자회사 경영실태평가항목의 보완 (별표 13 : 2006/12/28 개정, 12/31 시행)

— 자회사 경영실태평가지 평가항목 중 영업수지비율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률 실현 여부를 평가하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정상 영업활동 기준으로 변경

- (총비용/총수익)×100 → (영업비용/영업수익)×100

- 재무제표 계정과목 명칭 및 구분의 변경 (별표 1, 별표 3, 별표 4, 별표 7, 별표 11 : 2006/12/28 개정, 12/31 시행)
 - BIS비율산정과 관련된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과 경영지표별 비율 산정방식 등의 계정과목을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에 부합하도록 계정과목 명칭 및 구분을 변경

11.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 설립인가시 경영상태 심사요건 개선 (10조 2항 : 2006/3/30 개정 · 시행)
 -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건전성에 미치는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자회사 등의 경영상태 심사요건을 차등화
 - 신설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력자회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경영상태(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 2등급 이상)를 심사
 - 여타 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 3등급 이상 및 개별 금융업법상 자본적정성 기준 충족’으로 심사요건을 변경

< 설립인가시 경영상태 심사요건 개선 방안 >

기 준	개 정
• 모든 자회사 등의 경영 실태평가 2등급 이상	• 주력자회사는 경영실태평가 2등급 이상 • 여타 자회사 등은 경영실태평가 3등급 이상 및 자본적정성 기준 충족

○ 자회사 등 편입승인시 경영상태 심사요건 개선 (10조 3항 : 2006/3/30 개정·시행)

—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경영상태(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 2등급 이상)를 심사하되

- 편입대상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 3등급 이상 및 개별 금융업법상 자본적정성 기준 충족’으로 심사요건을 변경

< 자회사 등 편입승인시 경영상태 심사요건 개선 방안 >

기 준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 대상회사의 경영실태평가 2등급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실태평가 2등급 이상(현행 유지) • 편입대상회사의 경영실태평가 3등급 이상 및 자본적정성기준 충족

○ 주요출자자요건 개선 (별표 1 : 2006/3/30 개정·시행)

— 금융지주회사 설립인가시 주요출자자요건을 보험·증권 등 다른 금융회사와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개선

- 최근 3년간 금감위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금융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요건 신설
- 개별 및 기업집단 부채비율 산정시 비금융회사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명시

- 적기시정조치 유예규정 정비 (39조 : 2006/3/30 개정·시행)
 - 근거법률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위임범위에 맞도록 개선함
 - 적기시정조치 유예요건 중에서 “기준을 충족시킬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를 삭제

-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정기준 변경 (별표 1, 별표 1-2 : 2006/3/30 개정·시행)
 - 주요출자자 및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은행인 경우의 심사요건 중 하나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의 산정기준을 반기말에서 분기말로 변경

- 경영개선권고 및 경영개선계획 승인의 행사주체 변경 (36조 1항, 41조 1항 2항·4항 : 2006/8/31 개정·시행)
 -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중요사항이므로 조치주체를 금융감독원장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상향 변경

- 적기시정조치의 투명성·객관성 제고 (38조의2, 41조 10항 : 2006/8/31 개정·시행)
 - 적기시정조치시 금융지주회사에 조치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명문화
 - 경영평가위원회의 경영개선계획 사전심의시 금융지주회사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

○ 은행지주회사 그룹에 대한 자본적정성 규제방식의 변경 (25조 1항 1호, 36조 1항 1호, 37조 1항 1호, 38조 1항 2호, 43조 2호, 46조 2항 : 2006/11/30 개정, 2007/1/1 시행)

— 은행지주회사 그룹에 대한 자본적정성 규제기준을 그룹내 연결기준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BIS기준) 규제방식으로 변경

변경전 (필요자본 대비 자기자본비율)	변경후 (BIS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ottom-Up방식에 의한 자본적정성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회사별 수준에서의 자본적정성 관리를 우선시 - 그룹의 자본적정성은 자회사별 자본적정성기준에 따라 산출한 필요자본과 자기자본의 단순합을 비교 → 지주회사의 그룹 위험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통제·관리기능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p-Down방식에 의한 자본적정성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을 경제적 동일체로 인식하여 그룹 전체를 우선시 - 그룹 연결대차대조표에 기초하여 통일된 자본적정성기준 적용 → 지주회사의 그룹 위험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통제·관리기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비율에 대한 시장의 인식 부족 등으로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 기능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 정합성 및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 기능 제고

— 규제방식 변경과 관련하여 적기시정조치 등의 기준비율을 조정

구분	비은행지주회사* (기존 유지)	은행지주회사
경영개선권고	필요자본 대비 자기자본 비율 100% 미만	연결기준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 8% 미만**
경영개선요구	필요자본 대비 자기자본 비율 75% 미만	연결기준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 6% 미만
부실금융기관 평가대상***	필요자본 대비 자기자본 비율 50% 미만	연결기준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 4% 미만
경영개선명령	필요자본 대비 자기자본 비율 25% 미만	연결기준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 2% 미만

* 은행지주회사가 아닌 금융지주회사(은행자회사가 없는 금융지주회사)

** 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시의 BIS비율과 동일하게 적용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조 3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평가

○ 자회사 행위규제의 완화

-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손자회사 포함)가 은행자회사 발행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동 사용액을 그룹소속 회사간 신용공여제한 대상에서 제외 (21조 1호 : 2006/11/30 개정·시행)
- 자회사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하여는 자회사간 불량자산 양도를 예외적으로 허용 (23조 3항 4호 : 2006/11/30 개정·시행)
- 외화부채의 비중이 낮은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외화유동성관련 규제를 완화 (25조 1항 3호 : 2006/11/30 개정, 2007/1/1 시행)
 - 총자산에 대한 외화부채의 비율이 1/100에 미달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적용을 배제

○ 「회계연구원」의 명칭변경 (31조 1항 : 2006/11/30 개정 · 시행)

— 한국회계연구원 → 한국회계기준원

12.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시행세칙

○ 금융지주회사에 의견진술기회 부여 (12조 5항 : 2006/8/31 개정 · 시행)

— 경영실태평가지 금융지주회사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진술기회를 부여

13.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 증선위 · 금감원의 품질관리감리 직접실시 대상 명시 (67조 : 2006/6/29 개정 · 시행)

— 상장법인 총수의 1% 이상 혹은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상장법인을 감사하는 감사인, 또는 등록공인회계사수가 30인 이상인 감사인 등 시장영향력이 큰 감사인 등에 대하여는 증선위 · 금감원이 품질관리감리를 직접 실시

- 품질관리감리 실시대상 선정방법을 명시 (26조, 49조 1항 : 2006/6/29 개정·시행)
 - 증선위·금감원 직접 실시 대상 중 당해연도 실시 대상은 감사대상 상장법인의 수, 감리실시 경과연수, 감리담당 인력 등을 감안하여 감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품질관리의 개선권고 (52조 2항 : 2006/6/29 개정·시행)
 - 품질관리감리 결과 감사인의 감사업무 관련 품질관리제도 또는 그 운영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선할 것을 권고하되, 이를 대외 비공개

- 감리위원회의 전문성·중립성·업무연계성 제고 (24조 3항, 25조 1항·3항 : 2006/6/29 개정·시행)
 - 감리위원회의 전문성·중립성·업무연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과 자격요건을 개선
 - 공인회계사회장 추천위원 대신 공인회계사회의 회계감사자율감리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명시
 - 상장회사협의회장 추천위원의 경우 기업회계 또는 회계감사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전문성 요건을 도입
 - 금융감독원장 위촉위원의 경우 기업회계·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자격범위를 확대
 - 회계제도심의위원회와 감리위원회 외부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되 연임 가능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심의활동을 활성화

- 감리실시 제외사유 명확화 (48조 2항 : 2006/6/29 개정 · 시행)
 - 감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를 형사소송과 증권관련집단소송으로 한정함으로써 사소한 민사소송 등에 의한 감리 회피 악용 방지
 - 감사조서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감리(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 포함) 제외할 수 있도록 명시

- 감리결과 공표제도의 합리화 (59조 : 2006/6/29 개정 · 시행)
 - 위반행위 공시 관련 외감법 제16조의2 제1항의 ‘할 수 있다’는 문언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감리결과 일정수준 이상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만 관련 내용을 공표하도록 함

- 사전통지 내용 및 예외사유 개선 (60조 : 2006/9/13 개정 · 시행)
 - 당사자 등에 대한 사전통지의 내용과 통지 예외사유를 행정절차법에 맞추어 상세히 규정

- 이의신청제도 개선 (62조 : 2006/9/13 개정 · 시행)
 - 이의신청이 행정쟁송 제기기한(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처리기간을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단축
 -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되, 이 경우에는 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문서로 통지
 -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재조사를 위하여 당해사건을 조사·감리하지 않은 부서에 배정

- 직권재심제도 도입 (62조의2 : 2006/9/13 개정 · 시행)
 - 당사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원의 확정판결, 검찰의 무혐의 결정 및 증거서류의 오류·누락 또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감독당국이 직권으로 재심하여 원조치를 취소 또는 변경하는 직권재심제도를 도입

14. 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

-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부과 기준의 명확화 (별표 3호 : 2006/3/30 개정 · 시행)
 - 동종의 원인사실로 인한 행위가 2개 이상의 공시위반에 해당된 경우 하나의 위반행위로 간주하는 과징금부과 기준상 통칙을 명료화
 - 수시공시 위반사항이 동시에 “정기보고서 등의 재무제표 본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종의 위반행위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의 위반행위로 간주함

- 정기보고서 공시위반에 대한 법정부과한도액의 예외적용사항 명시 (별표 3호 : 2006/3/30 개정 · 시행)
 - 동종의 원인사실로 인한 행위가 수시공시를 위반하고, 동 사항이 “정기보고서 등의 공시사항 기재위반 및 주식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기준금액에 100분의 10이 아닌 100분의 3을 곱함

- 사전통지 내용 및 예외사유 개선 (57조, 76조 : 2006/9/13 개정·시행)
 - 당사자 등에 대한 사전통지의 내용과 통지 예외사유를 행정절차법에 맞추어 상세히 규정하고
 - 사전통지 업무를 금감원장이 할 수 있도록 위탁근거를 신설

- 조치기준의 투명화 (별표 4호 : 2006/9/13 개정·시행)
 -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시 적용하는 내부운영기준(양정기준)을 가능한 한 규정에 반영

- 의견제출 절차 개선 (58조 : 2006/9/13 개정·시행)
 - 의견제출 방법을 행정절차법에 맞추어 서면·구술 외에 정보통신망도 추가하고
 - 의견청취 예외사유를 행정절차법에 맞추어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로 규정

- 이의신청제도 개선 (60조 : 2006/9/13 개정·시행)
 - 이의신청이 행정쟁송 제기기한(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처리기간을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단축
 -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되, 이 경우에는 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문서로 통지
 -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재조사를 위하여 당해사건을 조사하지 않은 부서에 배정

- 직권재심제도 개선 (60조의2 : 2006/9/13 개정·시행)
 - 감독당국의 직권에 의한 재심사유를 기존의 증거서류의 오류·누락 외에 법원의 확정판결, 검찰의 무혐의결정, 새로운 증거의 발견을 추가하여 권리구제를 강화

-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 개선 (별표 4호 : 2006/9/13 개정·시행)
 - 공시위반이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된 경우에는 회계·공시분야와 같이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
 - 다만, 부도발생 등의 사유로 과징금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유가증권발행 제한 등을 조치
 - 공시위반의 실질적 행위자(대표이사 등)가 불공정거래 등 다른 위법행위로 형사조치되는 경우, 공시위반 내용도 함께 통보

-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조체제 강화 (42조, 62조, 64조, 67조 : 2006/9/13 개정·시행)
 - 「증선·선물조사심의위원회」 안전심사의 전문성 제고와 조사·심리기관간 업무협조 강화를 위하여 거래소 심리담당임원을 배석토록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발언할 수 있도록 개선
 -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위원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거래소 통합에 맞추어 위원구성을 정비
 - 금감위 조사기획과장 →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
 - 감독원 조사담당부서장 → 감독원 시장담당부원장보

- 증권거래소 심리담당부이사장보, 증권업협회 심리담당상무이사, 선물거래소 심리담당상무이사 →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 또한, 협의회 개최일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유기적 협조를 위하여 산하에 실무협의회를 운영
 - 매 2주 → 분기 1회

15.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영업 일부·전부 정지 및 폐쇄조치 사유의 구체화 (17조 : 2006/8/31 개정·시행)

- 금융업법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도록 영업의 전부정지 조치 사유를 일부정지 조치 사유와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
 - 영업의 전부정지 조치사유를 인허가·등록 취소 사유와 함께 규정
- 인허가·등록 취소, 영업의 전부·일부정지 조치사유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
 - 각 금융업법에서 인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삭제하고 열거된 사항은 반영
 - * 삭제사항 : 금융관련법규의 반복 위반, 금융업계의 신용질서 문란
 - * 추가사항 : 인허가 조건 위반, 시정명령 불이행

- 금감위 또는 금감원장에 대한 재심청구제도 개선 (37조 : 2006/8/31 개정 · 시행)
 - 재심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세칙에서 규정으로 이관하고, ‘재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용어 변경
 - 감독당국의 조치의뢰에 의거, 당해 금융회사로부터 특정조치가 예정된 직원에 대해 해당 기관장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

- 직권재심제도 개선 (37조 : 2006/8/31 개정 · 시행)
 - 직권재심 대상 및 기간에 관한 사항을 세칙에서 규정으로 이관
 - 직권재심 대상에 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등을 추가
 - 직권재심 절차 착수시 제재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진술기회를 부여
 - ‘제재일로부터 1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직권재심 기한을 삭제

16.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조치의뢰제도의 확대 운영 (45조 : 2006/8/31 개정 · 시행)
 - 기존의 은행·증권·보험사 외에 종금사, 신용카드사 및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조치의뢰제도 적용
 - 유가증권 일임매매, 경미한 보험모집질서 위반 등 일부 직접조치 요구대상을 조치의뢰대상으로 변경

- 임·직원이 함께 관련된 위법·부당행위시 주행위자가 직원이 아닌 경우에는 조치의뢰

17. 증권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6조 : 2006/7/25 개정·시행)

- 위반행위 혐의자를 오인하여 주변인물 등을 잘못 적시하더라도 신고 내용에 따라 위반행위자가 적발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
- 조사 결과, 신고자가 자신이 제보한 당해 불공정거래행위로 형사조치(고발·수사기관 통보)를 받는 경우 이외는 포상금을 지급

○ 포상금 지급금액 대폭 상향 조정 등 (별표 : 2006/7/25 개정·시행)

- 사건의 중요도 등급별 기준금액(지급한도)을 상향 조정하고, 유형별 구분을 없애으로써 등급분류를 단순화
 - 300만~3천만원(5~2등급 기준) → 500만~4천만원(")
-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요도 평가요소로 부적합한 과징금 대신에 위법 및 죄질의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중대 위반행위의 수)를 도입하는 등 등급평가방식을 개선

18. 증권범죄조사 사무처리 규정

- 증권범죄조사의 일반조사로의 전환 (18조의2 : 2006/9/11 개정·시행)
 - 증선위위원장은 압수·수색으로 증빙물건의 확보 등 증권범죄조사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일반조사로 전환할 수 있으며
 - 일반조사로 전환된 사건은 감독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원에 이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인력 등의 협조요청 (9조의2 : 2006/9/11 개정·시행)
 - 증선위위원장은 증권범죄조사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독원장 또는 거래소 이사장에게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19. 금융기관 분담금징수 등에 관한 규정

- 감독분담금의 분담요율 결정 (2006/6/2 개정·시행)
 - 은행·비은행권역은 0.783805/1만, 보험권역은 2.744649/1만, 증권·기타권역은 9.971845/1만으로 결정
 - 산정방식 : 현행 방식 적용 (2002년 이후 동일)
 - 총부채(50%), 투입인력(40%), 총자산(5%), 영업수익(5%)

< 2006년도 금융권역별 분담요율 >

구 분	분담요율	법시행령상 분담요율 한도
은행 · 비은행	0.783805/10,000	3/10,000
보 험	2.744649/10,000	15/10,000
증권 · 기타	9.971845/10,000	30/10,000

○ 감독분담금 부과면제 대상기관 조정 (2006/6/2 개정 · 시행)

— 면제 대상기관 추가 : 한국수출보험공사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업 허가 취득(2004.7.23)에 따라 감독분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되었으나, 동사의 자체 업무 대비 신용정보업의 비중이 낮은 점 등을 감안하여 감독분담금 부과를 면제

— 면제 대상기관 삭제 : 기술신용보증기금

- 신용정보업 허가 반납(2005.3.29)으로 검사대상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른 조문 정리

III. 증권선물거래소 규정

1.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 프로그램매매제도 비차익거래 대상종목의 확대 (16조 : 2006/7/7 개정, 8/28 시행)
 - 비차익거래 대상종목을 KOSPI 200종목에서 KOSPI종목으로 확대

- ETF의 공매도에 대한 가격규제 완화 (18조 : 2006/7/7 개정, 7/10 시행)
 - 상장지수펀드(ETF)의 공매도호가 가격제한을 폐지

- 신고대량매매제도의 폐지 (30조 : 2006/7/7 개정, 8/28 시행)
 - 신고대량매매제도의 실효성 상실에 따른 폐지

- 계좌개설시 서면에 의한 고객정보 확인방법 자율화 (77조 : 2006/7/7 개정, 7/10 시행)
 - 매매거래계좌설정시 위탁자 확인사항을 기록·유지하는 방법이 종전에는 서면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를 자율화함

- 장개시전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한 자기주식처분 허용 (39조 : 2006/9/8 개정, 10/30 시행)
 - 거래절차 등은 장종료후 시간외대량매매 자기주식처분의 경우를 준용

-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한 자기주식 처분시 가격협상 범위 확대

(35조 : 2006/9/8개정, 10/30 시행)

기 준	개 정
종가~(종가 -2호가)	종가* ± 5% (당일 상·하한가 이내)

*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경우에는 전일 종가

2.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주식관련사채권의 호가입력제한 범위 조정 (14조 : 2006/2/8 개정, 3/2 시행)
 - 전일종가 대비 50%를 초과하는 매수호가 또는 50%에 미달하는 매도 호가에 대해 호가입력제한
- 시가기준가종목의 매매수량단위 조정 (33조 : 2006/2/8 개정, 2/9 시행)
 - 평가가격이 10만원 이상인 종목의 매매수량단위를 1주로 조정
- 유동성공급자(LP)제도 호가면제 및 평가기준 마련 (31조의5, 31조의7, 31조의9 : 2006/5/29 제정, 6/5 시행)
 - 호가스프레드가 1호가 가격단위에 해당되어 호가스프레드를 축소할 수 없는 경우 호가제출의무 면제
 - 유동성공급회원의 보유물량이 없는 경우 양방향 호가제출의무 면제
 - 유동성공급회원의 유동성공급실적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 유동성공급실적 평가항목 및 평가주기
- 최소 의무이행 기준
- 평가 관련 거래소 통보 내용

○ 매매수량단위 변경 (33조 : 2006/5/29 제정, 6/5 시행)

- 주권의 경우 1주 단위 거래대상 종목을 당일 기준가 10만원 이상 종목에서 5만원 이상 종목으로 확대

○ 주식워런트증권(ELW) 매매의 투명성 제고 (126조 : 2006/5/29 제정, 6/5 시행)

- 접속매매시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해 유동성공급자가 제출한 호가수량을 구분하여 공표

○ 이상급등종목제도 보완 (133조, 134조 : 2006/5/29 제정, 6/5 시행)

- 이상급등종목 지정시 동업종상승률 기준을 산업별주가지수로 일원화하고, 시가기준가종목 적용일부터 5일 동안은 이상급등종목 지정 및 지정예고를 하지 않음

- 이상급등종목 지정해제기준 완화

- 추가급등에 의한 이상급등종목 지정의 경우 지정후 10일 경과시 이상급등종목 지정 해제
-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중 이상급등종목 지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

- 프로그램매매 현황 보고제도의 개선 (130조 : 2006/7/7 개정, 8/28 시행)
 - 주간프로그램매매 현황 보고제도 폐지
 - 선물·옵션 최종거래일 프로그램매매 호가 공시대상에 기존에 제출된 프로그램호가를 정정하는 경우를 포함

- 회원 착오매매 정정 신청방법 개선 (45조 : 2006/7/7 개정, 9/11 시행)
 - 착오매매발생일의 그 다음 매매거래일 12시까지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 제출

- 거래전문회원의 거래내역 통보범위의 명확화 (136조 : 2006/7/7 개정, 7/10 시행)
 - 결제회원에게 통보하는 거래전문회원의 거래내역 통보범위를 명시

- 소액채권의 범위 확대 (61조 2호 : 2006/7/21 개정, 8/1 시행)
 - 서울특별시지역개발채권을 서울도시철도채권과 동일한 종류의 소액채권으로 추가

- Random End제도의 실효성 제고 (38조, 51조의2 : 2006/9/8 개정, 10/30 시행)
 - Random End(단일가매매 참여호가 범위의 연장) 발동요건에 잠정시가(또는 종가)가 직전가 대비 1% 이상 괴리요건을 추가
 - 시가 또는 종가결정시의 잠정가격이 예상체결가격으로부터 크게 변동(5%이상)한 경우라도 잠정가격이 직전가 대비 1% 이내인 경우 발동 배제

- 동 직전가와의 괴리요건은 시간외단일가매매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 자기주식 매매제도 관련 규정 정비 (52조, 57조, 106조 : 2006/9/8 개정, 10/30 시행)

- 정규시장에서 자기주식매매를 위한 호가제출시 가격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호가의 상·하한 산출
- 자기주식의 장개시전 시간외대량매매시 가격범위를 전일종가 기준으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기준가격으로 적용하여 산출
- 시간외대량매매에 의한 자기주식매매의 경우 자기주식매매신청서의 거래소 제출근거를 명시

○ 국고채스트립행사에 따른 무이표부 국고채 매매수량단위 하향조정

(66조 3호 : 2006/10/12 개정, 11/6 시행)

- 이표부 국고채의 원금·이자분리에 따른 무이표부 국고채에 대한 매매수량단위를 '액면 1만원'으로 별도 규정

○ 체결관련 양방향조성호가 제출사유 추가 (79조 : 2006/10/12 개정, 11/6 시행)

- 양방향조성호가의 어느 일방의 잔량이 양방향조성호가 수량단위(100억원) 미만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60분경과 후 양방향조성호가를 다시 제출

- 국채전문유통시장 매매거래수량 단위의 하향조정 (84조 : 2006/10/12 개정, 11/6 시행)

- 액면 100억원 → 액면 10억원

- 국고채전문딜러(PD)의 기능제고를 위한 Repo신고매매의 도입 (76조 : 2006/12/20 개정, 2007/1/2 시행)

- 국고채전문딜러(PD)의 원활한 역할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환매채거래의 신고매매를 허용

- 거래기간 : 360일 이내

3.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 우회상장의 정의규정 마련 (46조 : 2006/9/29 개정, 10/2 시행)

- 주권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영업·자산양수 등으로 인하여 지배권이 변동하는 경우를 우회상장으로 규정

- 우회상장관련 확인서 제출 의무화 (55조의2 : 2006/9/29 개정, 10/2 시행)

- 주권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영업·자산양수 등을 하는 경우 “확인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우회상장요건 충족여부에 관하여 거래소와 협의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주권비상장법인의 우회상장요건 신설 (80조 : 2006/9/29 개정, 10/2 시행)
 - 우회상장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우회상장요건 및 요건 미충족시 주권상장법인(존속법인)의 상장 폐지근거 신설

- 우회상장시의 매매거래 정지근거 마련 (95조 : 2006/9/29 개정, 10/2 시행)
 -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이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영업·자산 양수를 하는 경우 매매거래 정지근거 신설

- 우회상장기업의 제3자배정 신주발행시 매매거래 정지근거 마련
(95조 : 2006/9/29 개정, 10/2 시행)
 -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이 영업·자산양수신고서 제출일 이후 6월 이내에 제3자배정에 의한 신주 및 주식관련사채를 발행 하는 경우 매매거래 정지근거 신설

- 상장지수간접투자증권의 상장폐지요건 개선 (84조, 87조 : 2006/9/29 개정, 10/2 시행)
 - 유동성공급자(LP)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므로 거래량 요건은 상장지수 간접투자증권의 상장폐지요건에서 삭제

- 최대주주 등 지분변동 제한의 완화 (10조 5호, 32조 1항 13호, 35조 1호·3호: 2006/12/22 개정, 12/26 시행)
 - 양적요건으로 최대주주 등 및 5% 이상 주주의 소유주식비율 변동제한을 폐지하고, '최대주주(지배권) 변경'만을 규제

- 질적요건으로 '경영의 안정성' 신설 및 '주주이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상장 전 지분변동의 적정성을 평가
- 위장분산 등을 통한 상장 후 매각제한 규정 회피를 예방하기 위해 상장 전 1년 이내에 '제3자배정으로 신주를 취득'하거나 또는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에 대한 매각을 제한

4.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 기업 실질에 따른 제조업 인정 근거 마련 (21조 2항 3호 : 2006/4/18 제정, 4/19 시행)
 - 자기가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경우(하청)에 대한 제조업 인정근거 마련
- 업종변경 유예 근거 마련 (21조 3항 단서 : 2006/4/18 제정, 4/19 시행)
 - 업력, 향후 영업전망 등을 고려하여 업종변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업종변경 유예 근거를 마련
- 주식워런트증권의 신고사항 제출기한 정비 (35조의2 2항 : 2006/4/18 제정, 4/19 시행)
 - 발행인이 주식워런트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유동성공급자가 유동성공급을 한 경우 매일 신고의무를 부과

- 주식워런트증권의 전부보유 판단 기준 신설 (48조의2 : 2006/4/18 제정, 4/19 시행)
 - 주식워런트증권 유동성공급 및 취득(처분)보고서를 기준으로 전부보유를 판단

- 만기별 종목당 발행액에 대한 일정금액 부과방식을 발행회차별로 동일자 발행분을 1종목으로 부과 (별표 2 : 2006/4/18 제정, 4/19 시행)
 - 월중 계속 매출되는 특수채와 같이 종목이 다수의 경우라도 상장신청일 및 발행일이 동일하면 1종목으로 부과

- 외국주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서의 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서식 신설 (별지 1호 서식(4) : 2006/9/4 개정, 9/5 시행)
 - 용어정의 추가 및 정비
 - 국제회계기준 또는 미국회계기준 채택 반영
 - 상장을 위한 조직정비 및 상장에 관한 사항 기재 요구
 - 주식의 권리행사 및 본국 법규 등에 대한 기재요구
 - 청구서 및 첨부서류의 한글작성 원칙을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의 영어작성을 허용함을 명시
 - 관련법령 등 국가간의 차이로 인하여 작성이 곤란한 항목 등에 관한 기재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생략시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명시

- 외국주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서의 신규상장신청서 신설 (별지 2호 서식(2)
: 2006/9/4 개정, 9/5 시행)
 - 외국기업이 발행한 외국주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서의 신규상장신청서에 사용되는 서식을 정함

- 외국증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서의 신규상장계약서 신설 (별지 17호 서식(2)
: 2006/9/4 개정, 9/5 시행)
 - 회계처리기준 변경시 거래소의 승인 필요 조항 신설
 - 상장대리인 또는 공시대리인 변경시 거래소에 통보 의무화 조항 신설

- 우회상장의 판단기준이 되는 지배권 변동의 개념 설정 (26조의2 : 2006/9/29 개정, 10/2 시행)
 - 주권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 및 5% 이상 주주가 합병(주식교환, 영업양수 등) 결과 소유하게 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수가 주권상장법인의 기존 최대주주등이 소유한 주식수보다 큰 경우
 - 다만, 주권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 또는 5% 이상 주주가 신고서 제출일 전 1년 이전에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된 후 최대주주의 지위가 유지되어 온 경우는 제외

- 우회상장 절차 등과 관련한 세부 시행방안 마련 (31조의2 : 2006/9/29 개정, 10/2 시행)
 - 지배권 변경 여부 및 합병요건 등의 확인을 위한 확인서 서식 및 첨부서류 신설

- 우회상장 법인에 대한 공표기간 설정 (50조의2 : 2006/9/29 개정, 10/2 시행)
 - 합병(주식교환, 영업·자산양수도)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차기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까지

- 우회상장관련 매매거래정지의 합리적 운영 (49조의2 : 2006/11/14 개정, 11/15 시행)
 -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영업·자산양수 신고 당시 최대주주 변경 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의 예외를 인정함

- 주식수 산정방법의 일원화 (26조의2 : 2006/11/14 개정, 11/15 시행)
 - 비상장법인 최대주주등(5%이상 주주 포함) 소유주식수 산정방법과 동일하게, 상장법인 최대주주등 소유주식수 산정시 합병 또는 주식교환으로 소유하게 될 주식을 포함하여 산정함

- 최대주주 변경 등의 명확화 (26조의2 : 2006/11/14 개정, 11/15 시행)
 -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우회상장 유형에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함

- 해외증권의 전환신주 등에 대한 상장신청시 첨부서류 제출의무 신설
(26조 3항 : 2006/11/29 개정, 11/30 시행)
 - 해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CB·BW·DR 등)의 전환권 행사 등으로 인한 신주의 상장을 신청하는 경우 유가증권신고서, 신고서 면제확인서 또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매각제한 증빙서류 등의 첨부서류 제출 의무를 신설함

-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시 첨부서류 제출의무를 면제
-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제도의 합리화 (50조 5항 : 2006/11/29 개정, 11/30 시행)
- 「부산교통공단법」 폐지에 따른 '부산교통채권' 관련 조문을 정비함
 - 채권전문회원에 대한 연부과금을 부과함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해 신규로 상장되는 채권에 대하여 변경상장수수료를 부과함
- 상장 전 지분변동시 매각제한 규제의 범위 명시 (4조 2항 : 2006/12/22 개정, 12/26 시행)
- 상장예비심사 청구 전 1년 이내에 최대주주 등의 소유지분을 취득하거나 제3자 배정으로 발행된 신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매각제한 의무를 부과
 - 단, 매출을 하거나 코스닥시장 또는 외국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한 경우에는 매각제한 의무를 면제
- 상장예비심사결과의 효력 불인정 사유 신설 (6조의2 : 2006/12/22 개정, 12/26 시행)
- 상장예비심사 청구일 후 신규상장일 전일까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한 경우 상장예비심사결과의 효력을 불인정

5.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 주요경영상황 공시의무 추가 (7조 1항 11호 : 2006/9/8 제정, 9/18 시행)
 - 신탁계약 등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장외처분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여

6.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 상장외국법인에 대한 조회공시 범위 명확화 (7조의2 : 2006/9/11 개정, 9/18 시행)
 - 상장외국법인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대상중 “보도”의 수집범위를 국내 상장법인의 조회공시 대상 보도내용 및 국제적인 뉴스정보 전문제공 기관 또는 통신사에 게재된 기사로 규정
 - 상장외국법인의 보도에 대한 즉각적 대응 및 현지 외국투자자와 국내투자자와의 정보불균형 발생가능성을 방지
- 상장외국법인의 공시대리인 대리권한 부여에 관한 증명서식 신설
(별지 4호 서식 : 2006/9/11 개정, 9/18 시행)
 - 공시대리인 선임(변경 포함)시 당해 공시대리인에게 대리권한을 부여하였음을 증명할 입증서류 신설

7.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 상장지수펀드 유동성공급자제도의 도입 (12조의2 : 2006/7/7 개정, 7/10 시행)

— 상장지수펀드에 대하여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회원은 유동성공급 호가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호가제출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

- 정규시장중 호가스프레드가 호가가격단위의 10배 초과시 5분 이내에 호가스프레드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유동성공급호가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

○ 상장지수펀드 공매도시 가격규제 폐지 (9의3조 2항 : 2006/7/7 개정, 7/10 시행)

— 상장지수펀드 공매도시 기존 '직전가 이하 가격으로 호가 금지'의 가격규제를 폐지하여 직전가 이하의 가격으로도 호가할 수 있도록 함

기 존	개 정
○ 직전가 이하의 공매도호가 불가 - 단, 차익거래는 예외 허용	○ 직전가 이하의 공매도호가 허용

○ 매매거래계좌 설정시 고객정보 수기기재의무 폐지 (33조 2항 : 2006/7/7 개정, 7/10 시행)

— 매매거래계좌 설정시 고객정보의 수기기재의무를 폐지하여 정보 유출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

- * 금감위(원)의 「전자거래 안전성 강화 종합대책(2005.9)」에 따라 매매거래계좌 설정시 비밀번호는 전자입력기(PIN PAD)를 통하도록 의무화

○ 장개시전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한 자기주식처분 허용 (10조 4항 : 2006/9/8 개정, 10/30 시행)

- 기존에 장종료후 시간외대량매매에 한정하던 시간외시장의 자기주식처분을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에서도 허용
 - 호가가격범위는 “전일 증가”를 기준으로 하여 장종료후 시간외대량매매의 경우를 준용

○ 시간외대량매매시 자기주식처분 호가가격범위 확대 (10조 5항 : 2006/9/8 개정, 10/30 시행)

- 기존에 당일 가격제한폭 이내에서 “증가~증가 -2호가”로 한정하고 있는 호가가격범위를 “증가 ±5%”로 확대

	기 준	개 정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매시간 : 07:30~08:30 • 호가가격범위 : (전일증가 ± 5%) & (가격제한폭)
장종료후 시간외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매시간 : 15:10~18:00 • 호가가격범위 : (당일증가~당일증가-2호가) & (가격제한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과 같음) • 호가가격범위 : (당일증가 ± 5%) & (가격제한폭)

8.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ETF 유동성공급호가제출 관련 사항의 구체화 (12조의2 : 2006/7/7 개정, 7/10 시행)
 - 유동성공급호가는 매매수량단위 1,000배 이상의 수량이어야 하고, 지정가호가로만 가능하도록 함
 - 유동성공급호가의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사항을 정함
 - 단일가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 및 해당접수시간 종료 후 5분 이내, 호가스프레드가 호가가격단위의 10배 이내로 축소되는 경우 등

- 프로그램매매현황 보고방식 개선 (15조 1항·3항 : 2006/7/7 개정, 2006/8/28 시행)
 - 정보 효용성이 낮은 주간 프로그램매매현황보고를 폐지하여 회원의 업무부담을 완화
 - 선물 최종거래일 프로그램매매호가의 사전보고 범위를 기존 신규호가 외에 정정호가까지 확대하여 실효성을 제고

- 이상급등종목 지정 및 해제 요건 개선 (54조, 55조 : 2006/7/7 개정, 7/10 시행)
 - 이상급등종목 지정의 장기화에 따른 매매불편의 최소화를 위해 지정 일로부터 10거래일 경과시 자동해제하는 요건을 신설

기 존	개 정
- 지정 3일 후 종가가 · 최근 5일 중 최고종가 대비 10% 이상 하락 or 지정일 전 일 종가 미만 - (신 설)	- (기존 유지) - 지정 후 10일 경과시

— ETF, 증권투자회사, 외국DR의 경우 종목특성을 고려하여 이상급등종목지정요건 중 주가지수상승율요건의 적용을 배제

○ 우선주 등 매매거래정지제도 개선 (2006/7/7 개정, 7/10 시행)

- 기존에 가격괴리율 요건만 적용하던 우선주 등의 매매정지제도에 이상급등종목 지정요건을 추가하고,
- 재차 매매거래정지요건도 주가흐름을 고려하여 매매거래정지가 가능하도록 개선

	기 존	개 정
최초 정지	- 괴리율 2배 이상	- 괴리율 2배 + 이상급등종목 지정
재차 정지	- 괴리율 2배 이상 - 매매거래정지 직전일 종가 대비 10% 이상 상승시	(기존 유지) - 최근 3일 주가상승률 20% 이상

○ 회원착오에 의한 매매거래의 정정방식 개선 (33조 : 2006/7/7 개정, 9/11 시행)

- 착오매매정정을 위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정정을 위한 문서제출 시한을 다음날 12시까지로 제한

○ 거래전문회원의 매매거래내용 통보방식 개선 (29조 : 2006/7/7 개정, 7/10 시행)

- 거래전문회원의 매매거래내용을 지정결제회원에게 통보시 규정에 열거된 항목 이외의 사항은 사전에 거래전문회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 거래전문회원의 매매거래내용 통보항목에 '종목명'을 추가

○ 코스닥상장법인 자기주식매매제도 개선 (2006/9/8 개정, 10/30 시행)

-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을 통한 자기주식 매매시 권리락 등이 발생한 종목은 당해 권리락 등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정규시장 가격과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10조)
- 장중 자기주식 매수호가 제출시점까지 거래 미형성시 호가가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일의 기준가격을 최고가로 보아 호가 상한폭을 결정할 근거 마련 (10조)
- 시간외시장을 통한 자기주식 매매시 호가가격단위를 기존의 가격대별 호가가격단위(5원~100원)에서 대량매매호가가격단위(1원)로 변경하여 호가제출이 용이하도록 함 (24조 3항)

○ 공모도 가격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ETF 차익거래의 범위를 확대

(9조 3항 : 2006/9/8 개정, 9/11 시행)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ETF중 코스닥상장종목을 구성종목으로 하는 ETF의 차익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코스닥종목의 공모도시에도 가격규제 예외를 적용

9.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기업 관리방안 (19조, 38조 : 2006/6/23 개정, 6/26 시행)
 - 비상장기업의 기업규모가 상장기업보다 크거나 합병으로 인해 상장기업의 경영권이 변동되는 경우로서 비상장기업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상장기업에 대해 상장폐지 조치를 취함

-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한 우회상장기업 관리방안 (19조의2, 38조 : 2006/6/23 개정, 6/26 시행)
 - 비상장기업과의 주식교환을 통해 상장기업의 경영권이 변동되는 경우로서 비상장기업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상장기업에 대해 상장폐지 조치를 취함

- 주식스왑·영업양수·신주발행 등을 통한 우회상장기업 관리방안 (19조의3, 38조 : 2006/6/23 개정, 6/26 시행)
 - 비상장기업과의 주식스왑·영업양수·신주발행 등을 통해 상장기업의 경영권이 변동되는 경우로서 비상장기업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상장기업에 대해 상장폐지 조치를 취함

- 우회상장기업(경영권변동 및 요건충족기업)에 대한 공표 (19조의4 : 2006/6/23 개정, 6/26 시행)
 - 우회상장기업에 대해서는 당해기업이 '우회상장 종목'임을 2년간 공표함으로써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시킴

< 우회상장 관리기준 >

기준	합병	주식교환	주식스왑	영업양수
경상이익 有*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자본잠식 無*	적용	적용	적용	부채초과 無
적정 감사의견(최근연도)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유·무상증자 제한(1년)	적용	적용	-	-
지분변동제한(최대주주 등 및 5% 이상 주주, 6월간)	적용	적용	-	-
소송 등 중요한 분쟁 無	적용	적용	적용	-
부도사유 해소(6월 전)	적용	적용	적용	-
타법인과 합병, 분할(합병), 영업양수·도시 결산 확정 (3월미만시 차기)	적용	적용	적용	-

* 재무요건은 최근사업연도(말) 기준으로 하되 영업양수는 양수대상 영업부문을 대상으로 함

** 양수대상 영업부문의 부문별 재무제표가 기재된 영업양도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을 말함

< 우회상장 유형별 시장조치 내용 >

우회상장 유형		기 준	개 정
합병및 포괄적 주식교환	경영권 불변	매각제한 (1년)	현행 유지
	경영권 변경	요건 충족	매각제한 (2년) 우회상장 표시(2년)
		요건 미충족	매각제한 (3년)
주식스왑 및 영업양수도	경영권 불변	매각제한 (1년)	현행 유지
	경영권 변경	요건 충족	매각제한 (2년) 우회상장 표시(2년)
		요건 미충족	매각제한 (2년)

- 감사보고서 적용기준 개선 (3조 : 2006/6/23 개정, 6/26 시행)
 - 지정감사제도 도입에 따른 소급감사 차단으로 그 존치 필요성이 소멸된 감사보고서의 정기주총 보고 요건 삭제

- 퇴출절차의 합리적 정비 (40조 : 2006/6/23 개정, 6/26 시행)
 - 퇴출결정후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에서 퇴출결정 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퇴출절차 개선

○ ETF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상장요건의 개선 (14조, 15조 : 2006/7/7 개정, 7/10 시행)

— ETF에 대한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위하여, ETF의 상장요건으로서 유동성공급계약 체결의무를 부과

- 지정판매회사중 1사 이상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판매회사가 LP(유동성공급자)가 되며, 동 LP는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호가를 제출(유동성 공급)

○ ETF의 상장폐지예고사유의 확대 (39조 : 2006/7/7 개정, 10/1 시행)

— 유동성공급 미흡 등으로 ETF가격의 괴리율이 일정수준(3%)을 초과하는 경우(LP의 유동성공급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포함)를 상장폐지예고사유에 추가

- ETF가격의 괴리율 = $[(\text{종가} - \text{순자산가치}) / \text{순자산가치}] \times 100$

○ ETF의 상장폐지요건 개선 (43조, 44조 : 2006/7/7 개정, 10/1 시행)

— 일정기간 안에 괴리율 미회복시 또는 LP의 수가 1사 미만이 된 경우 (유동성 공급기준에 미달하는 LP를 1월내에 교체하지 않은 경우 포함) 당해 ETF의 상장을 폐지

	기 존	개 정
상장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판매회사가 2사 이상일 것 -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지정판매회사 1사 이상과 LP계약을 체결하고 있을것
상장 폐지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평균거래량 10만좌 미만 - (신 설) - (신 설) -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 지) - 괴리율 3%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일 연속 또는 1분기에 20일 이상 - LP수 1사 미만 - 부적격 LP 교체의무 1월내 미이행

○ 자기자본 규모 요건 신설 (28조 : 2006/9/29 개정, 12/1 시행)

- 자기자본 규모에 의한 퇴출요건을 신설하여 감자를 통한 퇴출모면을 방지하고, 기업실체가 형해화된 기업의 조기퇴출을 유도
 - 자기자본 10억원 미만으로 2반기 연속시 퇴출

○ 자본잠식에 의한 퇴출주기 단축 (38조 : 2006/9/29 개정, 12/1 시행)

- 기존에 원칙적으로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본잠식 퇴출요건을 반기단위로 단축하여, 부실기업의 조기퇴출을 유도

	기 존	개 정
50%잠식	사업연도말(관리종목) → 1반기 또는 1년 지속(퇴출)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 (관리종목) → 1반기 지속(퇴출)
전액잠식	사업연도말 전액잠식(퇴출)	좌 동

- 감사보고서를 통해 자구이행 여부 확인 (38조 : 2006/9/29 개정, 12/1 시행)
 - 자구이행에 대한 확인방법을 기존의 감사인 확인서에서 감사보고서로 변경함으로써, 자구행위에 대한 검증기능 강화
 - 결산기말(반기말) 기준 퇴출사유 해당기업이 자구행위를 이행한 경우, 동 자구행위를 반영한 감사보고서를 사업(반기)보고서 법정제출 기한까지 제출받아 자구이행 여부를 확인

- 신속한 관리종목 지정을 통한 부실예고기능 강화 (28조 : 2006/9/29 개정, 12/1 시행)
 - 관리종목(자본잠식 50%) 지정의 경우, 결산기(반기)말 실적 확인시 자구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즉시 시장조치
 - 이후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본잠식률 50%미만이 된 경우 관리종목 지정 해제

< 퇴출요건 개선내용 >

	기 준	개 정
요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말 자본전액잠식 • 연말 50%잠식(관리종목) 후 1반기 또는 1년후 동 상태 유지(퇴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반기말 또는 연말 50%잠식(관리종목) 후 1반기후 동 상태 유지(퇴출)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기말 또는 연말 자기자본 10억원미만(관리종목) 후 1반기후 동 상태 유지(퇴출)
자구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종목 · 퇴출시 모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출시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인의 확인서로 확인 (확인되면 관리종목 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확인 (확인 이후에도 관리종목 유지)

○ 상장전 지분변동제한의 완화 (6조 1항, 21조 1항 : 2006/12/22 개정, 12/26 시행)

— 최대주주 등 및 5% 이상 주주의 소유주식비율 변동제한을 폐지하고, '최대주주 변경 제한'으로 완화

- 최대주주 등의 지분변동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질적심사 및 매각제한 강화를 통해 이를 보완
 - *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비율변동으로 인하여 경영안정성이 저해되거나 주주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할 것
 - * 예비심사청구전 1년간 3자배정자 및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자는 상장후 1년간 동 주식의 매각을 제한

	기 존	개 정
상장전 지분변동제한	최대주주·특수관계인 ·5%주주 * 지분율이 유지될 것	최대주주 * 지위가 유지될 것
상장후 매각제한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좌 동
		상장청구전 1년간 ·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양수한 자 · 제3자배정으로 신주를 받은 자

10.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 복수 평가기관에 의한 기술평가제도 도입 (9조 : 2006/2/17 개정, 2/20 시행)
 - 종래에는 요건을 갖춘 전문평가기관 중 한 개의 기관을 지정하여 기술평가를 받도록 하였던 것을, 2개의 기관을 지정하여 복수 평가를 받도록 평가절차를 개선함
 - 2개 기관의 평가결과가 상이한 경우에는 이중 낮은 등급을 적용

- 우회상장의 판단기준이 되는 경영권 변동의 개념 설정 (19조 : 2006/6/23 개정, 6/26 시행)
 - 합병(주식교환, 영업양수 등)으로 인하여 당해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 합병(주식교환, 영업·자산양수)신고서 제출일 이전 1년 이내에 당해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 영업양수 등의 경우 3자배정증자의 발행일이 신고서 제출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발행일까지의 최대주주 변경을 포함
 - 비공개법인의 5%이상 주주 및 최대주주 등이 합병(주식교환, 영업양수 등) 결과 소유하게 되는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의 합계가 코스닥상장법인의 기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수보다 큰 경우
 - 다만, 비공개법인의 5% 이상 주주 및 최대주주 등이 신고서 제출전 1년 이전에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된 경우는 제외

- 우회상장 절차 등과 관련한 세부 시행방안 마련 (19조 : 2006/6/23 개정, 6/26 시행)
 - 합병(주식교환, 영업양수 등)요건의 충족여부 등과 관련하여 당해 신고서 제출 이전에 거래소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으며,
 - 비공개법인과 합병(주식교환, 영업양수 등)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경영권변경여부 및 합병요건 등의 확인을 위해 거래소가 정한 서식에 따른 확인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우회상장 법인에 대한 공표기간 설정 (19조의4 : 2006/6/23 개정, 6/26 시행)
 - 합병(주식교환, 영업양수 등)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차기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까지

- 우회상장 절차와 관련한 매매거래정지기간 설정 (29조 : 2006/6/23 개정, 6/26 시행)
 - 합병·주식교환 : 공시일부터 신고서제출일까지
 - 다만, 요건충족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일까지
 - 영업양수등 : 공시일부터 신고서제출일까지
 - 다만, 요건충족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일까지
 - 이후 3자배정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충족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3자배정 공시일부터 요건충족여부 확인일까지 매매거래정지 추가

- 상장폐지시 의견청취 관련 세부절차 마련 (35조 : 2006/6/23 개정, 6/26 시행)
 - 이의신청이 가능한 퇴출사유가 발생한 경우 거래소가 당해 사실을 해당법인에게 통보
 - 이의가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외부전문가 의견 등을 첨부하여 이의신청
 - 이의신청후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여부 심의 (당해 기업 대표자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
 - 상장위원회 심의후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 결정

- 신규상장시 유동성공급계약서 제출 의무화 (15조, 16조 : 2006/7/7 개정, 7/10 시행)
 - 상장지수펀드(ETF)의 신규상장시 첨부서류로서 유동성공급자(LP)와 체결한 유동성공급계약서를 제출토록 의무화

- 유동성공급계약 변동시 신고의무 부과 (30조, 32조 : 2006/7/7 개정, 7/10 시행)
 - ETF의 유동성공급계약이 신규로 체결되거나, 변경 및 해지된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

- 유동성공급자(LP)의 의무이행 평가기준 마련 (33조의2 : 2006/7/7 개정, 7/10 시행)
 -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LP의 유동성공급의무 이행이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간주

-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호가가격차이가 호가가격단위의 10배를 초과하는 상태가 5분 이상 지속되는 동안 상대우선호가대비 10호가단위 이내의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시하지 않은 날이 10일 이상 연속되거나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20일 이상인 경우
 - 괴리율이 3/100을 초과한 날이 5일 연속되거나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10일 이상인 경우
- 시스템장애로 인한 경우, 대상지수나 기초자산의 급격한 가격변동이 있는 경우 및 정치·경제상황의 급변 등으로 시장조성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는 적용을 면제
-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의 기준시기 변경 (26조 : 2006/10/27 개정, 12/1 시행)
- 매출액, 경상손실, 자본잠식 등과 관련한 관리종목 지정시기를 기존의 사업보고서 기준에서 감사보고서 기준으로 변경
- 반기의 경우에는 반기 검토보고서 기준
- 관리종목 지정일의 통일 (26조 : 2006/10/27 개정, 12/1 시행)
- 관리종목 지정일을 당해 사유 확인일의 익일로 통일함
- 기존에는 관리종목 지정일을 지정사유에 따라 사유확인일 또는 그 익일 등으로 달리 운영하였으나, 사유가 확인된 날의 익일로 통일
 - 매매거래정지는 사유 확인일 및 그 다음날부터 2일간으로 통일

○ 외국기업 코스닥상장계약서의 내용 정비 (서식 8-2 : 2006/10/27 개정, 11/1 시행)

- 상장시 적용한 회계처리기준과 동일한 종류의 회계처리기준을 상장 이후에도 유지하도록 의무화
- 외국지주회사 요건을 적용받아 상장한 외국기업의 경우 상장 이후에도 자회사 지분율을 지주회사 기준(30% 초과 and 최다출자)에 적합하도록 유지할 것을 의무화
- 상장대리인 및 공시대리인 변경시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 외국기업 상장관련 제출서류 보완 (3조의2, 13조, 서식 4-2 : 2006/10/2 개정, 11/1 시행)

- 예탁자계좌부 기재 확인을 위한 서류 및 주식사무대행기관과의 사무대행 계약서 등 외국기업 상장과 관련한 제출서류를 보완
- 외국기업 상장신청서 서식을 마련

○ 영업·자산 양수시 매매거래정지 기간 단축 (29조 : 2006/10/27 개정, 11/1 시행)

- 우회상장에 해당하지 않는 영업·자산 양수시에는 매매거래정지기간을 단축
 - 요건충족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만 매매거래정지(요건충족여부 확인일까지)
- 우회상장에 해당(경영권변경 등이 있는 경우)하는 영업·자산 양수시에는 매매거래정지기간을 유지

- 수시공시후 신고서 제출일까지(요건충족여부 미확인의 경우에는 확인일까지 매매거래정지 추가)

○ 매출액 기준 등에 의한 사전기술평가 의무 폐지 (9조 : 2006/10/27 개정, 11/1 시행)

— 매출액 또는 업력이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예비심사청구전 의무 기술평가제도 폐지

- 최근 사업연도(OR 3년 평균) 매출액 30억원 미만 또는 업력 2년 미만 기업이 적용대상

○ 성장형벤처기업 인정 대상의 명확화 (7조 : 2006/10/27 개정, 11/1 시행)

— 수익성요건(경상이익, ROE)을 충족하는 기업도 업종·기술평가 등 요건 충족시 성장형벤처기업으로 인정

○ 해외증권의 전환신주 등에 대한 상장신청시 첨부서류 제출의무 신설

(18조 6항 : 2006/11/29 개정, 11/30 시행)

— 해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CB·BW·DR 등)의 전환권 행사 등으로 인한 신주의 상장을 신청하는 경우 유가증권신고서, 신고서 면제확인서 또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매각제한 증빙서류 등의 첨부서류 제출의무를 신설함

-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시 첨부서류 제출의무를 면제

○ 심사청구전 주식취득자의 매각제한에 대한 예외사항의 신설 (20조 1항 : 2006/12/22 개정, 12/26 시행)

— 지분변동제한 완화에 대한 보완으로 신설된 매각제한 대상중 매각제한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항을 신설

-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종업원이 취득하는 경우
- 벤처금융 또는 기관투자자가 제3자 배정으로 취득하는 경우
- 법령상 의무의 이행 등으로 취득하게 된 경우 등

○ 우회상장시 단기사업연도 요건 적용대상의 확대 (19조 3항, 19조의2 3항, 19조의3 4항 : 2006/12/22 개정, 12/26 시행)

— 우회상장시 비공개기업에 대한 경영성과 및 감사의견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결산기 변경으로 인한 경우 이외에도 법인 설립, 기업분할 등으로 최근사업연도가 6월 미만인 경우 최근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대해서도 동 요건을 적용

- 기존에는 결산기 변경으로 인해 최근사업연도가 6월 미만인 경우에만 동 요건을 적용

11.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 신탁계약에 의한 자사주 장외처분시 공시의무 신설 (6조 1항 : 2006/9/8 개정, 9/18 시행)

— 신탁계약을 통한 자사주 취득은 장내거래만이 허용되며 취득관련 정보가 공표(업무규정 12조)되므로, 별도의 공시의무가 없는 장외처분에 대하여 공시의무를 신설

< 자기주식 취득·처분 공시의무 >

취득 방법	장내 장외	공시시점	공시의무		
			법·금감위규정	공시규정	업무규정
직접	장내	취득·처분 결정 취득·처분	· 취득(처분) 신고서	· 취득(처분) 결정 공시	· 매매신청서 · 거래내용공표
	장외	처분결정	· 처분신고서	· 처분결정 공시	-
신탁	장내	체결·해지 결정 취득·처분	· 계약체결(해지)신고서 · 신탁계약 등에 의한 취득 상황보고서	· 계약체결(해지)결정 수시공시	· 매매신청서 · 거래내용공표
	장외	계약체결·해지	· 계약체결(해지)신고서	· 계약체결(해지)결정 수시공시	-
		처분결정	-	· 처분결정 수시공시	-

12.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 관리종목 지정 확인수단 변경 등에 따른 매매거래정지(60분) 개선
(11조 2항 2호 : 2006/10/30 개정, 11/1 시행)
 - 상장세칙이 관리종목 지정여부 확인수단을 변경(사업·반기보고서 → 감사·검토보고서)하고, 매매거래정지 기간도 확인일을 포함하여 3일간으로 개선함에 따라 관련 공시세칙을 정비

- 우회상장 적용대상인 합병·주식교환·영업양수 사실 공시시 매매거래정지(60분) 적용배제 (11조 1항 6호, 7호 : 2006/10/30 개정, 11/1 시행)
 - 우회상장 적용대상인 합병·주식교환·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상장세칙에 의한 매매거래정지 규정(상장세칙 29조 1항)이 우선 적용되므로 공시세칙에 의한 매매거래정지의 적용을 배제
 - 종래 조직변경 관련 중요내용 공시(합병·주식교환·영업양수)시에 는 매매거래를 60분간 정지하였음

- 영문공시의 활성화 유도 (별표 1 제재심의기준 : 2006/10/30 개정, 11/1 시행)
 - 영문공시 활성화를 위해 불성실공시법인 제재 감경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실효적인 유인책을 마련
 - 최근 1년간 영문공시 건수 비율이 당해 법인의 전체 공시건수 대비 10% 이상이거나 10건 이상인 영문공시 우수법인의 경우, 불성실공시 제재심의기준상 “감경사유” 중 “최근 1년간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없을 것” 요건을 삭제

13. 선물시장 업무규정

- 시장조성자 도입근거 마련 (7조의2 1항 : 2006/10/27 개정, 12/4 시행)
 -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장을 조성하는 시장조성자 제도를 도입함
 - 시장조성자는 신상품 등에 적용
 - 복수의 시장조성자도 허용하여 상호경쟁을 통한 시장조성효과를 극대화하여 일반투자자의 거래비용을 축소

- 시장조성자의 자격 (7조의2 2항 : 2006/10/27 개정, 12/4 시행)
 - 시장조성자는 자기계산으로 거래하는 자이므로 자기매매업을 허가받은 자로 한정
 - 시장조성자는 자기명의로 거래하여야 하므로 회원으로 하되, 재무건전성이 높은 결제회원으로 한정

- 시장조성자제도의 적용종목 (7조의2 3항 : 2006/10/27 개정, 12/4 시행)
 -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할 수 있는 종목은 신상품 및 유동성관리품목의 종목중 세척이 정하는 종목으로 함
 - 신상품의 경우 상장초기 유동성 확보가 중요
 - 유동성관리품목은 일정기간내에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되므로 모든 관리품목에 대해 적용
 - 시장조성자제도의 적용종목은 선택과 집중을 위하여 세척에서 최근 월물만 적용하도록 함 (옵션의 경우 최근월물의 ATM±2)

- 시장조성계약의 체결 (7조의3 : 2006/10/27 개정, 12/4 시행)
 - 시장조성자가 되고자 하는 회원은 사전에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
 - 계약체결회원이 시장조성하고자 하는 종목, 계약기간, 계약의 중도 해지사유 등을 세칙에서 정함

- 시장조성호가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최우선호가 간격의 수준 (7조의4 1항 1호, 2호 : 2006/10/27 개정, 12/4 시행)
 - 최우선 매도호가(매도호가 없는 경우에는 상한가에서 호가가격단위를 뺀 가격)와 최우선 매수호가(매수호가 없는 경우에는 하한가에 호가가격단위를 더한 가격)의 간격이, 선물거래의 경우 호가가격단위의 10배, 옵션거래의 경우 호가가격단위의 10배에 상당하는 수준으로서 세칙이 정하는 수준으로 함

- 시장조성호가 제출의무발생시점부터 5분 이내에 쌍방 또는 일방호가 제출 (7조의4 1항 본문 : 2006/10/27 개정, 12/4 시행)
 - 최우선호가간격을 축소시키는 고가매도와 저가매수의 쌍방호가는 일방호가를 유인하는 효과가 크고, 손실 및 재고위험이 적으므로 허용
 - 일방호가의 경우 시장조성자별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시황판단이 상이하고, 쌍방호가로 발생한 재고포지션 해소의 편리성을 위해 허용
 - 시장조성자의 의무호가 제출빈도 및 시황판단 소요시간 등을 감안하여 의무발생 시점부터 5분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

- 시장조성호가 제출의무의 면제 (7조의4 1항 단서 : 2006/10/27 개정, 12/4 시행)
 - 회원선물·옵션시스템의 장애, 회원의 파업 기타 세칙이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조성호가 제출의무를 면제

- 가격연속성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의무호가 제출 (7조의4 2항 : 2006/10/27 개정, 12/4 시행)
 - 호가제출의무 발생시점의 최우선평가가 간격에 직전의 약정가격(직전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가격)이 포함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제출되는 최우선평가가 간격에도 직전의 약정가격이 포함되도록 하여 가격의 연속성을 유지

- 시장조성호가의 제출방법 (7조의5 : 2006/10/27 개정, 12/4 시행)
 - 시장조성계좌를 통하여 제출
 - 시장조성호가는 별도로 개설된 시장조성계좌를 통하도록 하여 시장조성자에 대한 할인적용 거래증거금의 산출을 용이하게 하고, 시장감시와 시장조성 실적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함
 - 지정가호가로 제출
 - 지정가호가 아닌 시장가호가등은 매도·매수의 최우선평가 개념이 없고 가격을 지정하지 않으므로 적용제외
 - 접속매매시간에 제출
 - 단일가호가 접수시간에는 우선호가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접속매매시간에 한하여 제출하도록 하되, 세칙에서 정하는 접속매매시간에는 제외하도록 정함

- 의무호가는 호가당 5계약 이상으로 제출
 - 시장조성호가의 제출은 결제회원에만 허용되므로 일반투자자의 호가수량(1계약)의 5배 이상으로 제출하도록 함
 - 시장조성계좌를 통한 시장의 유동성 및 가격의 연속성 제고 호가의 허용
 - 시장조성계좌를 통하여 시장의 유동성을 제고하는 호가중 세척이 정하는 호가의 제출을 허용함
 - 시장조성계좌를 통하여 가격의 연속성을 제고하는 호가중 세척이 정하는 호가의 제출을 허용함
- 시장조성자에 대한 거래증거금 감면 등 (7조의6 : 2006/10/27 개정, 12/4 시행)
- 거래소는 시장조성자에 대하여 시장조성할 때부터 거래증거금을 감면할 수 있음
 - 거래소는 시장조성의 실적을 평가한 후 그 실적에 따라 해당 종목의 초과 거래수수료의 일부를 해당 시장조성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 거래증거금의 감면수준, 시장조성실적의 평가시기 및 방법, 초과거래수수료의 지급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세척에서 정함
- 가격급등락 완화 장치 (225조 1항 4호 : 2006/10/27 개정, 12/4 시행)
- 시장조성 종목이 포함된 품목의 각 종목별로 성립될 가격(예정가격)과 직전의 약정가격과의 차가 세척이 정하는 일정 수준을 초과하여 급변이 예상되는 때에는 당해 종목에 대해 단일가매매 하여 가격 급등락을 완화

○ 국채선물 등의 시장조성자 제도 폐지 (34조~39조 : 2006/10/27 개정, 12/4 시행)

- 국채선물(3년·5년), 국채선물옵션(3년), 금리선물(통안증권, CD), 통화선물·옵션(달러, 엔, 유로)에 적용되던 시장조성자제도를 폐지하여 상품별 시장조성자제도의 형평을 도모

< 신 시장조성자제도와 기존 시장조성자제도의 차이점 >

구분	신 시장조성자제도	기존 시장조성자제도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거래 허가받은 자 - 결제회원 - 시장조성직원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거래 허가받은 자 - 회원(거래전문회원 가능) - 시장조성직원 지정
유동성 요건	저유동성	좌동
시장조성계좌	의무적으로 개설	좌동
결제월	원칙적으로 최근월물	제한없음
권리행사가격	ATM±2	2개이상의 종목
의무호가간격	10틱(옵션 15~30%)	제한없음
의무호가수량	거래단위의 5배	제한없음
의무호가유형	지정가	좌동
의무호가제출	의무발생시 5분이내	2시간이상
의무호가제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방호가 - 일방호가 	쌍방호가
시장조성계좌로 가능한 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결호가 - 시장심도 심화호가 - 시장폭 확대호가 	의무호가만 허용
메리트 제공주체	거래소	좌동
메리트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수수료 면제 - 초과거래수수료 지급 - 거래증거금 인하 	거래수수료 면제
가격급등락 완화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가한도수량 축소 - 장중단일가 	없음

○ 코스피 200 옵션의 권리행사가격(종목) 수 확대 (205조 2항 : 2006/10/27
개정, 12/4 시행)

— 코스피 200 옵션의 권리행사가격밴드를 전일 종가기준으로 $ATM \pm 10P$
에서 $ATM \pm 15P$ 로 확대함으로써 2001년 이후 장중 일일 최대변동폭
(2006년 평균 11.68P)을 여유 있게 커버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의
종목 선택기회를 확대

○ 주식관련상품 상·하한가호가의 단일가매매시 배분방법 개선 (221조 3항 2호
: 2006/10/27 개정, 12/4 시행)

— 주식관련상품의 경우 단일가호가 배분시 상·하한가(옵션의 경우 호가
최고·최저한도가격)를 포함한 모든 가격에 대해 시간우선의 원칙을
적용하는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여 더 이상 가격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하한가의 경우 수량우선의 원칙(동일수량인 경우 시간우선의 원
칙)을 적용하여 투자주체별(소액투자자와 기관투자자간) 배분의 공평
성을 기함

— 수량배분시 기존 전량배분(1단계)에서 9단계로 세분화하여 소액투자자
에게도 충분한 배분기회를 제공 (구체적인 방법은 세칙에서 정함)

< 9단계별 배분수량 >

배분단계	단계별 배분수량	
	선물	옵션
1단계	1계약	5계약
2단계	5계약	25계약
3단계	10계약	50계약
4단계	20계약	100계약
5단계	50계약	250계약
6단계	100계약	500계약
7단계	200계약	1,000계약
8단계	잔량의 1/2	
9단계	잔량	

○ 코스피 200 선물 순미결제약정 보유한도 확대 (265조 : 2006/10/27 개정, 12/4 시행)

— 코스피 200 선물의 순미결제약정 보유한도를 기존 5,000계약에서 7,500계약으로 확대

- 기존의 보유한도는 설정 당시에 비해 시장변동성 축소에 따른 결제 불이행위험 감소 및 시장지배력 감소에 따른 불공정행위의 여지가 축소되었으므로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도모 및 투자 불편 해소 등을 위해 확대함

14.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신탁업 겸영 선물업자의 신탁거래를 위탁거래로 구분 (78조 1항, 별표 8 : 2006/3/8 개정, 3/20 시행)

— 선물업자(증권회사)의 신탁거래를 위탁거래로 구분하여 호가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고 호가내용의 입력코드를 "5"로 함

- 선물업자의 신탁거래는 선물업자의 지위가 아닌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자기자산이 아닌 신탁자산(타인자산)의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거래이므로 자기거래에 해당되지 않고, 신탁업자(증권회사)가 타인자산(신탁자산)의 운용을 위하여 선물업자(동일 명의의 증권회사)에게 위탁하는 거래구조이므로 위탁거래에 해당함

* 신탁업을 겸영하는 증권회사의 신탁거래의 경우 형식적인 명이는 선물업자이지만 실질적인 계산의 귀속주체는 수익자(고객)이므로 자기거래와 위탁거래의 중간적 성질이 있음

< 재산 운용자별 위탁·자기거래의 구분 >

구분	재산운용자	주문자	호가자	위탁행위	거래구분
고유 재산 (자기자산)	회원 선물업자(A)	-	A	×	자기거래
	비회원 선물업자(B)	B	A	○	
	신탁업자(C)	C	A	○	
신탁 재산 (타인자산)	회원 선물업자(A)	형식: A (신탁업자) 실질:수익자	A (선물업자)	△	위탁거래
	비회원 선물업자(B)	B	A	○	
	신탁업자(C)	C	A	○	

* 신탁재산은 신탁업자 및 신탁업 겸영 금융기관(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만 운용 가능

- 엔선물 및 유로선물의 주문가격 제한범위 (8조 1항 8호·9호 : 2006/5/22 개정, 5/26 시행)
 - 엔선물 및 유로선물의 주문가격의 제한범위는 미국달러선물과 동일하게 각각 주문제한기준가격(전일의 정산가격)에 100을 가산한 가격을 상한, 차감한 가격을 하한으로 함

- 엔선물 및 유로선물의 협의대량거래의 거래가능수량 (18조 4호·5호 : 2006/5/22 개정, 5/26 시행)
 - 엔선물 및 유로선물의 협의대량거래의 거래가능수량은 미국달러선물과 동일하게 각각 200계약을 최소수량, 3,000계약을 최대수량으로 함

- 엔선물 및 유로선물의 거래증거금률 (26조 2항 8호·9호 : 2006/5/22 개정, 5/26 시행)
 - 증거금기준가격(환율)의 가격변동을 추세를 고려하여 엔선물 및 유로선물의 거래증거금률을 2.5%로 함
 - 거래증거금률은 증거금기준가격의 2일간 변동률에 대해 “평균+3×표준편차”(μ+3σ) 수준(99%)에서 결정함
 - 2005년 엔선물 및 유로선물의 2일간 변동률(μ+3σ)은 원/엔이 2.15%, 원/유로가 2.34%임

- 유동성관리품목 지정기준 (145조 1항 : 2006/5/22 개정, 5/26 시행)
 - 매월 최초거래일의 직전 3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이 다음의 유동성관리기준수량에 미달하는 품목을 유동성관리품목으로 지정함(상장후 거래기간이 6개월 이상인 품목에 한함)

- 주가지수 품목 : 300계약
- 주식 품목 : 기초주권별 50계약
- 금리 품목 : 200계약
- 통화 품목 : 100계약
- 일반상품 품목 : 50계약

○ 유동성관리품목의 관리 (145조 2항 : 2006/5/22 개정, 5/26 시행)

- 거래소는 유동성관리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하여 유동성관리기간 (최장 18개월) 동안 거래부진 원인 등을 분석하고 그 원인의 해소 등 거래가 활성화 되도록 함

○ 유동성관리품목의 지정제외 기준 (145조 3항 : 2006/5/22 개정, 5/26 시행)

- 유동성관리품목 지정 후 매월 최초거래일의 직전 3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이 3회 연속 유동성관리기준수량 이상으로 되는 경우
- 유동성관리기간의 종료 직후 3개월간의 일평균 약정수량이 유동성관리기준수량 이상으로 되는 경우
- 상장폐지예고품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 유동성관리품목의 지정시기 및 공표 (145조 4항 : 2006/5/22 개정, 5/26 시행)

- 거래소는 유동성관리품목의 지정 및 지정제외 사실 등을 기준 해당일의 익일(매월의 최초거래일)에 지체없이 공표함

- 상장폐지예고품목 지정기준 (146조 1항 : 2006/5/22 개정, 5/26 시행)
 - 유동성관리품목 지정후 유동성관리기간 종료 직전 3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이 상장폐지예고기준수량(유동성관리기준수량의 1/3)에 미달하거나
 - 유동성관리기간 종료 직전 3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이 상장폐지예고기준수량 이상인 경우, 유동성관리기간 종료 직후 3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이 유동성관리기준수량에 미달하는 품목을 상장폐지예고품목으로 지정함

- 상장폐지예고품목 지정의 유예 (146조 2항 : 2006/5/22 개정, 5/26 시행)
 - 거래소는 동종 또는 유사 품목의 상장 여부, 단기간 이후의 재상장 가능성,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장폐지예고품목의 지정을 6개월 이내의 기간 유예할 수 있음

- 상장폐지예고품목 지정 등의 공표 (146조 3항 : 2006/5/22 개정, 5/26 시행)
 - 거래소는 상장폐지예고품목의 지정사실 등을 해당일의 익일에 지체없이 공표함

< 주식옵션 행사가격 설정간격 >

행사가격(S)	기 존		개 정	
	간격(A)	ATM± 4간격(B)/S	간격(A)	ATM± 4간격(B)/S
5천원 미만	100원	8.0% ~	100원	8.0% ~
5천원 ~ 1만원 미만	250원	10 ~ 20%	200원	8 ~ 16%
1만원 ~ 2만원 미만	500원	10 ~ 20%	500원	10 ~ 20%
2만원 ~ 5만원 미만	1,250원	10 ~ 25%	1천원	8 ~ 20%
5만원 ~ 10만원 미만	2,500원	10 ~ 20%	2천원	8 ~ 16%
10만원 ~ 20만원 미만	5천원	10 ~ 20%	5천원	10 ~ 20%
20만원 ~ 50만원 미만	12,500원	10 ~ 25%	1만원	8 ~ 20%
50만원 ~ 100만원 미만	2만5천원	10 ~ 20%	2만원	8 ~ 16%
100만원 이상	5만원	~ 20%	5만원	~ 20%

○ 외화(증거금)의 종류 확대 (28조 1항, 별지 10호 서식 : 2006/7/19 개정, 10/2 시행)

— 현금(원화)에 갈음하여 거래증거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외화의 종류를 확대함

- 환금성, 선물거래 참여비중 및 국내은행의 취급여부 등을 감안하여 기존 7개국 통화 외에 스위스 프랑화 및 캐나다 달러화를 추가

* 기존 외화 : 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 유럽연합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홍콩 달러화, 호주 달러화, 싱가포르 달러화

○ 외화증거금제도의 시행일 지정 (부칙 : 2006/7/19 개정, 10/2 시행)

- 관계법규, 시스템 반영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이 유보되고 있는 외화 증거금제도 관련규정은 200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함

< 외화증거금제도의 주요내용 >

외화의 종류 (9개국 통화)	- 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 유럽연합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홍콩 달러화, 호주 달러화, 싱가포르 달러화, 스위스 프랑화 및 캐나다 달러화 (28조 1항)
외화의 평가가격	- 기준시세 × 사정비율 (28조 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원 미만 절사 · 산출시기 : 매일 · 사정비율 : 95%
기준시세	-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해 지정 · 고시되는 날의 매매기준율 (28조 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달러화 : 당일 15시 30분에 산출되어 익일 8시 30분에 지정 · 고시되는 매매기준율 · 기타 외화 : 당일 8시 30분에 산출 · 지정 · 고시되는 재정된 매매기준율
기준시세 등의 변경	- 거래소는 외화의 담보가치 변동, 환금의 제한 기타 시장관리상 필요시 외화의 종류를 제한하거나 외화의 기준시세 및 사정비율 그 밖에 외화의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있음 (28조 4항)

○ 시장조성자의 자격 (2조의2 : 2006/11/13 개정, 12/18 시행)

- 시장조성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소속 임 · 직원 중에서 시장조성담당자를 지정하고 이를 사전에 거래소에 통지함

○ 시장조성호가의 제출 종목 (2조의3 : 2006/11/13 개정, 12/18 시행)

— 시장조성 결제월은 선택과 집중을 위하여 최근월물로 한정하되, 최종 거래일에 해당하는 요일과 동일한 전주의 요일(휴장일인 경우 순연)부터는 차근월물을 시장조성 대상으로 함

- 다만, 일반상품선물거래는 계절적 수요에 따라 원월물의 유동성도 높을 수 있으므로 결제월을 제한하지 않고 1개 이상의 결제월로 함

— 옵션거래의 경우 선물거래와 동일한 결제월에 속하는 등가격(ATM) 1개와 등가격에 연속하는 2개의 내가격(ITM) 및 외가격(OTM)의 5개로 함

○ 시장조성호가의 제출가능 기간 (2조의3 : 2006/11/13 개정, 12/18 시행)

— 시장조성호가를 의무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기간(시장조성기간)은 동일대상물거래(실물인수도방식의 선물거래, 현금결제방식의 선물거래 및 옵션거래중 동일한 거래 및 대상물 또는 기초자산이 동일한 것)의 상장일이 속하는 분기를 포함하여 8개 분기 즉 24개월(유동성관리품목인 경우에는 상장폐지예고지정일의 전일까지)로 함

— 거래소는 시장조성품목의 유동성 수준, 시장조성자가 아닌 자의 시장 참여 정도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시장조성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 서면에 의한 시장조성계약 체결 (2조의4 : 2006/11/13 개정, 12/18 시행)

— 시장조성계약은 서면으로 다음 사항에 대해 계약을 체결함

- 시장조성자의 관련법규의 준수 및 성실한 시장조성의무
- 시장조성하고자 하는 품목 및 품목별 시장조성개시일

- 선물관련규정에 따른 시장조성기간의 변경, 시장조성제도의 변경 등 조치, 시장조성실적 평가 등급 공표에 대한 이의제기나 민·형사상의 조치 금지 등 거래소의 면책 사항
- 거래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대상물거래의 시장조성자의 수를 적정하게 하거나 시장조성계약의 체결거부 또는 중도해지 등을 할 수 있음
- 특정한 동일대상물거래에 집중되는 경우
 -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동일대상물거래가 과도하게 많은 경우
 - 시장조성실적의 평가 등에 비추어 시장조성을 태만히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거래의 공정성 또는 건전성을 저해하였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 시장조성계약기간은 분기단위로 함
- 분기 종료 7일 전까지 시장조성자가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지 않으면 다음 분기까지 계약기간을 자동 연장함
- 호가가 없는 경우의 의무호가 제출기준 (2조의5 : 2006/11/13 개정, 12/18 시행)
- 매도호가 없는 경우에는 상한가(옵션거래의 경우 호가최고한도가격)보다 호가가격단위(1 Tick) 만큼 낮은 가격을 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으로 함
- 매수호가 없는 경우에는 하한가(옵션거래의 경우 호가최저한도가격)보다 1 Tick만큼 높은 가격을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으로 함

○ 옵션거래의 시장조성호가 제출의무 발생기준 (2조의6 : 2006/11/13 개정, 12/18 시행)

— 옵션거래의 경우 최우선매도호가와 최우선매수호가의 간격이 최우선매수호가 가격의 15/100(3년 국채선물옵션거래 및 5년 국채선물옵션거래의 경우에는 25/100)를 초과하면 호가간격을 줄이는 시장조성호가를 의무적으로 제출함

○ 시장조성계좌개설 등의 거래소 신고 (2조의7 : 2006/11/13 개정, 12/18 시행)

— 시장조성자가 시장조성계좌를 개설·변경 또는 폐쇄하는 때에는 시행일의 7일 전에 거래소에 신고함

○ 접속거래시간중 시장조성호가의 의무제출 면제 (2조의8 : 2006/11/13 개정, 12/18 시행)

— 접속거래시간 중 매도·매수의 최우선호가 간격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면 시장조성호가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나, 다음의 접속거래시간 중에는 제출의무가 없음 (자발적인 제출은 가능)

- 직전 약정가격이 상하한가 등인 경우
- 상한가 등(하한가 등)에 매수(매도)의 호가가 있는 경우
- 장중 단일가 결정후 20분간
- 주식시장의 Random End로 단일가호가시간이 연장되는 경우 그 시간
- 주식시장의 단일가 미결정으로 단일가호가시간이 연장되는 경우 그 시간

○ 시장조성계좌를 통한 의무호가 이외의 제출가능호가(권리호가) (2조의9 : 2006/11/13 개정, 12/18 시행)

— 시장조성자는 시장조성계좌로 의무호가 이외에 동일 품목에 대한 다음의 호가를 임의로 제출 가능

- 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 이상의 매수의 지정가호가 또는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 이하의 매도의 지정가호가(체결가능 지정가호가)
- 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 이상의 매도의 지정가호가 또는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 이하의 매수의 지정가호가(시장폭 확대 및 시장심도 심화의 지정가호가)

○ 주식관련상품에 대한 거래증거금의 감경 (2조의10 : 2006/11/13 개정, 12/18 시행)

— 주식관련상품의 경우 시장조성계좌를 통하여 성립된 거래에 대한 거래증거금은 일반 계좌 거래증거금액의 80% 수준으로 감경

○ 시장조성실적의 평가 (2조의11 : 2006/11/13 개정, 12/18 시행)

— 거래소는 동일품목에 대한 시장조성실적을 분기별로 평가

- 거래소는 평가실적의 순위를 공표할 수 있음
- 거래소는 시장조성실적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시장조성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시장조성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함

— 시장조성실적의 평가는 시장조성호가 제출의무의 성실히행평가(의무이행평가) 100점과 시장조성계좌를 통한 거래량 평가(거래량평가) 100점으로 구분하되, 순위는 합산점수로 결정함

- 시장조성자에 대한 대가의 지급 (2조의12 : 2006/11/13 개정, 12/18 시행)
 - 시장조성품목별로 시장조성자에게 지급할 대가총액은 시장조성실적의 평가기간동안 동일대상물거래에서 징수한 거래수수료의 80%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함
 - 대가총액의 50%(의무이행 대가총액)는 의무이행평가기준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거래량 대가총액)은 거래량평가기준으로 지급
 - 거래소는 거래수수료의 수준을 변경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가율을 변경할 수 있음
 - 대가는 시장조성평가대상 분기종료후 1개월 이내에 지급

- 시장조성품목의 호가한도수량 축소 (7조 1항, 87조 1항, 94조 1항 : 2006/11/13 개정, 12/18 시행)
 - 시장조성하는 품목에 속하는 모든 종목의 호가한도수량을 일반 품목의 경우보다 1/10로 축소
 - 선물거래 : 1,000계약 → 100계약, 옵션거래 : 5,000계약 → 500계약
 - 시장조성자를 포함한 모든 회원 및 투자자에게 적용

- 시장조성계좌를 통한 호가의 별도 구분 (별표 8, 80조 2호 : 2006/11/13 개정, 12/18 시행)
 - 시장조성계좌를 통한 호가는 일반의 자기거래호가와 구분하여 별도의 코드로 입력함
 - 시장조성호가와 권리호가를 구분하여 별도 코드로 입력

— 시장조성계좌를 통한 모든 호가(의무호가 및 권리호가)는 지정가호가
의 경우에만 입력을 허용함

○ 국채선물 등의 시장조성자제도 폐지 (25조 7항, 44조 1항 : 2006/11/13 개정,
12/18 시행)

— 국채선물거래 등에 적용한 기존 시장조성자제도를 폐지하여 품목별
시장조성자제도의 형평을 도모함

○ 코스피 200 옵션의 행사가격(종목)의 수 확대 (72조 1항, 73조 1항 :
2006/11/13 개정, 12/18 시행)

— 행사가격의 최초설정

- 거래개시일에 설정하는 행사가격의 수는 분기월물의 경우 5P간격의
5개(ATM±2)에서 7개(ATM±3)로 확대하고, 기타월물의 경우에는
2.5P간격의 9개(ATM±4)에서 13개(ATM±6)로 확대함

— 행사가격의 추가설정

- 거래개시일의 익일 이후에는 분기월물의 경우 OTM 또는 ITM이 2
개 이하인 경우 5P간격으로 3개가 되는 때까지, 기타월물의 경우
OTM 또는 ITM이 5개 이하인 경우 2.5P간격으로 6개가 되는 때까
지 행사가격을 추가 설정함

< 코스피200옵션의 종목 확대 >

구 분		상장후 3개월 경과되지 않은 3·6·9·12월		기타 월 및 상장후 3개월 경과된 3·6·9·12월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최 초 설 정	간격	5P	5P	2.5P	2.5P
	수	ATM±2(5개)	ATM±3(7개)	ATM±4(9개)	ATM±6 (13개)
추가설정		ITM 또는 OTM 이		ITM 또는 OTM 이	
		1개 이하인 경우 2개가 되도록 추가설정	2개 이하인 경우 3개가 되도록 추가설정	3개 이하인 경우 4개가 되도록 설정	5개 이하인 경우 6개가 되도록 설정

○ 주식관련상품 상·하한가 등의 단일가호가간 다단계 수량배분방법 개선

(94조의2 : 2006/11/13 개정, 12/18 시행)

— 코스피 200 선물 등 주식관련상품의 경우 상·하한가(옵션의 경우 호가최고·최저한도가격)의 단일가호가간에는 9단계의 수량우선 원칙을 적용하여 배분함

- 수량이 많은 호가가 다음의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수량이 적은 호가에 우선함

< 상·하한가 등의 단일가호가간 9단계별 배분수량 >

배분단계	단계별 배분수량	
	선물	옵션
1단계	1계약	5계약
2단계	5계약	25계약
3단계	10계약	50계약
4단계	20계약	100계약
5단계	50계약	250계약
6단계	100계약	500계약
7단계	200계약	1,000계약
8단계	잔량의 1/2	
9단계	잔량	

15.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 사후증거금의 예탁시한 개선 (28조 5항 : 2006/10/27 개정, 11/13일 시행)

— 사후 위탁증거금의 예탁시한을 기존 ‘당일중 회원이 정하는 시간’에서 ‘당일중 회원이 정하는 시간 또는 그 다음날 10시 이내에서 회원이 정하는 시간’으로 변경

- 회원이 당일 또는 익일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사후 위탁증거금의 당일 납부에 따른 시간축박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결제안정성을 제고함

- 기본예탁금의 차등적용 (53조 1항 : 2006/10/27 개정, 12/18 시행)
 - 적격기관투자자와 비적격기관투자자간 구분없이 동일하게 1,500만원 이상으로 적용되는 기본예탁금을 ‘know your customer rule’에 따라 회원이 비적격기관투자자에 대해 3단계로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세칙에서 정하도록 함
 - 전문지식 구비 및 고도의 복합투자전략을 구사하여 전문적이고 건전한 투자자로서 수익창출가능성이 높은 투자자는 1단계 적용
 - 적격기관투자자를 제외한 신규 투자자의 시장진입시에는 무조건 2단계 이상을 적용하여 현행보다 강화

- 기본예탁금의 적용 면제 (53조 1항 단서 : 2006/10/27 개정, 12/18 시행)
 - 사후위탁증거금계좌 및 옵션매수전용계좌(옵션을 매수 또는 매수 미결제약정의 반대매매만 하는 계좌)의 경우 기본예탁금의 적용을 면제

- 위탁자별 미결제약정 보유제한수량의 차등적용 (73조의2 : 2006/10/27 개정, 12/4 시행)
 -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수탁할 수 있는 미결제약정 보유한도를 기존의 업무규정(265조)에서 수탁계약준칙으로 이관하여 규정체계를 정비하고 세칙에서 보유한도를 차등적용
 - 주가지수선물 순미결제약정 보유한도의 위탁자별 차등적용
 - 모든 투자자(코스피 200 선물의 경우 비적격기관투자자)에 대해 5,000계약 이내에서 ‘know your customer rule’에 따라 위탁자의 재무건전성 및 신용상태 등을 파악하고 있는 회원이 위탁자의 신용 등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함

- 코스피 200 선물거래의 경우 적격기관투자자는 7,500계약을 최대한도(최저한도 5,000계약)로 하여 직전월의 미결제보유현황 등을 고려하여 미결제약정보유한도를 확대하거나 축소함

16.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시행세칙

○ 미국달러선물의 계약당 주문증거금 변경 (20조 1항 1호 가목 : 2006/2/2 개정, 2/6 시행)

— 미국달러선물의 계약당 주문증거금을 기존 200만원에서 환율(증거금기준가격) 구간별로 다음과 같이 변경함

증거금기준가격*	계약당 주문증거금
750.00 이상 ~ 850.00 미만	130만원
850.00 이상 ~ 950.00 미만	145만원
950.00 이상 ~ 1,050.00 미만	160만원
1,050.00 이상 ~ 1,150.00 미만	175만원
1,150.00 이상 ~ 1,250.00 미만	190만원

* 증거금기준가격이 750.00 미만인 경우 계약당 주문증거금은 매 100.00원 간격으로 130만원에서 15만원씩 차감하여 산출되는 금액으로 하며, 증거금기준가격이 1,250.00 이상인 경우 계약당 주문증거금은 매 100.00원 간격으로 190만원에서 15만원씩 가산하여 산출되는 금액으로 함

○ 엔선물 및 유로선물의 위탁증거금률 (19조 1항, 22조 1항 : 2006/5/22 개정, 5/26 시행)

— 위탁증거금률은 거래증거금률의 약 1.5배 수준에서 결정하므로 엔선물 및 유로선물의 위탁증거금률을 3.5%로 함

- 유지증거금률은 거래증거금률과 동일한 2.5%로 함

○ 엔선물 및 유로선물의 계약당 주문증거금 (20조 1항·별표 : 2006/5/22 개정, 5/26 시행)

— 미국달러선물과 동일하게 환율변동에 상응한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환율구간별 계약당 주문증거금액을 사전에 설정함

— 계약당 주문증거금액은 거래편의성을 감안하여 개별 환율구간의 최대값에 정산차금승수와 위탁증거금률을 곱하여 산출된 증거금액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함

- 최근 환율기준으로 계약당 주문증거금액은 엔선물이 150만원, 유로선물이 220만원임

○ 외화(증거금)의 종류 확대 (16조 1항 : 2006/7/19 개정, 10/2 시행)

— 현금(원화)에 갈음하여 거래증거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외화의 종류를 확대함

- 환금성, 선물거래 참여비중 및 국내은행의 취급여부 등을 감안하여 기존 7개국 통화 외에 스위스 프랑화 및 캐나다 달러화를 추가

- 외화증거금제도의 시행일 지정 (부칙 : 2006/7/19 개정, 10/2 시행)
 - 관계법규, 시스템 반영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이 유보되고 있는 외화 증거금제도는 200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함

- 주식관련상품의 선물·옵션기본예탁금제도 개선 (31조 : 2006/11/13 개정, 12/18 시행)

— 선물·옵션기본예탁금의 3단계 차등적용

- 코스피 200 선물, 코스피 200 옵션, 스타지수선물 및 주식옵션 등 주식관련상품의 선물·옵션기본예탁금은 ‘know your customer rule’에 따라 파악된 위탁자별 신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3단계로 차등 적용함

구 분	기본예탁금액
1단계	5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2단계	1,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3단계	3,000만원 이상

- 당해 회원에 계좌를 최초로 설정한 위탁자에 대하여는 2단계 또는 3단계를 적용함

— 회원의 선물·옵션기본예탁금 징수기준 마련 의무

- 회원은 개개 위탁자별로 적용될 단계, 단계별 적용금액 및 적용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선물·옵션기본예탁금적용기준)을 정해야 함
- 회원이 기본예탁금의 적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투자자에 대한 주지 등을 위하여 사전에 공표하고 적용일의 7일 전까지 거래소에 서면 통지하도록 함

○ 주가지수선물에 대한 미결제약정 보유 제한수량의 차등적용

(52조의2 1항 : 2006/11/13 개정, 12/18 시행)

— 위탁자가 보유할 수 있는 주가지수선물거래의 순미결제약정수량은 다음의 수량으로 함

- 적격기관투자자(사전에 회원에게 신청한 적격기관투자자에 한함)의 코스피 200 선물거래의 경우 : 5,000계약 이상 7,500계약 이내에서 다음의 방법에 해당하는 수량

구 분		순미결제약정 제한수량
전월 제한수량의 90% 초과 거래일	10일 이상	전월 제한수량 + 500계약
	1일~10일 미만	전월 제한수량
	없음	전월 제한수량 - 500계약

- 스타지수선물거래 및 일반위탁자(미신청 적격기관투자자 포함)의 코스피 200 선물거래의 경우 : 5,000계약 이내에서 회원이 위탁자과 약사항 등을 감안하여 위탁자별로 정한 수량

17. 시장감시규정

○ 회원제재의 병과대상의 정비 (24조 1항 : 2006/12/1 개정 · 시행)

— 회원징계와 회원에 대한 개선 · 시정요구의 병과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회원제재의 실효성을 제고

- 회원제재 대상자 권리보호에 관한 징계절차의 정비 (26조, 27조의2 : 2006/12/1 개정·시행)
 - 회원제재시에 회의일 10일전까지 징계사유·근거 및 예정내용과 의견진술 일시·장소 등을 사전통보하고 위원회에서의 의견진술방법을 구두 및 서면방식을 모두 인정하고 징계 등을 한 경우 회원에게 고지
 - 재심 명칭을 당사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으로 변경하는 한편, 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권재심 등의 사항을 규정으로 이관함으로써 회원제재절차상의 적법성을 강화

- 회원에 대한 비징계적 조치의 다양화 (22조 4항 : 2006/12/1 개정·시행)
 - 회원에 대한 업무개선이나 원상회복을 위한 시정요구 외에 예방제도 목적의 주의촉구 등 회원의 자율적 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비징계적 조치를 도입
 - 주의촉구 공문발송, 이행확약서 징구 등

- 시장감시위원회의 전자문서 사용 근거 마련 (5조 2항 : 2006/12/1 개정·시행)
 - 회원에 통보하는 서면에 전자문서를 포함시킴으로써 심리 및 감리업무의 편의성을 제고

-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공표대상의 정비 (5조 3항·4항 : 2006/12/1 개정·시행)
 - 불공정거래예방을 위한 공표사항을 현실에 맞게 '소수지점거래집중종목'에서 '투자주의사항'으로 변경

- 투자주의사항 중 유가증권·코스닥시장에 모두 공표하는 사항은 규정으로 정하되, 코스닥시장에서만 공표하는 종가급변종목 등 시장 특성을 감안하여 시장별로 개별 공표하는 사항은 세칙으로 정함
- 기한 계산의 명확화 (6조 2항 : 2006/12/1 개정·시행)
- 회원의 시장감시위원회에 대한 보고기일의 종료일이 토요일인 경우 보고시기를 그 다음 거래일로 순연함으로써 회원의 보고 편의를 제고
- 민원·분쟁현황 보고시기의 개선 (7조 4항 : 2006/12/1 개정·시행)
- 회원에 대한 고객의 민원·분쟁현황의 보고시기를 '월별'에서 '분기별'로 변경하여 회원의 업무부담을 경감
- 외국거래소와의 정보교환을 위한 심리자료 등 징구근거 마련 (14조 1항 : 2006/12/1 개정·시행)
- 국경간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외국거래소와의 정보교환 및 공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외국거래소가 요청한 심리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
- 감리요원의 명칭 변경 (2조 10항, 8조, 9조, 14조, 15조, 17조, 20조 : 2006/12/1 개정·시행)
- 시장감시·심리·감리·연계감시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감리요원을 시장감시요원으로 명칭 변경

-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 관련조문의 정비 (4조 1항 11호, 2항 9호 : 2006/12/1 개정·시행)

- 개별시장에서의 규제대상행위에 일부 포함된 시장간 연계거래관련 사항을 시장간 연계거래에서의 규제대상 행위로 이관

18.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 규정에서 위임된 투자주의사항의 명시 (3조 : 2006/12/1 개정·시행)

- 투자주의사항으로 종가급변종목·상한가잔량상위종목 및 단일계좌거래량상위종목을 명시

- 불공정거래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기준의 명시 (6조의2, 6조의3 : 2006/12/1 개정·시행)

- 내부지침에서 규정하던 불공정거래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세칙으로 이관

- 풍문수집 근거의 상향조정 (7조 2항 : 2006/12/1 개정·시행)

- 상장법인 수시공시 사항 등에 대한 풍문수집의 근거규정을 내부지침에서 세칙으로 이관

- 정기감리의 실효성 제고 (12조 3항·4항 : 2006/12/1 개정·시행)
 - 시장감시위원회가 정기감리계획을 최종결정한 경우에 회원에게 통보하거나 설명함으로써 감리업무의 신뢰성 및 실효성을 제고
 - 거래내용 분석 결과, 정기감리대상으로 선정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 이를 회원에게 미리 예고함으로써 회원의 자발적 불공정거래 예방기회를 부여

- 구체적인 감리실시방법 근거의 상향조정 (12조 1항·2항, 12조의2, 12조의3 : 2006/12/1 개정·시행)
 - 내부지침으로 운영하던 정기감리 및 수시감리 실시 방법 등을 세칙으로 이관
 - 감리범위 확대 및 병합에 관한 사항을 세칙으로 이관

- 회원에 대한 비징계성 조치요구기준의 마련 (14조 2항 : 2006/12/1 개정·시행)
 - 회원에 대한 비징계성 조치요구유형으로 추가된 '이행확약서 징구' 및 '주의촉구'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

- 감리에 따른 회원조치기준의 개선 (14조 3항·4항 : 2006/12/1 개정·시행)
 - 다수의 위규행위에 대한 회원조치시의 제재수준은 그 중 책임이 중한 징계로 가중하여 일괄조치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감리횟수 계산에 있어서 복수의 감리건을 병합처리하여 가중 조치된 경우에는 단일의 조치건으로 간주

- 회원 징계 및 임·직원의 징계요구시 감경기준의 마련 (18조 : 2006/12/1 개정·시행)
 - 회원 징계의 가중·감경요소로서 내부통제 평가결과를 신설
 - 회원의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를 할 경우 당해 임직원에게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요구의 종류 및 내용을 감경
 - 상훈법에 의한 표창,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장관이상의 표창, 금감위위원장·금감원장·거래소이사장·시장감시위원장의 표창을 받은 경우

- 징계공표에 관한 절차 및 내용의 명확화 (20조 : 2006/12/1 개정·시행)
 - 내부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 또는 징계요구에 관한 공표사항을 세칙으로 이관
 - 회원의 이의신청 결과 제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 회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재차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약식제재금 부과대상행위별 부과기준 및 감면사유의 마련 (23조, 별표 2 : 2006/12/1 개정, 2007/1/1 시행)
 - 내부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약식제재금 부과대상인 경미한 위규행위 유형을 세칙으로 이관
 - 경미한 위규행위별로 구체적인 약식제재금 부과기준 및 감면사유를 마련
 - 자기주식매매거래관련 사항 위반 : 거래량/신고수량 대비 위반비율에 따라 20만원,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등 5단계로 차등 부과

- 프로그램매매호가 보고의무 위반 : 위반금액에 따라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등 4단계로 차등 부과
 - 호가·주문위반 및 수탁관련 사항 위반 : 규정최고액의 범위내에서 위반행위의 성격, 횡수, 자발적 노력 등을 감안하여 시장감시위원장이 결정
- 규율위원회에서의 의견진술절차 신설 (21조 8항 : 2006/12/1 개정·시행)
- 회원제재시 회원 등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기회 등의 권리보호 절차를 규율위원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 규율위원회에서의 의견진술을 위한 사전통지기간은 10일에서 3일로 축소
 - 다만, 시장감시위원회에서의 의견진술을 위한 사전통지서에 규율위원회에서의 의견진술방법을 병기할 경우에는 규율위원회 통지절차를 생략
- 이의신청 절차의 정비 (22조 : 2006/12/1 개정·시행)
- 이의신청 각하사유에 해당할 경우 무조건 각하하던 것을 부득이한 사유로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허용
 - 시장감시규정으로 이관된 직권재심에 관한 조항을 삭제
- 심리자료 청구절차 개선 (8조, 9조 : 2006/12/1 개정·시행)
- 외국법인 등이 증권회사 전용계좌를 이용한 투자에 있어서 당해인의 계좌정보 및 배분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금융실명법 개정에 따라 심리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동법에서 규정하는 양식을 준용하도록 심리자료 요청 서식을 변경

19. 분쟁조정규정

- 분쟁조정대상의 조정 (3조 : 2006/12/1 개정·시행)
 - LP제도, ELW 등 새로운 상품 및 제도 도입으로 법에서 정한 시장내 거래관련분쟁이 명백함에도 분쟁의 조정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분쟁조정대상을 법에서 정한 대상과 일치시킴
- 시장감시위원회 회부전 종결처리사유의 정비 (9조 1항 1호 : 2006/12/1 개정·시행)
 - 수사기관이 수사중인 조정신청사건을 타 기관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새로이 종결처리사유로 함
- 분쟁조정 취하방법의 다양화 (10조, 18조 4항 : 2006/12/1 개정·시행)
 - 서면에 의한 취하외에 구술에 의한 취하를 허용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

- 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 자격 및 운영방법 명시 (13조 : 2006/12/1 개정·시행)
 - 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목적을 명시하고 Pool제에 따라 개별 조정부제로 운영하는 분쟁조정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자격·운영방법 등을 세칙에서 규정으로 이관하여 투명성을 제고

- 소송지원제도의 개선 (22조 1항 : 2006/12/1 개정·시행)
 - 소송지원 대상사건을 조정결정 불수락 사건외에 조정결정전 회원의 소 제기 등이 부당한 경우 등으로 확대

20. 분쟁조정규정 시행세칙

- 구술에 의한 취하방법의 명시 (9조 2항 : 2006/12/1 개정·시행)
 - 신청인이 구술로 취하할 경우 녹취 등을 통해 취하의사를 확인

- 소송지원 중단사유의 명시 (20조 4항 : 2006/12/1 개정·시행)
 - 소송지원 결정후 신청인이 소송당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일정한 경우 시장감시위원장이 소송지원을 중단

IV. 증권업협회 규정

1.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 공모대상 주식의 범위 명확화 (2조 2항 : 2006/2/15 개정, 2/20 시행)
 - 증권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외국주식예탁증서를 공모대상 주식의 정의에 포함

- 인수규칙 적용제외 주권의 명시 (2조 3항 : 2006/2/15 개정, 2/20 시행)
 -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투자회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융자회사 및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권,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협회장이 인정하는 주권

- 외국증권거래소 상장기업에 대해 대표주관계약체결시한 면제
(3조 : 2006/2/15 개정, 2/20 시행)
 - 외국증권거래소에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가 상장되어 있는 외국법인 등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는 경우 대표주관계약체결시한을 면제함

○ 외국기업에 대한 우리사주조합 배정의무 면제 (9조 : 2006/2/15 개정, 2/20 시행)

— 외국기업에 대해 기업공개, 공모증자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배정의무를 면제함

○ 주관회사·수탁회사 자격제한의 일부 완화 (6조, 12조, 14조 : 2006/10/10 개정, 10/11 시행)

— 증권선물거래소 지분분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증권금융 및 자산운용 회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증권선물거래소의 IPO 및 무보증사채 발행시 주관회사 및 수탁회사 자격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

- 종래에는 인수업을 허가받은 45개 증권회사 중 28사가 증권선물거래소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4사가 임원겸직 등의 이해관계가 있어 증권선물거래소의 IPO 및 무보증사채 발행시 주관회사로서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었음

2.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 증권회사 직원의 채용제한범위 축소 (4-4조 : 2006/2/15 개정, 2/20 시행)

— 증권회사 직원의 채용제한 범위를 징계면직자로 한정하고, 정직 및 감봉처분을 받은 자는 채용제한 대상에서 제외

< 채용제한기간 >

문책의 종류	기 존	개 정
징계면직·금고 이상의 실형	5년	좌동
정직	2년	-
감봉(4월 이상)	1년	

○ 등록전문인력 제재제도 (4-28조, 4-38조, 4-42조, 6-7조 : 2006/2/15 개정, 2/20 시행)

- 투자상담사, 금융자산관리사 및 조사분석담당자 등 등록전문인력에 대한 제재양정기준 적용방법을 증권회사의 문책수위에 연동되는 것으로 일원화함
- 자격취소·등록취소·등록의 효력정지로 삼원화되어 있는 제재의 종류를 “자격취소”와 “등록의 효력정지”의 두 가지로 단순화
 - 위규행위의 종류와 관계없이 징계면직자에 대해서는 자격취소(조사 분석담당자의 경우에는 등록의 효력 정지) 조치가 부과되며 자격취소(투자상담사 및 금융자산관리사 시험합격 취소) 조치를 받은 자는 5년간 증권업협회가 주관하는 증권전문 인력자격시험에 응시가 불가함

< 등록전문인력 제재양정세부기준 >

증권회사 징계처분결과	제재기준(등록거부기간)
징계면직	자격취소(5년)
정직	등록의 효력정지(정직월수+6월)
감봉(5월 ~ 6월)	등록의 효력정지(3월)
감봉(3월 ~ 4월)	등록의 효력정지(2월)
감봉(1월 ~ 2월)	등록의 효력정지(1월)
견책	-

*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다음해 1월 1일부터 보수교육 이수시까지 등록의 효력정지

- 선물거래상담사의 보수교육 이수 의무 강화 (4-35조 1항 : 2006/2/15 개정, 2/20 시행)
 - 2006년부터 선물거래상담사도 전담투자상담사와 마찬가지로 1년에 연간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IPO 주관기업에 대한 조사분석자료 공표의무화 (1-15조의2 1항 : 2006/4/5 개정, 4/10 시행)
 - 일반투자자들이 신규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증권회사에 대해 IPO 업무를 주관한 신규상장 기업에 대한 조사분석자료의 공표를 의무화
 - 조사분석자료 의무공표 회수는 상장주권의 매매거래 개시일로부터 1년간 4회 이상

- 조사분석업무의 중단 등으로 조사분석자료 공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표의무 면제

○ 조사분석자료 공표중단시 당해 사실 고지의무화 (1-15조의2 3항 : 2006/4/5 개정, 4/10 시행)

— 증권회사가 최근 1년간 3회 이상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기업에 대하여 향후 6월 이내의 기간 동안 후속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

- 동 사실을 조사분석자료 또는 당해 증권회사의 홈페이지 등에 고지토록 의무화

○ 통합계좌의 잡수익처리 근거 폐지 (2-4조, 2-5조, 2-17조 : 2006/4/5 개정, 4/10 시행)

— “위탁매매계약”의 특성상 증권계좌에 대해 소멸시효를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잡수익처리 근거규정을 폐지

- 잡수익으로 처리하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이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환급하며, 당해 환급액은 잡손실로 처리하도록 명시

- 기존에 증권회사는 고객 계좌가 통합계좌로 분류된 후 4년 6월이 경과하면 고객에게 사전 고지한 후 당해 계좌의 예탁자산을 잡수익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고객으로부터 인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환급하였음

— 아울러 고객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증권회사가 자율적으로 제정·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 예탁금 이용료 산정기준을 삭제

- 상위규정 개정사항 반영 (별표 6, 6-2 : 2006/4/5 개정, 4/10 시행)
 - “외국환거래규정”개정으로 금감위의 증권업감독규정 중 일반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외화증권의 범위제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외화증권거래설명서 중 일반투자자의 투자대상에 관한 내용을 삭제
 - 증권회사는 반기동안 매매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예탁자산 평가액이 금감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반기말 잔고통보의무가 면제되는 바,
 - 금감원장이 정하는 금액이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어 동 내용을 신용거래설명서 등에 반영

- 선물거래상담사 등록 당해연도의 보수교육 이수 의무 면제 (4-35조 : 2006/5/10 개정, 5/11 시행)
 - 선물거래상담사의 보수교육 이수 의무가 전담투자상담사와 동일 수준으로(1년 1회) 상향조정 되었던 바
 - 선물거래상담사에 대해서도 전담투자상담사와 동일하게 당해연도의 보수교육 이수 의무를 면제

- 준법감시인 및 대표이사 승인금액 자율화 (1-23조 2항 : 2006/6/26 개정, 6/30 시행)
 - 준법감시인 또는 대표이사 승인금액을 증권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자율화
 - 기존에는 편익제공의 규모별로 100만원 초과시에는 준법감시인, 200만원 초과시에는 대표이사의 사전 승인 등을 의무화

- 자산관리자 소속 기관장에 대한 통지의무 폐지 (1-23조 3항·4항, 1-24조 5항 : 2006/6/26 개정, 6/30 시행)
 - 동일 자산관리자에게 제공된 편익의 경제적 가치의 총계가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자산관리자에 대한 추가 편익의 제공은 당해 자산관리자 소속 기관장에게 편익제공 내역을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던 제한을 폐지
 - 다만, 자산관리자에게 부당한 편익이나 이득이 제공된 경우 당해 자산관리자 소속 기관장에게 부당편익 등의 제공내역을 통지하고,
 - 자산관리자 소속 기관의 장이 서면에 의하여 소속 자산관리자에 대한 편익제공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

- 경조비·조화 등의 제공한도 폐지 (1-24조 4항 : 2006/6/26 개정, 6/30 시행)
 - 자산관리자에 대한 경조비·조화·화환 등의 제공한도를 20만원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함

- 기록보관 의무화 및 내부통제기준 필수기재 사항 명시 (1-23조 4항, 6-3조 3항·4항 : 2006/6/26 개정, 6/30 시행)
 - 자산관리자에 대한 편익제공 내역을 3년 이상의 기간동안 기록·보관하도록 의무화
 - 편익제공과 관련된 내부통제기준 제·개정시 협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 증권회사가 정한 내부통제기준이 내부통제 기능의 효율적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권회사에 대한 협회의 개정요구 근거를 마련

○ 조사분석자료 공표제한 범위의 확대 (1-15조 1항 : 2006/10/10 개정, 10/11 시행)

— 증권회사가 공개입찰 방식에 의한 지분매각 또는 당해 지분매입을 위한 중개·주선·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중인 경우, 해당 법인 및 상대방인에 대한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및 특정인 제공이 금지됨

• 증권회사가 공개입찰 방식에 의한 지분매각과 관련하여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계약체결 시점부터 당해 매각지분 발행법인에 대한 조사분석자료의 공표가 금지됨

* 당해 지분매입을 위하여 입찰참여의향서(Letter of Internet)를 제출한 기업에 대해서도 당해 의향서 제출시점부터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등이 금지됨

• 증권회사가 공개입찰 방식에 의한 매각지분의 매입을 위하여 특정법인에 대한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지분매입을 의뢰한 법인이 매각지분 매입을 위하여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당해 법인 및 매각지분 발행법인에 대한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등이 금지됨

○ 주가연계증권 등에 대한 대고객 위험고지 강화 (1-8조 4항 : 2006/10/10 개정, 10/11 시행)

— 공모로 발행된 주가연계증권 또는 파생결합증권이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원금손실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일반고객에게 우편 또는 전자통신수단의 방법으로 고지하도록 의무화

- 원금손실 조건에 해당되었다는 사실
 - 조기상환 조건 및 조기상환시 예상수익율
 - 환매청구방법, 환매청구기한 및 환매수수료 등
- 고지의무는 공모로 발행된 원금비보장형 ELS·DLS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고지대상은 일반고객으로 한정
- 만기전에 원금손실 조건에 최초로 해당된 경우에만 고지의무가 발생되며, 만기일의 원금손실 사실에 대하여는 고지의무가 없음
- 개정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행된 주가연계증권 및 파생결합증권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 파생금융상품거래설명서의 변경 (별표 3 : 2006/12/14 개정, 12/18 시행)
- 파생금융상품거래설명서 중 기본예탁금 관련 부분을 개정된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과 일치하도록 변경

3. 증권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칙

- 잔고통보 면제금액 상향조정 (별표 1, 별표 3, 별표 4 : 2006/2/15 개정, 2/20 시행)
- 증권회사는 반기동안 매매 기타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예탁자산 평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기말 잔액·잔량 통보의무가 면제되는 바,

-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이 '10만원'에서 '100만원(최근 잔고통보 후 1년간 매매 기타 거래가 없는 계좌의 경우에는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이를 해당 약관*에 반영함

*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증권저축약관

○ 세금우대증권저축 가입자격 제한 (별표 4 : 2006/2/15 개정, 2/20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06.1.1)으로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자격이 거주자에서 20세 이상의 거주자로 축소됨에 따라 동 내용을 증권저축약관에 반영함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사항 반영 (별표 3 : 2006/4/5 개정, 4/10 시행)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으로 금감위의 증권업감독규정 중 일반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외화증권의 범위 등에 대한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외화증권 매매거래 계좌설정약관 중 일반투자자의 투자범위 제한내용을 삭제

○ 세금우대증권저축의 특별해지 요건 강화 (별표 4 : 2006/4/5 개정, 4/10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80조 5항) 개정으로 저축자가 비과세 또는 감면혜택을 받으면서 저축계약을 중도해지하기 위해서는 해지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바, 이를 증권저축약관의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반영

- 대금결제방법의 예외 추가 (23조의6 : 2006/6/19 개정·시행)
 - “국내에서 외국통화로 표시하여 발행된 채권”을 결제하기 위하여 예탁결제원이 정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는 경우 한국은행을 통하지 않고 결제대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채권결제참가자의 매매성립내용에 관한 통지사항 추가 (28조의8 3호 : 2006/6/19 개정·시행)
 - 결제대금이 외국통화인 경우 매매성립내용 통지시 그 통화의 종류를 예탁결제원에 통지하도록 함

- 「선물·옵션계좌설정약관」 중 적격기관투자자의 위탁증거금 예탁시한 변경 (4조 3항 : 2006/11/16 개정, 11/20 시행)
 - 증권선물거래소의 「선물시장수탁계약준칙」 개정에 따라, 적격기관투자자의 위탁증거금 납부시한을 “당일 중 증권회사가 정하는 시간”에서 “당일 중 증권회사가 정하는 시간 또는 그 다음날 10시 이내에서 증권회사가 정하는 시간”으로 변경함

- 선물·옵션계좌설정약관의 변경 (4조 1항, 5조 1항 : 2006/12/14 개정, 12/18 시행)
 - 선물·옵션계좌설정약관중 기본예탁금 징수 및 수탁거부 조항을 증권선물거래소의 개정규정과 동일하게 변경

○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의 제정 (별표 10 : 2006/12/28 개정, 2007/1/1 시행)

—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전자금융거래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

- 전자금융 거래내용의 확인방법 및 이용자 요청시 증권회사의 제공 의무 등 명시
- 전자금융거래 오류시 이용자의 정정요구권 명시
- 전자금융 사고시 증권회사의 책임 열거
- 전자지급거래의 효력발생시기 명시 등

4. 채권장외거래공시 등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 수익률 공시대상채권의 추가 (3조 : 2006/1/25 개정 · 시행)

— 장외거래 대표수익률 공시대상채권에 국고채권(20년)을 추가함

- 잔존기간 18년~20년

○ 수익률 공시대상채권의 잔존기간 세분화 (3조 : 2006/1/25 개정 · 시행)

— 종류별 잔존기간별 가중평균수익률 공시대상 채권의 잔존기간을 세분화

- 3년 초과 → 3년~5년, 5년~10년, 10년 초과

- 수익률 보고대상채권의 추가 (4조 : 2006/1/25 개정 · 시행)
 - 특정 잔존기간의 수익률 보고대상채권, 잔존만기별 수익률 보고대상채권, 채권종류별 잔존만기별 시장수익률 보고대상채권에 국고채권(20년)을 추가함

5. 자산설계 전문인력 시험 등에 관한 규정

- 시험관리위원회의 구성 (4조, 5조, 7조 : 2006/3/23 개정 · 시행)
 - 위원장인 증권연수원장과, 증권협회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함
 -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시험방법 및 시행 (10조 : 2006/3/23 개정 · 시행)
 -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며, 1차의 필기시험으로 하고, 시험문제의 형식은 선택형으로 함

○ 합격자 결정 (14조 : 2006/3/23 개정 · 시행)

- 합격자는 과목별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과목별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체시험과목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함

○ 자산설계 전문인력 교육 (23조, 24조 : 2006/3/23 개정 · 시행)

- 증권회사는 자산설계 전문인력으로 종사하려는 자를 협회에 등록해야 함
 - 2년마다 1회씩 협회에서 시행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V. 증권예탁결제원 규정

1.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 예탁된 일부 국고채권에 대한 분리 또는 재결합의 신청 (49조의2 : 2006/1/24 개정, 2/20 시행)
 - 예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원금부분은 이를 무이표부 채권으로, 이표부분은 이를 각각의 이표별로 독립된 채권으로 분리 또는 그 분리된 채권들을 재결합할 수 있음
 -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행된 국고채권으로 만기가 5년 이상인 예탁채권을 대상으로 함

- 원금이자분리의 신청방법 (49조의3 : 2006/1/24 개정, 2/20 시행)
 - 국고채권에 대한 원금이자분리의 신청은 “800만원 단위”로 증권예탁결제원 소정의 신청서에 의함

- 원금이자분리 및 재결합의 신청시한 (49조의4 : 2006/1/24 개정, 2/20 시행)
 - 신청시한은 증권예탁결제원의 매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 다만, 원금이자분리 등의 신청이 그 대상인 원본채권 등의 원리금상환일부터 역산하여 3영업일 이내에 있는 경우 예탁원은 그 신청을 거절 가능함

- 한국은행에 대한 국채등록부의 변경요청 (49조의5 : 2006/1/24 개정, 2/20 시행)
 - 예탁자에 의한 신청 당일 증권예탁결제원은 한국은행에 그 신청내용에 따른 국채등록부에의 변경기재를 요청함

- 예탁자계좌부에의 증감기재 (49조의6 : 2006/1/24 개정, 2/20 시행)
 - 한국은행으로부터 국채등록부에의 변경기재 사실을 통보받은 증권예탁결제원은 그 사실에 부합하도록 예탁자계좌부에 해당 예탁채권에 대한 증감을 기재

- 증권회사 수수료 중 채권에 대한 수수료율 변경 (별표 2 : 2006/4/7 개정 · 시행)
 - 기존 매매거래대금 합계액의 0.9/10,000에서 0.0225/10,000으로 수수료율을 인하함

- 증권회사 수수료의 징수대상 확대 (별표 2 : 2006/4/7 개정 · 시행)
 - 증권회사 이외에 “증권업을 겸영하는 자”도 증권회사 수수료의 징수 대상으로 추가함

- 수탁기관의 범위 확대 (2조 1항 5호의5 : 2006/4/7 개정 · 시행)
 - 수탁기관의 정의에 “투자일임자산이 예탁된 증권회사, 기타 금융기관”을 추가함

- 증권회사수수료의 징수요율 인하 (별표 : 2006/7/11 개정, 7/14 시행)
 - 주식(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증서, 주식워런트증권 및 주식예탁증서 포함)의 경우
 - 0.29/10,000 → 0.2755/10,000
 - 채권의 경우
 - 0.0225/10,000 → 0.021375/10,000
 - 상장지수간접투자증권의 경우
 - 0.29/10,000 → 0.2755/10,000

2.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기관투자자 결제참가 신청자에 대한 승인요건의 구체화 (22조의2 : 2006/1/18 개정·시행)
 - 기관투자자 결제참가 신청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관련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고 있을 것
 - 기관투자자 결제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 기관투자자 결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설비 등의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기타 기관투자자 결제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적 신용이 있을 것

- 기관투자자 결제참가 신청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의 근거마련
(22조의3 : 2006/1/18 개정·시행)
 - 재무제표(부속명세서 포함), 영업보고서 등 재산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 기관투자자 결제업무의 수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 대금결제방법의 예외 추가 (23조의6 : 2006/6/19 개정·시행)
 - “국내에서 외국통화로 표시하여 발행된 채권”을 결제하기 위하여 예탁결제원이 정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는 경우 한국은행을 통하지 않고 결제대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채권결제참가자의 매매성립내용에 관한 통지사항 추가 (28조의8 3호 : 2006/6/19 개정·시행)
 - 결제대금이 외국통화인 경우 매매성립내용 통지시 그 통화의 종류를 예탁결제원에 통지하도록 함

- 계좌대체 제한에 대한 완화 (19조 2항 3호 : 2006/7/10 개정·시행)
 - 계좌대체 제한기간 중이라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예탁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좌대체를 할 수 있도록 함

- 예탁증명서의 발행으로 처분제한된 예탁유가증권의 원리금 처리방법 마련
(42조의3 1항 2호 : 2006/7/10 개정·시행)
 - 예탁증명서의 기초가 된 예탁유가증권에서 발생한 원리금(만기상환일에 발생하는 것에 한함)은 당해 예탁증명서의 반환이 있는 때까지 예탁원이 이를 보관하도록 함

3.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 대차거래 대상유가증권의 범위 확대 (3조 3호·4호 : 2006/7/4 개정, 7/10 시행)
 - “주식관련사채”와 “주식워런트증권”을 대차거래 대상유가증권에 추가함

- 주식워런트증권의 대차거래기간 명시 (4조 1항 4호 : 2006/7/4 개정, 7/10 시행)
 - 주식워런트증권의 대차거래기간을 대차거래 체결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으로 규정함
 - 다만, 대차거래기간 중에 주식워런트증권의 만기가 도래하거나 중도상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만기일 또는 중도상환일까지 대차거래가 종료되도록 함

- 주식워런트증권의 신청수량단위 및 최소신청수량 명시 (15조 1항 4호 : 2006/7/4 개정, 7/10 시행)
 - 주식워런트증권의 신청수량단위 및 최소신청수량을 “1워런트”로 규정함

- 경쟁거래 및 지정거래의 상환연기 신청기한 단축 (21조의7 1항 : 2006/7/4 개정, 7/10 시행)
 - 상환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4영업일 전까지”에서 “3영업일 전까지”로 변경함

- 상환연기가 가능한 대차거래 유형에 결제거래 추가 (21조의7 1항·2항 : 2006/7/4 개정, 7/10 시행)
 - 결제거래에 대해서도 상환일까지 상환연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허용
 - 상환연기 시에 대차수수료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분할상환이 가능한 대차거래 유형에 결제거래 추가 (22조 2항 : 2006/7/4 개정, 7/10 시행)
 - 결제거래에 대해서도 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허용

- 현금상환이 가능한 대차증권의 범위 확대 (24조 2항·4항 : 2006/7/4 개정, 7/10 시행)
 -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해서도 현금상환이 가능하도록 허용

4.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주식워런트증권의 대차증권 가격산정방법 명시 (1조의2 1호·2호 : 2006/7/4 개정, 7/10 시행)
 - 주식워런트증권의 시가는 시장 전일종가로 정의하고, 대차증권가액은 워런트 수에 시가를 곱하여 산정

- 주식워런트증권의 대차수수료를 호가단위 지정 (8조의2 4호 : 2006/7/4 개정, 7/10 시행)
 - 주식워런트증권의 호가단위를 0.1%로 지정

- 주식워런트증권의 현금상환방법 및 상환금액계산방법 (9조의7 1항·2항 : 2006/7/4 개정, 7/10 시행)
 - 차입자의 현금상환 신청시한을 종료일 3영업일 전으로 정함
 - 주식워런트증권의 현금상환 가산금리를 현금상환일 전일종가의 1%로 정함
 - 현금상환일 전일 종가가 없는 경우 최근일 종가를 적용

- 대차채권의 보유여부에 따른 채권이자 지급방법 변경 (12조 1항 1의2호 : 2006/7/4 개정, 7/10 시행)
 - 차입자가 대차채권을 보유하였음을 증빙하여 신청하는 경우 차입자가 채권발행자로부터 수령할 해당 채권의 이자를 직접 대여자에게 지급함

- 중개수수료 수납대상 및 수납 방법 변경 (별표 2 : 2006/10/2 개정, 10/9 시행)
 - 맞춤거래의 대차수수료율을 0%로 적용한 경우 종래 차입자가 0.04%를 납부하던 것을 대여자과 차입자가 합의한 경우 각각 대차증권가액의 0.02%를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

- 차입자 발행 유가증권 및 계열회사 발행 유가증권의 담보제공 금지
 - (9조의2 2항 : 2006/11/27 개정, 12/4 시행)
 - 담보대상 유가증권의 발행인이 차입자와 동일인이거나 공정거래법 2조 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 관계인 경우에는 당해 담보대상 유가증권을 담보물로 제공할 수 없도록 금지

- 과도한 담보주식에 대한 담보교환 청구 허용 (9조의4 1항 3호 : 2006/11/27 개정, 12/4 시행)
 - 차입자 1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100을 초과하는 주식을 담보유가증권으로 제공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담보권자가 다른 담보물로 교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5. 단기금융상품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 예탁원명의로 등록되는 단기금융상품의 예탁방법 마련 (9조의2 : 2006/7/26 개정·시행)

- 예탁원명의로 단기금융상품을 발행 또는 등록하는 경우 그 발행인은 예탁자별 신청내역을 예탁원에 통지
 - 발행인이 예탁자별 신청내역을 예탁원에 통지한 때에 해당 예탁자가 예탁을 청구한 것으로 간주함
- 예탁원은 당해 신청내역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이를 예탁원장 및 간접투자기구원장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해당 예탁자에게 통지

6. 담보콜거래관리 업무규정 시행세칙

○ 수수료율 체계의 변경 및 일원화 (별표 2 : 2006/12/11 개정, 2007/1/2 시행)

- 담보콜거래의 수수료율 체계를 “거래금액별 구분징수방식”에서 “거래금액 단위별 징수방식”으로 일원화
 - 수수료율 : 담보콜거래 건별 거래금액에 대하여 매일 1억원당 35원

7. 외화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 예탁 및 결제대상 외화증권의 범위조정 (3조 : 2006/5/30 개정·시행)

— 투자자별 구분없이 예탁 및 결제대상 외화증권을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증권”으로 정함

- 종래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대상 외화증권은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상장이 확정된 증권을 중심으로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음

8. 금융기관 등을 위한 예탁유가증권의 담보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 담보관리업무의 범위 (1조 및 4조 : 2006/4/7 개정, 5/1 시행)

— 예탁유가증권을 대상으로 예탁원과 참가자간에 담보관리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담보권의 설정·말소 및 담보물의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그 범위로 함

○ 담보관리업무의 대상유가증권 (3조 : 2006/4/7 개정, 5/1 시행)

—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예탁대상유가증권으로 지정된 유가증권중 주식 또는 채권을 그 대상으로 함

○ 담보관리업무의 참가신청 및 계좌개설 (6조 및 7조 : 2006/4/7 개정, 5/1 시행)

- 담보관리업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예탁원에 참가신청을 하여야 함
 - 참가승인을 받은 자는 담보관리업무의 참가에 사용할 담보관리계좌를 예탁원에 개설하여야 함

○ 담보관리업무의 참가승인 취소 (8조 : 2006/4/7 개정, 5/1 시행)

- 예탁원은 다음의 경우 참가자에 대한 참가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참가자가 예탁원에 취소신청을 한 경우
 - 담보관리계좌(금융기관인 참가자의 담보관리계좌를 제외함)에 담보대상유가증권의 잔량이 일정기간 없는 경우
 - 참가자가 관계법령 및 이 규정 등을 위반하여 다른 참가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다고 예탁원이 판단하는 경우
 - 기타 예탁원이 업무수행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예탁원은 참가승인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를 받은 참가자의 담보관리계좌를 폐지하여야 함
 - 당해 담보관리계좌에 담보대상 유가증권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다른 계좌로 계좌대체 하도록 함

○ 담보대상 유가증권의 예탁 (9조 : 2006/4/7 개정, 5/1 시행)

- 담보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참가자(예비담보설정자)는 계좌대체의 방법으로 담보대상 유가증권을 담보관리계좌에 예탁하여야 함

○ 담보권의 설정 (10조 : 2006/4/7 개정, 5/1 시행)

— 예비담보설정자는 예탁원을 통하여 금융기관인 참가자(예비담보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상기한 담보제공에 대하여 예비담보권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예탁원은 예탁자계좌부상 질권설정을 하고 그 사실을 해당 담보설정자 및 담보권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 담보설정자는 담보권자에 대하여 추가담보를 제공할 수 있음

○ 담보권의 말소 (11조 : 2006/4/7 개정, 5/1 시행)

— 담보권자는 담보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말소를 예탁원에 청구할 수 있음

- 담보권이 말소된 담보대상유가증권의 경우 이를 다른 계좌로 계좌 대체 하도록 함

○ 담보관리업무의 제한 (12조 : 2006/4/7 개정, 5/1 시행)

— 예탁원은 담보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음

○ 전질금지 등 (13조 1항 : 2006/4/7 개정, 5/1 시행)

— 담보가 설정된 담보대상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이를 전질할 수 없음

— 담보대상 유가증권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를 해당 권리자에게 반환하도록 함

○ 담보관리부의 작성 및 비치 (14조 : 2006/4/7 개정, 5/1 시행)

— 예탁원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담보관리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함

- 담보설정자 및 담보권자의 명칭·계좌번호
- 담보유가증권의 종류·종목·수량 및 담보관리번호
- 담보유가증권의 과실의 귀속주체
- 기타 담보관리업무에 필요하다고 예탁원이 인정하는 사항

○ 담보유가증권의 과실의 귀속주체 (15조 : 2006/4/7 개정, 5/1 시행)

— 담보유가증권의 과실에 대한 권리는 그 과실수령일의 전일까지 담보권자가 예탁원에 수령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담보설정자에게 있는 것으로 함

○ 담보유가증권의 교환 등 (16조 : 2006/4/7 개정, 5/1 시행)

— 담보유가증권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탁원은 당해 담보유가증권에 대하여 배정된 유가증권 또는 금전을 세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담보유가증권 발행인의 합병·분할·분할합병 및 해산으로 인한 소멸
- 담보유가증권 발행인의 자본감소, 담보유가증권의 일부 또는 전부의 소각이나 병합
- 담보유가증권에 대한 무상증자
- 담보유가증권의 만기상환일 도래 또는 전액 중도상환
- 기타 세척에서 정한 사항

○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18조 : 2006/4/7 개정, 5/1 시행)

— 이 규정 및 세칙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인터넷 등을 통한 업무처리의 근거 마련 (19조 : 2006/4/7 개정, 5/1 시행)

— 예탁원과 참가자는 담보관리업무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음